
제26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 시 : 2026. 3. 6.(금) 13: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onfederation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등록	~ 13:00		대의원 등록	사무처
토크 콘서트	13:00 ~ 13:04	4'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04 ~ 13:10	6'	인사말	위원장, 이용우(민)
	13:10 ~ 13:50	40'	국회와의 대화 - 진행 : 채준호(자문위원) - 공노총 : 연맹위원장 - 의원 : 이용우(민) · 신장식(혁) · 한창민(사)	연맹위원장, 참여 의원
	13:50 ~ 14:00	10'	기념 촬영	사회자
출범식	14:00 ~ 14:10	10'	축하공연	B.O.S
	14:10 ~ 14:15	5'	개회 및 노동의례	사회자
	14:15 ~ 14:20	5'	깃발 입장	사회자
	14:20 ~ 14:25	5'	제7대 집행부 소개	사회자
	14:25 ~ 14:30	5'	강령 낭독	수석부위원장
	14:30 ~ 14:40	10'	축사 및 연대사	
	14:40 ~ 14:45	5'	이임사	석현정 前 위원장
	14:45 ~ 15:00	15'	출범사 (2026년 사업계획 설명)	위원장
대의원대회	15:00 ~ 17:00	120'	제26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안건 1.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안건 2.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안건 3. 2025년 결산 안건 4. 2026년 사업계획 안건 5. 2026년 예산 안건 6. 기타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위원장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 차

□ 2025년 사업 결과 보고

1. 대선 사업	7
2. 연금 투쟁	10
3. 임금 투쟁	13
4. 교섭 투쟁	18
5. 노동·정치기본권 사업	37
6. 조직강화 사업	40
7. 정책 사업	44
8. 연대 사업	47
9. 교육·홍보 사업	49

□ 안건

1.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53
2.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76
3. 2025년 결산	77
4. 2026년 사업계획	86
5. 2026년 예산	130
6. 기타	141

□ 첨부

1. 성명서, 논평 등	145
2. 규약	180
3. 전국대의원 명단	189

2025년 사업 결과 보고

1. 대선 사업
2. 연금 투쟁
3. 임금 투쟁
4. 교섭 투쟁
5. 노동·정치기본권 사업
6. 조직강화 사업
7. 정책 사업
8. 연대 사업
9. 교육·홍보 사업

□ 목표

- 윤석열 탄핵 이후 예상되는 대선 공간을 활용하여 공노총의 주요 요구사항을 공약화 추진
-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 등 핵심 이슈 부각

□ 계획

- 현장과 함께하는 대선 정책 사업 추진
 - 단위노조와 연맹에서 필요한 대선 정책 사업 발굴, 추진
 - 대선 정책공약 요구서 작성
 - 표준정책질의서 작성, 각 정당 답변 요구, 회신내용 조합원 공지

- 대선 정책공약 요구서 작성
 - ①정치기본권 보장, ②노동기본권 보장, ③정년 연장, ④임금 인상, ⑤주4일제 도입, ⑥인력 확충, ⑦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⑧학교조직 법제화, ⑨소방공무원 처우개선
- 대선 정책공약 정책질의서 발송(대선후보가 있는 원내 정당)
 - 더불어민주당(회신), 국민의 힘(미회신), 개혁신당(미회신)
- 정책공약 요구 시리즈 논평 발표

- 정책 공약화 촉구·견인 활동
 - 대선 정책간담회 등 추진
 - 공투본 등을 통한 공동 대선 정책 사업 추진

- 더불어민주당 노동국·노동존중실천단 간담회
- 추미애 국회의원 공노총 방문 간담회
- 강훈식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간담회
-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사회 1분과) 의원 간담회

- 3. 29.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개최
 -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 조합원 총궐기 투쟁 추진

-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5. 10. / 여의도)
 -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일과 대형 산불로 인해 일정 조정

□ 경과

03.20.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노동존중실천단 의원실 정책 간담회
04.04.	(성명) 현재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04.09.	추미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04.14.	김문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04.26.	강훈식 의원(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정책간담회
05.01.	(성명)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05.10.	공무원 기본권, 생존권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
05.15.	(논평)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하라.
05.16.	(논평)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05.19.	(논평) 정년은 그대로, 연금은 늦게.... 소득공백 5년, 누가 책임질 것인가?
05.20.	(논평) 공무원 임금, 더 이상 국가 재정의 뒷전일 수 없다.
05.21.	(논평) 이제는 주4일제다.
05.22.	(논평) 무너지는 현장, 부족한 사람!
05.28.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정책질의
06.04.	(성명) 탄핵으로 열린 대선,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의 명령을 기억한다.
07.14.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 정책간담회
07.22.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 정책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대선정책 질의 회신서

정책질의 회신서

항목	입장	의견 및 사유
① 정치기본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며,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 •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② 노동기본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에 '근로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방향에 공감 •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노조가입 제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교섭여부, 단체행동권 등은 국민적 시각에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통해 법률의 개폐여부를 검토할 문제
③ 정년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의 방향성에 동의함. 다만, 정년연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정년연장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
④ 임금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임금 현실화 방향에 동의.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로 인하여 퇴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인상 등은 필요. 다만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는 논의가 필요 • 임금인상의 실현방안으로 위원회 법제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현실화 방안 검토
⑤ 주4일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가 주4일제로 가는 방향성에 동의함, 다만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
⑥ 인력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서비스 강화 등 현장직군 위주의 인력 확충 필요
⑦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 다만 기준인건비, 정원수 등은 지방의 지나친 비대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짐.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자치권확대를 위해 조정 필요하며 추가논의
⑧ 학교조직 법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 사례로 든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근거는 위임하여 학칙 등으로 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19조(2)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함) 및 시행령 9조(3)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학교 행정실에 대한 사항은 조례나 교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임
⑨ 소방관 수당 현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 수당 현실화 방향에 동의. 다만, 구체적인 인상범위와 수준 등에 대해서는 유사직군과 비교 등을 종합하여 추가 논의 필요

□ 목표

- ① 정년 연장, ② 소득 공백 해소, ③ 공적연금 강화 등 국민 전체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투쟁 전개
- 급변하는 연금 정세에 맞게 연대를 강화하고, 대선정국 활용 등 공적연금 강화 아젠다 구축 및 홍보 강화
- 지속 가능한 연금 투쟁을 위해 연금 전문가 양성

□ 계획

- 정년 연장
 -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요구
 -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전개(국민청원, 의원 입법 발의 등)
 - 정년 연장 및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사례 조사(해외, 민간 등)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입법청원>

- 국민동의청원 일정 : 2025. 2. 18.(화) ~
- 청원 내용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정년 조항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

○ 국민동의 청원 진행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2. 18. ~ 3. 18.)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3. 19.)

○ 소득 공백 해소

- 정년 연장 이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재임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투쟁 강화

○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촉구 기자회견(10. 15.)**○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노정협의 촉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11. 12.)****○ 공적연금 강화**

-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개악 저지를 위한 대선 활동 전개
- 국민연금 개혁시나리오에 대응한 공무원제단체 단일안 마련

- 공무원연금 당사자 조직 연대를 강화하고 유사시 연금 공투본 구성 추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긴밀한 공조와 연대 강화

○ 아젠다 구축 및 홍보 강화

- 국회의원 및 전문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언론기관 등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저변 확대 및 여론 형성
- 연금 Q&A 영상 제작 및 배포

○ 공무원연금 Q&A 유튜브 영상 제작(2월)

○ 연금 전문가 양성

- 연금학교 연 2회 운영으로 연맹별 강사단(3인) 및 전문가(2인) 양성
- 주제별 연령별 맞춤형 연금 강의안 마련

○ 상·하반기 공노총 연금학교 개최(1월, 9월)

□ 경과

01.24.	공노총 상반기 연금학교
02.18.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2차 회의
02.18.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 청원 및 선전전
02.24.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02.25.	정성국 의원실 주관 공무원연금 정책간담회
03.06.	장흥군 공무원 대상 연금 강의
03.11.	(성명) 인권위의 정년연장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
03.13.	양주시노조 조합원 대상 연금 강의
03.14.	(성명) 내란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의 노후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03.18.	공무원 정년연장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
03.08.	국공노 간부사관학교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3.18.	(입장문) 국회와 정부는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라.
03.19.	(성명) 성남시의회 정년연장 촉구 결의안 적극 환영한다.
04.02.	인사혁신처 연금 총당부채 관련 사전 설명
04.07.	소방노조 부산본부 노사화합 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4.1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직원 대상 연금 강의
04.16.	군산시노조 대의원 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4.24.	과기부(우분)노조 핵심 간부학교 교육생 대상 연금 강의
05.19.	(논평) 정년은 그대로, 연금은 늦게..... 소득공백 5년, 누가 책임질 것인가?
05.21.	제 공무원노조 연금 정책 회의

05.29.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4차 회의
08.04.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5차 회의
09.22.	공노총 하반기 연금학교
09.23.	국공노 주관 '노동조합이 알려주는 공무원 연금 이야기' 연대 참석
10.15.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촉구 기자회견
10.16.	노후 소득공백 해소 관련 행안부 간담회
10.23.	경찰청노조 대구경찰청지회 조합원 대상 연금 강의
11.20.	교육청노조 간부 대상 연금 강의
11.25.	퇴직자 재고용 관련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간담회
12.03.	소방노조 노사소통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12.04.	경찰청노조 전국 임원진 노사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 목표

- 정액제 등 하후상박 임금(수당) 인상을 통해 실무직 공무원들의 삶을 개선
- 노·정간 임금 교섭을 법률로써 보장받기 위한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임금(보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연구 및 조사 추진(공공기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 사례분석 등)

□ 계획

- 정액제 등 하후상박 임금 인상
 - 임금 인상 필요성 정책 마련(청년공무원→실무직공무원, 최저임금→생활임금 등)
 - 노정공동연구회와 공무원보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액 인상 등 하후상박 임금 인상 추진
 - 임금 인상 필요성 부각 및 이슈화를 위한 기자간담회 추진
 - 임금 투쟁 승리를 위한 제 단체 연대 강화

< 시기별 투쟁계획 >

- 2025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응자료 검토 및 마련(3월~5월)
- 2025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및 기자간담회(6월 초)
- 생존권 쟁취! 간부결의대회(6월 중)
- 공무원보수위원회 활동(6월 말~)
- 공무원보수위원회 활동기간 중 전 단위 공동행동(전국 동시 기자회견, 현수막 등), 약식집회 추진 등(7월까지)
-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촉구 대통령실 및 기재부 대응 투쟁(8월)
-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관련 대국회 사업(9월~)

-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 총력투쟁대회(5. 10. / 여의도)
-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 노조 요구안 설명 기자 간담회(6. 18.)
 -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전국 동시 기자회견(6. 19.)
- 공무원보수위원회 중 간부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 1차(6. 30.) / 2차(7. 14.) / 3차(7. 21.)

○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촉구

- 대통령실 앞 연좌 집회 1차(7. 29.) / 2차(8. 5.) / 3차(8. 12.)

-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 노동자대회(8. 6. / 대통령실)

○ 공무원임금위원회 법제화

- 정책연구소 및 공투위 논의를 통해 최종 법안 마련(6월) 및 국회 토론회(9월) 개최
- 대선사업(공약, 정책질의서 등)과 연계하여 법제화를 추진하되, 연내 의원 입법 발의(하반기) 추진

○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8. 21.)

- 이광희·용혜인·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초과근무 단가 인상 등 수당조정 협의

- 8급 이상 초과근무 단가 인상(감액조정률 55%→60%) 총력 추진
- 기재부, 인사처, 행안부 등 수당 인상을 위한 정책간담회 추진(연중)
- 업무대행수당 개선

○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연구 및 조사

- 공공기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사례 조사 결과 분석
- 호봉제, 연봉제, 직무급 등 임금체계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외부 전문가 협조)

□ 결과

구분	개정 내용
1. 저연차 실무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	① 공무원 임금 전년대비 3.5% 인상
	② 저연차 공무원 임금 수준 추가 개선 - 7~9급 봉급 6.6%(공통3.5%+추가3.1%) 인상
	③ 시간외근무수당 8급(상당) 단가 인상 - ('25년 단가) 10,729 원 → ('26년 단가) 12,113원
2. 직무 및 성과중심 보상 확대	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 (현행) 정원의 24% 이내 → (개선) 정원의 27% 이내
	② 중요직무급과 軍 특수지, 위험근무수당 간 병급 허용
	③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상위 2% 이내 → (개선) 상위 5% 이내

구분	개정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3.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처우개선</p>	<p>① 재난안전수당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각 월 5만원) - (격무가산금)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재난안전수당 지급대상의 30% 이내 선정 - (정근가산금) 동일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자 대상 지급</p> <p>② 비상근무수당 인상 - 1일 지급액 8천원 → 1만 6천원, 월 상한 12만원 → 18만원</p> <p>③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현행) 위험근무수당 갑종 월 6만원 + 경찰·소방 가산금 1만원 - (개선) 위험근무수당 갑종 월 6만원 + 경찰·소방 가산금 2만원</p> <p>④ 경찰청 경비부서 인파사고 담당 특수업무수당 신설(월 8만원)</p> <p>⑤ 경찰청 112출동수당 인상 - 출동 건별 3천원 → 4천원, 일 지급상한 3만원 → 4만원</p> <p>⑥ 소방청 긴급구조통제단 담당 특수업무수당 신설(월 8만원)</p> <p>⑦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인상 - (화재진화) 출동 1일당 3천원 → 4천원 - (구조구급) 3회 초과 출동 건당 3천원 → 4천원, 일 지급상한 3만원 → 4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4. 특수업무 종사자 사기진작</p>	<p>①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현행) 민원실 근무 법정민원 담당자 대상 지급(월 5만원 + 가산금3만원) - (개선 1) 민원실 근무자 대상 민원업무수당 인상(월 5 → 7만원) (개선 2) 민원실 외 법정·일반·고충민원 등을 상시 처리하는 공무원까지 지급 대상 확대(월 3만원, 가산금 없음)</p> <p>② 약무직 및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 약무직 공무원 월 7 → 14만원, 간호직 공무원 월 5 → 10만원</p> <p>③ 항공관제업무 수당 가산금 인상 및 격무가산금 신설 - (현행) 기본수당 월 5만원 + 관제업무 가산금 월 7만원 - (개선) 기본수당 월 5만원 + 관제업무 가산금 월 10만원 + 격무가산금* 월 10만원 * 항공교통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제가산금 지급 대상의 30% 이내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5. 기타</p>	<p>① 정액급식비 인상 - 월 14만원 → 월 16만원</p> <p>②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휴직 확대</p>

구분	개정 내용
	- (현행) 육아휴직, 6개월 미만 공무상 질병휴직 - (개선) 6개월 미만 모든 휴직(육아휴직은 기간 제한 없음)
	③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봉급상한액 인상 - (현행) 최초 10시간 220만원 限, 그 외 단축시간 150만원 限 - (개선) 최초 10시간 250만원 限, 그 외 단축시간 160만원 限

□ 경과

01.02.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1차 회의
02.10.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2차 회의
02.25.	공무원임금 정액제 추진 협의회
03.27.	공무원임금 정액제 관련 노정연구회 4차 회의
04.11.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3차 회의
04.23.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노조 1차 회의
05.07.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노조 2차 회의
05.10.	공무원 기본권, 생존권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
05.20.	(논평) 공무원 임금, 더 이상 국가 재정의 뒷전일 수 없다.
05.21.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노조 3차 회의
05.23.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4차 회의
05.26.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 기재부 예산기준과 간담회
06.04.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노조 4차 회의
06.16.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노조 5차 회의
06.18.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요구안 설명 기자회견
06.19.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발표 기자회견
06.19.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06.24.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5차 회의 및 인사처 성과급여과 간담회
06.30.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
06.30.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07.02.	공무원보수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
07.08.	공무원보수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07.11.	공무원보수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
07.14.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
07.14.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
07.14.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 정책간담회
07.21.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
07.21.	공무원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

07.22.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 정책간담회
07.29.	임금인상 쟁취 1차 대통령실 앞 연좌집회
07.30.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간담회
08.05.	임금인상 쟁취 2차 대통령실 앞 연좌집회
08.06.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위원 평가회의
08.06.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08.12.	임금인상 쟁취 3차 대통령실 앞 연좌집회
08.21.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08.25.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6차 회의
08.29.	공무원 임금 3.5% 인상
10.16.	인사처 수당조정 협의

□ 목표

- 2025 상·하반기 노사협의회 통해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
- 행안부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시 부처별 간담회 진행하여 제도개선 추진
- 각 연맹 주요 현안 사항 지원

□ 계획

- 노사협의회 개최(상·하반기)
 - 정부교섭 단체협약사항 이행 점검, 핵심 요구사항 노정 협의 등 진행
 - 공노총 안건취합(1월) → 참여노조 공동 요구안(2월) → 상반기협의회(3~6월) →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공동 요구안(7월) → 하반기 노사협의회(7~11월) → 하반기 평가(12월)

○ 상·하반기 노사협의회 개최

- 행안부 정책협의체
 - 상반기(수당)·하반기(제도개선) 과제 분리 추진
 - 공노총 안건취합(1월) → 참여노조 공동 안건(2월) → 수당 정책협의체(3~6월) → 중간 평가 및 하반기 공동 안건(7월) → 제도개선 정책협의체(8~10월) → 전체 운영 평가(11월)
 - 시기별 현안 제도개선 연구 과제 발굴 및 정부 소통 강화
 - 주요 시급 현안 발생 시 정부와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 마련

○ 행안부 정책협의체 운영

- 현장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 연맹별 현장 정책간담회 등 진행하여 현장 의견수렴
 - 주요 사업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실시
- 현장의 긴급 이슈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수당조정협의 등 정책간담회 추진(계속)
 -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등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주요 부서 정책간담회
 - 인사 등 주요 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연맹에 전달하고 대응책 수립

- 각 연맹 주요 현안 사항 국회 토론회 등 지원
 - 학교행정실 법제화,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현장 지휘체계 개선
 - 국가직 5급 이하 정원 통합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및 악성 민원 대책 후속 조치 등

○ 대형 산불 대응과 소방의 역할 국회 토론회(9. 16.)

□ 제도개선

- 2026 지방선거 선거사무 개선
 - 투표관리관 직무대행 사례금 지급 신설 : 3만원
 - 간사·서기 수당 인상 : 12만원 → 28만원
 - 서기 인원 확대 신설 : 1인 추가
 - 선거물품 운송 운전자 사례금 지급 신설 : 최대 12만원(1회 4만)
 - 투표소별 집기 임차비 지원 신설 : 실비 보상
-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까지 승급 기간에 산입
-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제도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20년 이상 퇴직 전까지 : 7일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 10일 범위 내 부여
- 임신 중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 신청시 반드시 허용

□ 경과

01.03.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1차 회의
01.09.~31.	정책연구소 2025년 제도개선 안건 접수
01.15.	인사처 상반기 노사협력 협의회
01.15.	행안부 정책협의체 실무 간담회
02.0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2차 회의
03.17.	행안부 민원 담당자 보호회의
03.25.	노사협의회 노조위원 1차 회의
04.08.	노사협의회 노조위원 2차 회의
04.15.	노사협의회 전체회의
04.15.	노사협의회 1소위원회 1차 회의

04.21.	5급 선발 승진제 관련 인사처 정책 간담회
04.22.	노사협의회 2소위원회 1차 회의
04.29.	행안부 정책협의체 킥오프회의
04.30.	노사협의회 3소위원회 1차 회의
05.12.	노사협의회 간사단 1차 회의
05.13.	노사협의회 1소위원회 2차 회의
05.20.	노사협의회 2소위원회 2차 회의
05.22.	행안부 정책협의체 2차 실무회의
05.27.	노사협의회 3소위원회 2차 회의
06.09.	노사협의회 노조 위원 3차 전체회의
06.09.	노사협의회 간사단 2차 회의
06.17.	상반기 노사협의회 2차 전체회의
06.19.	(성명) 성과 없이 끝난 노사협의회,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06.25.	행안부 정책협의체 3차 실무회의
06.30.	공무원 교사의 부당명령 거부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06.30.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07.02.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 행안위 소속 의원실 정책간담회
07.02.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 행안위 소속 의원실 정책간담회
07.1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4차 회의
07.23.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5차 회의
07.24.	행안부 정책협의체 4차 실무회의
07.29.	노사협의회 참여노조 회의
08.11.	인사혁신처장 정책간담회
08.21.	행안부 차관 정책간담회
08.22.	노사협의회 노정간사단 회의
08.25.	행안부 정책협의체 5차 실무회의
09.0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6차 회의
09.09.	하반기 노사협의회 참여노조 회의
09.11.	하반기 노사협의회 1소위원회 1차 회의
09.17.	하반기 노사협의회 2소위원회 1차 회의
09.22.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인사처 정책간담회
09.23.	행안부 정책협의체 중간 점검 회의
09.24.	하반기 노사협의회 1소위원회 2차 회의
09.26.	민원공무원 보호관련 행안부 정책간담회
10.01.	하반기 노사협의회 2소위원회 2차 회의
10.23.	행안부 정책협의체 6차 실무회의
11.10.	행안부 정책협의체 7차 실무회의
11.11.	하반기 노사협의회 3 소위원회 2차 회의

11.20.	행안부정책협의체 실무자 회의
11.21.	행안부장관 정책간담회
11.28.	노사협의회 노정간사단 회의
12.10.	노사협의회 노정간사단 회의
12.23.	행안부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
12.23.	하반기 노사협의회 전체회의

참고1

2025년 하반기 공무원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연번	요구 내용 [소관부서]	협의 결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 사용 시 시간외근무 인정 [복무과, 지방인사제도과] - 연가를 사용하여 휴식하고 저녁 출근하여 시간외근무하는 경우 인정 	<p>[긍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재난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출근한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검토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처우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 ② 비현업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기본 10시간을 부여(실적분 제외) 	<p>[긍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출근 근무 일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 재난업무수당 확대 [성과급여과] -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소방청 및 시도의 소방기관 소방공무원에게 재난업무 수당 확대 	<p>[수정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직무수당을 긴급구조통제단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민원수당” 신설 [성과급여과] -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민원수당” 신설 요구 	<p>[수정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업무수당 대상을 부처별로 비대면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 사용에 대한 용어 통일 [복무과, 지방인사제도과] - 본인 연가 사용 시 지각, 조퇴 등 징벌적 표현 삭제, ‘부분 연가’ 등으로 통일 	<p>[장기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 조퇴 용어 변경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 ○ 우선적으로 인사시스템상에서 지각, 조퇴를 연가와 병기하는 방안 검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대행수당 인상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 - 수당인상(20만원→100만원) - 단계적 인상으로 접근 필요 	<p>[장기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제한된 자원 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수당 인상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점에 논의 필요 ○ 내년부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이 전체 휴직자로 확대되므로 관련 상황을 살펴보

연번	요구 내용 [소관부서]	협의 결과
		겠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대행수당 지급기준 확대 [인사혁신기획과, 지방인사제도과] - 지정범위 확대(파견, 징계, 전보, 퇴사, 육아시간 사용 등에 따른 미발령으로 30일 이상 결원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검토] ○ 업무대행 지정범위 확대는 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과 예산이 수반됨 ○ 따라서, 모든 업무공백사유에 대해 업무대행을 지정할 수는 없고 사유별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휴무제도 개선 [복무과, 지방인사제도과] - 대체휴무 가능시간을 8시간→4시간으로 조정 - 대체휴무 잔여시간은 수당이나 연가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검토] ○ 휴식권 보장이라는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 8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따른 과로 유발 가능성, 정확한 초과근무시간 측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예정 공무원 맞춤형 교육 바우처 제도 신설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 -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퇴직예정자가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소득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취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업무수당-자격선임수당 신설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 - 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선임수당 신설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허용 - 안전관리자(특히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책임에 따른 보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다양한 안전관리자들을 고려할 때 소방안전관리자에 한정된 수당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서 검토하고 수당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내 출장여비 개선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 - 출장 여행시간 4시간을 2시간으로 축소 - 근무지외 출장여비 인상에 맞춰 현실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실비충당에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휴가 확대 [복무과, 지방인사제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등 다른 경조사 휴가 일수, 민간 및

연번	요구 내용 [소관부서]	협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특별휴가 본인결혼(5일→10일) 확대 - 최근 신혼여행 문화 반영 및 결혼 장려 차원에서 점진적 확대 필요 	<p>해외 사례와 비교 시 휴가 확대는 곤란</p>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제도 개선 [복무과, 지방인사제도과] -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사용하고 남은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이월 및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연가보상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상황에서 지자체별 재정 문제로 볼 수는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과 연가 저축을 분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연가일수 제도의 문제보다는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른 연가보상비 예산 미편성 문제로 접근 필요 ○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 연가사용일수가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제도 개선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 - 연가보상비 산식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 - 단순히 연가보상비 인상의 문제가 아니며,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인식 전환 문제로 바라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연가 산정기준도 근로자와 달라 근로기준법을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보기는 곤란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외 자료 제출 확대 [복무과, 지방인사제도과] - 진단서발급이 곤란한 만성질환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른 공식적인 증명문서로 대체가 어렵고,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면제시간의 설정 [공공노사관계과] ① 연간면제자의 연간면제시간은 원칙적으로 교섭대표간 협의하여 결정 ②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가, 필수 교육시간 등은 면제시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면제자의 면제시간은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1년간 근무시간에서 공휴일 등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시간으로 교섭대표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곤란 ○ 연가 사용 등의 경우, 근무 의무가 신청에 의해 면제되는 것으로 민간의 사례를 볼 때 면제시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곤란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처우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 ① 성과상여금은 노정간 협의하여 정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활동의 자율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 면제 업무를 평가할 수 없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연번	요구 내용 [소관부서]	협의 결과
	<p>최소 A등급 이상 부여</p> <p>②-1. 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행사 등에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p> <p>③ 타임오프 부분 사용자(오전 or 오후) 초과근무 실적분 정상 인정</p> <p>④ 교대제 근무시간면제자가 교대제 근무 시간 중에 타임오프를 사용한 경우 임금 손실 없이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대법원 판례)</p> <p>⑤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지급되는 수당 (민원 업무 수당 등)은 연간면제자의 경우 지급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부분면제자의 경우 전액 지급 필요 - 타임오프 사용으로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을 못 받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 수당 신설 등 보완책 필요</p>	<p>고려할 때 기관의 평균지급률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p> <p>(철 회)</p> <p>○ 부분 면제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초과근무 실적분은 인정 가능</p> <p>○ 노조 측에서 제시한 판례의 판단 근거가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퇴직금 및 국민연금에 손실, 근거 지침의 법규명령성)이 있어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는 곤란</p> <p>○ 부분면제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지급되는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가능</p> <p>○ 별도 수당을 대신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 근무시간면제 업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p>
23-3	<p>○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자의 인사 및 정원 [인사혁신기획과, 지방인사제도과]</p> <p>① 타임오프 사용자의 전보 등 인사는 교섭대표간 협의하여 결정</p> <p>② 타임오프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원직 복귀 등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인사 조치</p> <p>[자치분권제도과]</p> <p>③ 연간면제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 - 근무시간면제 업무를 신설된 업무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정원 및 인건비도 추가 반영이 필요 - 타임오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노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p>	<p>○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와 공무원노조법상의 불리한 처우 금지 간의 조화를 위한 조율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필요</p> <p>※ 공무원의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교섭사항</p> <p>○ 입법취지와 다르게 연간면제자를 결원으로 보아 보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고민 필요</p>

연번	요구 내용 [소관부서]	협의 결과
	<p>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제도를 변경할 필요(부서간 정원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p> <p>[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p> <p>④ 연간면제자의 근무평정은 최근 2년간 근무평정 중 가장 높은 평정 이상으로 하되, 교섭대표간 협의하여 결정</p>	<p>○ 연간면제자의 경우 기존의 평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직전 2회 근평 평균을 적용</p>
30	<p>○ 다자녀인 공무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p> <p>- 다자녀 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 지원 제도 도입, 추후 여론 추이를 살펴 제공 범위 등 확대 추진</p>	<p>○ 공공기관도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있고, 과도한 예산 소요 발생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외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p>
31	<p>○ 상사 평가 제도 도입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p> <p>- 하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상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p> <p>- 기관 자율에 맡기면 제도 활성화가 어렵고,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p>	<p>○ 다면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미 기관 자율적으로 상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p>
32	<p>○ 명절휴가비 육아휴직자 지급 개선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p> <p>-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p>	<p>○ 출산휴가자는 현재도 지급 중이며, 육아휴직자 지급은 민간근로자 및 타 휴직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p> <p>○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 맞춤형 복지 등 지원 확대 중</p>
33	<p>○ 육아시간 등 사용자의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성과급여과, 지방인사제도과]</p> <p>- 육아관련 특별휴가(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사용 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 이를 개선</p> <p>- 실근무기간에 공가, 교육훈련 파견까지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p>	<p>○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며, 실적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근무 2개월' 충족 필요</p> <p>○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면서 성과를 낸 기간이 아닌 것은 실근무기간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p>
34	<p>○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p>	<p>○ 전문경력관은 승진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p>

연번	요구 내용 [소관부서]	협의 결과
	<p>[균형인사과, 지방인사제도과]</p> <p>- 전문경력관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p>	<p>아니며, 필요 시 직제를 조정하여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 가능</p> <p>○ 대우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외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p>

참고 2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

□ 수용 : 4건

안전 번호	안전 내용	부서 의견
14	<p>□ 기구정원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관련) 개정 (자치분권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에 설치되는 농업기술센터가 본청 농업 행정 관련 과의 기능과 통폐합시, 센터 소장(지방농촌지도관)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이면 일반직 4급 복수직급이 허용되나 인구 10만 미만일 경우 일반직 5급 복수직급을 허용하여 직급체계 불부합 발생 - 농업기술센터 소장 복수직급을 인구수와 관계없이 4급으로 둘 수 있도록 개선 	<p>< 수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정은 과거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본청 국장급 기구(4급) 설치가 불가능하여 4급 대신 5급 복수직급을 허용한 경우로, - 인구수와 관계없이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24년~)된 현행 체계와는 맞지 않으므로 추후 기구정원규정 개정시 개선 추진
16	<p>□ 통합활용정원제 폐지(조직기획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더불어 부서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조정이 필요한데도 정원통제라는 단순한 논리로 일률적인 정원 감축 할당제로 운영하고 있음 - 2022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5%)를 감축하여 행정안전부가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폐지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실용적 인력운영방향에 맞춰 국민생활·안전, 경제회복 등 필요한 분야 인력은 적극 보강해 나갈 예정임 ○ 이에 따라, 각 부처 1%를 감축하여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배정하는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 일률적 감축이 아닌 범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실제로 감소한 분야 인력을 재배치 운영
19	<p>□ 행사차출경비 지급요건 개정(재정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차출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 다른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 	<p>< 수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정기개정('25.7.)시 기존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행사·축제 지원을 위해'로 개정 완료 ※ 다만, 행사·축제 관련 통계목(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으로 지급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그 외 출연금 등으로 추진하는 행사·축제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지 여부 검토 필요

안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24	<p>□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선거의회자치법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폭행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거나 약하므로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마련 -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더라도 지역 선후배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선정 기준 개선 	<p>< 수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로 지방의회 독립 법률(「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중 -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징계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90일 출석정지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조한 구체적 징계양정 마련 등

□ **일부수용 : 5건**

안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7	<p>□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제도 개선(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시 근무성적 평정자(부서장)와 확인자(실국장)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서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평정자가 다시 평정을 하게 되어 피평정자가 이의신청하거나 평정자가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위원장: 실국장)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p>< 일부수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실·국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의신청 사항을 전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자치단체 현장에서 '근무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대신, 성과관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정소위원회(위원장 실·국장)의 2차 이의신청 결과를 평정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에 보고하도록 개선 ○ 한편, 현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시 공개내용(평정의견, 등급, 순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추진
12	<p>□ 장기교육 연령 제한 및 퇴직준비교육 제도 개선(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훈련 선발기준 연령 폐지 또는 57세 이하로 상향 - 공직 잔여기간 5년 이내인 장기재직자(30년 이상) 중 희망 시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p>< 일부수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선발가능인원부족 등 지자체의 인사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령요건 완화(55세 → 56세) 검토(일부수용) ○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의 이유로 퇴직준비교육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으며, * ('18.11 이데일리 / '20.5 세계일보 / '20.8 매일경제)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배치되어 예산낭비 및 특혜

안전 번호	안전 내용	부서 의견
		<p>비판, 인사적체 해소 또는 퇴출 수단으로 남용 등에 대한 비판</p> <p>** (‘19.6) 2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선정,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 개인별 연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등 / (‘21.12) ‘공로연수’ 명칭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p> <p>· 현재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에서 ‘정년퇴직일 전 5년 이내인 자’로 퇴직준비교육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여론 반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수용곤란)</p>
13	<p>□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 (자치분권제도과)</p> <p>·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p> <p>· 대체인력 인건비, 육아휴직수당, 재난비상근무자 초과근무 수당을 기준인건비에서 제외</p>	<p>< 일부수용 ></p> <p>○ 자치단체 인건비는 지방교부세(기준인건비 반영)를 통해 보전되는 구조로, 기준인건비 준수를 통한 인력 관리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페널티 운영</p> <p>· 페널티 폐지시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p> <p>○ 다만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 항목에 대한 초과지출 허용 확대 추진</p> <p>※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현재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반영</p>
15	<p>□ 소방공무원 계급 정원 비율 조정 (자치분권제도과)</p> <p>· 하위 계급(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의 정원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우수한 현장지휘관의 양성이 어렵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므로</p> <p>· 소방공무원 정원 비율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정원비율 전국 통일)</p>	<p>< 일부수용 ></p> <p>○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도별 소방조직의 구조·특성 및 재정여건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안부에서 정원 비율을 전국 통일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p> <p>· (지자체 소방·경찰공무원 정원규정 §2⑥) 시·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 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p> <p>○ 다만, 노조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계급별 정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 (행안부, 소방청)</p>
20	<p>□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선(지방공공기관관리과)</p> <p>·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 상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인상(8만 → 12만)</p> <p>· 상수도 콜센터 근무자(감정노동자)에 대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신설</p>	<p>< 일부수용 ></p> <p>○ 상수도 콜센터 근무자 등 특정업무 경비 지급 가능하도록 선택항목 편성근거 신설 완료</p> <p>· 금액기준 인상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추가 검토 필요</p>

□ 장기검토 : 6건

양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3	<p>□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월 35만원(시·군 월 60만원까지 가능)에서 월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 시·군 수의직 간 특수업무수당 평준화 	<p>< 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최대 6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수당을 10만원 인상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25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에 대폭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 또한, 인력확보 및 업무수행 환경에 차이가 있는 광역, 기초 간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음 <p>⇒ 다만 지방 수의직 인력확보 어려움을 고려, 처우개선 방안 지속 검토 예정</p>
5	<p>□ 간호직렬 공무원 수당 인상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 면허를 가진 간호직 공무원의 낮은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을 사회복지직에 준하는 수준(10만원)으로 현실화 ※ 특수업무수당 인상(5만원→7만원), 자격증 수당 신설(3만원) 	<p>< 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직 의료업무수당은 5만원이나, 위험근무수당 5만원이 별도 지급되고 있고, 감염병 발생시에는 가중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1급 감염병 대응수당 10만원, 비상근무수당 월 최대 12만원 등이 별도 지급되고 있어 단순히 간호직렬 수당만으로 처우 판단 곤란 - 또한, 간호직을 포함한 기술직군에 지급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이외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적 면허나 자격에 별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고려 필요 - 참고로, 사회복지직과 달리 간호직은 임용직급이 8급으로 우대되어 있음 <p>⇒ 다만, '86년 수당 신설 후 장기간 동결된 점 및 결핵·정신질환 관련 입원환자 간호 등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방안 지속 검토 예정</p>
6	<p>□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인사부서에서는 소수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성과, 보수, 수당 등의 별도 관리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40시간 전환 	<p>< 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인사처와 균형을 맞추어 제도개선 진행하겠음

안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17	<p>□ 간호조무직렬 상위직급 정원 확대 (조직진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질병청 간호조무직렬 전체 340명 중 6급 2명(0.6%), 7급 18명(5.4%), 8급 36명(10.6%), 9급 284명(83.5%)로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고, 7급까지 대부분 근속승진을 하며 7급에 정체(60%)되어 있으므로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렬 6급 정원을 확대하여 타 직렬·타 부처 간 형평성 제고 	<p>< 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직 업무 난이도·책임도, 간호직과의 역할 관계, 타 부처·직렬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 상향 필요성 검토
22	<p>□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 (상훈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공무원 수당이 11년간 동결 상태이므로 인상 필요 (5만원 → 10만원) 	<p>< 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25	<p>□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상향 (공유재산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2019년 기간 동안 공무원의 정원이 약 30% 증가하였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증가추세인데도 청사 기준면적에 변화가 없음 - 청사 공간의 부족으로 외부청사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준면적 현실화, 기준면적 적용시 공무원 등도 포함, 기준면적 적용 인구기준 개선 	<p>< 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기준의 청사 면적기준이 공무원 수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초가 유지되고 있는 점과 청사는 한 번 신축하면 면적 축소가 어려워 과대·호화 운영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의 개정 추진은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신중 검토하겠음

□ **수용곤란 : 10건**

안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1	<p>□ 학교근무수당 인상 및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허용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학교근무수당 인상 (3만원 → 7만원)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허용 	<p>< 수용곤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증가 등 직무 곤란성 및 책임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증빙 없이 수당을 인상하거나, 병급 예외를 허용하기는 어려움 - 수당 인상 요구의 주된 이유인 읍면동 근무자와의 형평성은 읍면동과 학교 간 업무 내용 및 환경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

안전 번호	안전 내용	부서 의견
2	<p>□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재량권 부여(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 팀장 직위 5급은 관리자인데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p>< 수용곤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무수당은 직제상 과장급 이상 직위가 있는 경우 부서 등에 대한 관리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제상 직위가 없는 팀장급에 지급 곤란 - 또한,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예상치 못한 초과근무가 많을 수 있는 지자체 특성상 초과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 지급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우려
4	<p>□ 대체휴무일을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일 이상 정상출근 시,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 출근 시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을 감액하고 있는데, 비상근무나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나 당직휴무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정액분 감액이 발생 - 이는 기관의 필요에 의한 근무를 실시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출근근무일수로 인정 	<p>< 수용곤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시간외 근무 수당 실적분 산정시 일괄 1시간 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 1시간 공제제도 적용 여지가 없는 대체휴무일이나 당직휴무일을 출근일수로 인정하는 것은 시간단위 외출 등 개인별 휴가 및 장기 교육 훈련 일수 산입 등으로 파급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참고로, 대체휴무를 위한 근무시간 산정시 평일 연속근무시 2일차 근무일과 주말 근무일에는 1시간 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월간 평균적인 평일일수가 일반적으로 20여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도 어려움
8	<p>□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무연수에 반영 - 여비, 수당, 경비, 명절휴가비 등 지급 의무화 	<p>< 수용곤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공무원 경력에 대해서만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신분인 실무수습 직원에게 적용 곤란(수용곤란) ※ 현행 실무수습기간은 경력평정과 호봉에 100% 인정 ○ (수당지급 의무화) 실무수습 처우개선을 위해 월정액 공통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을 의무화(25.1.7.시행)하였고, - 재량 규정인 명절휴가비, 여비 등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당이 지급되도록 자치단체 권고(24.10.21. 공문)한 바 있음 - 기 개정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 적용추이를 살펴본 후 필요사항은 추가 검토하겠음(장기검토)

안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9	<p>□ 연가 계산과 가산 산정 방식 개선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일수 계산과 연가일수 가산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인데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 연가일수 계산 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p>< 수용근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학칙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연가일수 미차감),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임 ○ 실근무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연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연가보상비 지급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함
10	<p>□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조기 시행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늦게 시행함에 따라 신규인력이 차년도 1월에 배치되어 인력공백이 발생하므로 - 전국 동시 지방공무원 9급 임용 필기시험을 3월에 시행하고 면접시험 절차를 단축하여 7월 정기인사 시 신규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p>< 수용근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월은 이미 국가직 5-9급, 법원행시, 순경(경찰9급), 소방사(소방9급) 필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수탁 출제 관련 업무(인사처)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시행에 따른 출제 합숙시설 확보, 출제 인력 확보 등 ○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도 공무원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어 관련 기관 협의 필요 ○ 기준인건비 통보(전년도 12월) 후 총원규모 산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등 일련의 시험준비 일정에 3개월 이상 소요 ○ 조기 시행 시 차년도 시험의 준비기간이 짧아지고 국가직 9급 공채와 시험 일정도 겹치므로 예측가능성 결여 및 수험 부담 증가
11	<p>□ 의무교육 이수시간 과다 문제 개선 (지방인사제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80시간)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 의무교육시간 축소(연 80시간→50시간), 법정의무교육 최소화 및 격년제 이수, 집합교육 확대(연 7시간→연 10~14시간) 	<p>< 수용근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발학습 등 상시학습을 통한 개인·조직의 역량 향상, 일과 학습을 연계한 학습문화 정착, 연구모임·코칭·멘토링 등 비정형학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축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 형식적 학습시간 채우기 형태 발생 등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하여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장기검토) ○ 법정교육은 각 개별법에서 연간 이수시간을 정하고 있어 법정교육에 대해 총량제로 관리하거나 격년제 이수를 하기 곤란(수용근관) ○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 이수 부담을

안전 번호	안전 내용	부서 의견
		<p>완화하기 위해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광역 14시간, 기초 7시간)을 폐지함*</p> <p>*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24.5월)</p> <p>-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집합 교육 의무이수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p>
18	<p>□ 당직근무 수당 인상(재정정책과)</p> <p>- 현재 일직은 09:00~18:00, 숙직은 18:00~익일 09:00까지 근무하며 식비도 지급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야간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p> <p>- 일·숙직비 기준액 상향(5만원 →10만원), 당직근무자 급식비 지급</p>	<p>< 수용곤란 ></p> <p>○ 현재 국가에 비하여 자치단체 일·숙직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p> <p>- 자치단체 최대 6만원 지급, 국가(휴일 5만원, 평일 3만원)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p> <p>※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에 '당직제도 개편' 포함. 추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따라 검토할 사안</p>
21	<p>□ 무인민원발급기 불편 사항 개선(주민과)</p> <p>-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p> <p>- 미성년자 2자녀 이상 양육자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p>	<p>< 수용곤란 ></p> <p>○ (인감증명서 발급) 법 개정, 다수의 시스템 개선 등 필요</p> <p>-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일반용 인감 증명서를 대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법원·은행 제출용으로 사용이 어려워 이용이 많지 않을 것임</p> <p>-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등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 소요되는 반면, 2~3년 내 정부24 키오스크 도입 예정으로 실익이 크지 않음</p> <p>※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은행에서는 수리 불가</p> <p>○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상당한 예산과 시간 소요, 실효성 낮음</p> <p>- 수수료 면제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필요</p> <p>- 시군구별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양하며, 시도·시군구(서울)행정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p> <p>- 따라서 신규 증명서 발급 기능, 수수료 면제 기능 등 개발 시 주민등록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업체, 서울행정시스템 등 개발이 필요하여 행정수요에 비해 과다한 예산 투입 필요</p>

안건 번호	안건 내용	부서 의견
23	<p>□ 징계받은 공무원도 일정기간 경과 후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상훈담당관)</p> <p>- 주요 비위 중 일부 비위(소액 여비나 초과 근무수당 등의 공금횡령)로 징계받은 경우에 5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징계 말소 기간 부여</p>	<p>< 수용곤란 ></p> <p>○ 현재 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되나,</p> <p>-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이 가능함</p> <p>-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능함</p> <p>○ 안건의 내용은 주요비위 중 일부 비위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나</p> <p>- 이는 주요비위 대해 포상 추천 제한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p> <p>○ 아울러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요건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국민이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한 요건을 강화해 오고 있는 바, 추천제한 요건 완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p>

□ 목표

-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타임오프제도 마련을 위해 법 개정
- 「근로자의날법」, 「공휴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노동절 휴무 도입
-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 확보
-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 확보

□ 계획

- 「공무원노조법」 개정
 - 행정부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
 -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 등도 병행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 11.)
 - 행정부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 적용
 -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 노동절 휴무 도입
 -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 행동 기간을 정하여 전 단위노조 지역구 의원 간담회 추진
 - * 박홍배(민주) 대표 발의
-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국회 통과
 - 의원 입법 발의된 관계 법령*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추진
 - * 민형배(민주)·신장식(조국)·전종덕(진보) 공동 대표 발의 :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 현수막 내붙임 선전전(9월~)
- 단위노조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9월~)
-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 개정 국회의원 동의 서명 운동(9월~)
-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12. 19.)
- 대선 사업과 연계
 -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질의서 전달 및 공약 추진
- 정부 협의 병행

- 대외협력특위 산하 노동부 소통 채널 유지
- 타임오프 적용으로 인한 인사, 보수, 복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인사처 및 행안부와 긴밀한 협의

○ 대국회 활동

-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토론회 및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 정책간담회 추진

□ 경과

02.11.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03.05.	신정훈 행안위원장 간담회
03.20.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노동존중실천단 의원실 정책 간담회
04.09.	추미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04.14.	김문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04.26.	강훈식 의원(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정책간담회
05.15.	(논평)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하라.
05.16.	(논평)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05.28.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정책질의
06.04.	(성명) 탄핵으로 열린 대선,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의 명령을 기억한다.
06.04.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노조 4차 회의
06.05.	울진군노조 3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6.30.	공무원 교사의 부당명령 거부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07.14.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 정책간담회
07.22.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 정책간담회
08.27.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책간담회
09.03.	국회 여야 보좌진협의회 정책간담회
09.15.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 현수막 내붙임 선보전
09.22.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허성무, 윤병준 의원 동의 서명
10.17.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이정문 의원 동의 서명
10.20.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신영대 의원 동의 서명
10.26.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11.05.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박홍배 의원 동의 서명
11.06.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장철민 의원 동의 서명
11.07.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이수진 의원 동의 서명
11.11.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박정현 의원 동의 서명
11.19.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용혜인 의원 동의 서명
11.20.	(성명)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26.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정책간담회

11.27.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이용우 의원 동의 서명
12.01.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김현 의원 동의 서명
12.10.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
12.19.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12.22.	전공노, 전교조 단식농성장 격려 방문

□ 목표

- 굳건하고 강력한 공노총을 건설하여, 하나 되는 공노총 실현
-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는 공노총
- 조직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더 강한 공노총 실현

□ 계획

- 조직강화특위 운영
 - 조합원 확대, 신규 조직 확대 등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 조직혁신 방안 마련
- 연대 강화 및 소속감 고취
 - 공노총 - 연맹 - 단위노조 간 소속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각 연맹 및 단위노조 직접 의견 청취 등 사업추진
 - 조직강화, 조직혁신을 위한 단위노조 간담회 개최

○ 연맹 및 단위노조 간담회 추진

- 소방노조 집행부 간담회(1. 7.)
- 소방노조 서울소방본부 집행부 간담회(2. 26.)
- 교육청노조 신임 집행부 간담회(3. 7.)
- 영광군노조 조합원 공노총 방문 간담회(3. 14.)
- 임실군노조 조합원 공노총 방문 간담회(5. 15.)
- 완주군노조 간담회(6. 23.)
- 국공노 및 해수부노조 간담회(6. 24.)
- 고창군노조 조합원 공노총 방문 간담회(7. 7.)
- 유성구노조 간담회(11. 12.)

○ 연맹 및 단위노조 투쟁사업 지원 및 공동행동 진행

- 교육청노조, 늘봄학교 업무 행정실 전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3. 19.)
- 경기도청노조,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회 제명 촉구 기자회견(5. 27.)
- 구미시노조,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 요구 집회(6. 23.)
- 해수부노조, 해수부 이전 재검토 요구 대통령실 1인 시위(6. 25. ~ 27.)
- 해수부노조, 해수부 졸속 이전 반대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7. 9.)
- 소방노조, 노조 탄압중단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7. 9.)
- 경찰청노조,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규탄 기자회견(10. 17.)

○ 연맹별 조직사업 지원

- 연맹의 조직사업 활동에 사고노조 복구사업비 지원, 신규노조 지원, 홍보 선전 지원, 복수노조 설립지원 등 추진

○ 연맹별 조직사업 지원 현황

- 소방노조 조직사업 지원(제245차 중앙집행위원회)
- 국공노 중기부지부 소송 지원(제252차 중앙집행위원회)
- 국공노 선관위지부 조직사업 지원(제255차 중앙집행위원회)
- 광역연맹 전남도청노조 조직사업 지원(제255차 중앙집행위원회)
- 국공노 행안부지부 조직사업 지원(제259차 중앙집행위원회)

○ 핵심 조직사업 추진

- 각 연맹의 핵심 조직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조직 확대 사업 추진
- 광역연맹 설립 추진

○ 연맹별 조직 변동 현황

구 분	1월	12월	비고
합 계	74,842	78,344	
시군구연맹	33,623	34,639	
국 공 노	24,473	24,954	· 선거관리위원회 지부, 행정안전부지부 설립
교육청노조	6,230	6,230	
광 역 연 맹	5,100	5,929	· 전남도청열린노조 가입
소 방 노 조	5,416	6,592	

○ 광역연맹 설립

- 10. 24. 창립총회 개최

○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

- 공노총 현안 사업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상·하반기)

○ 법률지원

- 연맹 및 단위노조의 자문 요청에 따른 법률지원(법률 사무소 일과 사람)

○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

- 대선 이후 사무실 정부 지원 복구 추진

□ 경과

01.07.	소방노조 집행부 소통간담회
01.17.	교육청노조 가맹노조 대표자회의 연대 참석
02.04.	시군구연맹 주관 8회 공부가주 연대 참석
02.11.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13대 출범식 연대 참석
02.12.	천안시청노조 8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2.21.	시군구연맹 주관 정책대회 연대참석
02.21.	국공노 정기대의원대회 연대 참석
02.26.	소방노조 서울소방본부 집행부 간담회
03.04.	구미시노조 6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3.07.	교육청노조 신임 집행부 간담회
03.10.	충남교육노조 9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3.14.	영광군노조 조합원 소통간담회
03.19.	교육청노조 주관, 늘봄학교 업무 행정실 전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연대
03.20.	소방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연대 참석
03.21.	고용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 7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3.28.	산불 진화 대응 관련 산림청노조 격려금 전달
03.29.	산불 진화 대응 관련 의성군노조, 영양군노조, 영덕군노조 격려금 전달
04.01.	산불 진화 대응 관련 국가유산청노조 격려금 전달
04.03.	보건복지부노조 대의원대회 연대 참석
04.03.	경찰청노조 대의원대회 연대 참석
04.04.	보건복지부노조 본부세종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지부 출범식 연대 참석
04.10.	질병관리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회 연대 참석
04.16.	군산시노조 대의원 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4.18.	광역연맹 출범 추진 회의
04.22.	시군구연맹 단위노조 사무총장·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연대
04.30.	외교부노조 10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5.13.	시군구연맹 제27차 임시대의원대회 연대 참석
05.15.	임실군노조 워크숍 참석자 소통 간담회
05.20.	봉화군노조 3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5.22.	완도군노조 9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5.27.	경기도청노조 주관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회 제명 촉구 기자회견
06.05.	울진군노조 3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6.05.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주관 한마음 체육대회 연대 참석
06.05.	국공노 주관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 공공아카데미 연대 참석
06.09.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대표자회의 연대 참석
06.16.	부산공무원노조 13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6.23.	(성명)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
06.23.	완주군노조 소통간담회
06.23.	구미시노조 주관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 요구 집회 연대 투쟁
06.24.	국공노 및 해수부노조 소통간담회
06.24.	(성명) 일방적 12월까지 해수부 이전, 재검토하라!
06.25.	일방적 해수부이전 재검토 요구 대통령실 1인 시위
06.26.	일방적 해수부 이전 재검토 요구 대통령실 1인 시위
06.26.	구미시의회 규탄 근조화환 연대 투쟁
06.27.	일방적 해수부 이전 재검토 요구 대통령실 1인 시위
07.02.	(성명) 학교 행정실 법제화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07.03.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운영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연대 참석
07.04.	대전공무원노조연합 합동워크숍 참석자 대상 특강
07.0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9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7.07.	고창군노조 노사워크숍 참석자 소통 간담회
07.09.	해수부노조 주관 해수부 졸속이전 반대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연대 투쟁
07.10.	소방노조 주관 노동조합 탄압 중단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연대 투쟁
07.25.	(성명) 노동조합 활동가 故 이장욱 동지를 추모하며.
07.30.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가입
08.28.	광주시노조 4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9.01.	신안군노조 9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9.03.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10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9.08.	故 이장욱 국토부노조 항공특별위원장 49재 추모식 참석
09.11.	영양군노조 2대 집행부 출범식 연대 참석
09.16.	대형 산불 대응 관련 소방 역할 강화를 위한 '산불과 소방' 국회토론회 연대 참석
09.18.	부산교육노조 노사합동워크숍 참석자 대상 특강
09.19.	경찰청노조 서울지회 노사워크숍 연대 참석
09.23.	양주시노조 주관 9월 직장교육 참석자 대상 특강
09.23.	국공노 주관 '노동조합이 알려주는 공무원 연금 이야기' 연대 참석
09.23.	시군구연맹 주관 '25년 청년정책 워크숍 연대 참석
09.25.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가입
10.10.	(성명) 전남도청 동료의 비보를 애도하며, 고인의 뜻을 헛되지 하지 않겠습니다.
10.17.	경찰청노조 주관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규탄 기자회견 연대 투쟁
10.22.	故 송경일 국공노 사무총장 7기 추모식
10.24.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창립총회
11.12.	유성구노조 소통간담회
12.05.	인천시청노조 12대 집행부 당선인 소통간담회

□ 목표

- 현안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교섭 및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계획

- 정책연구소 운영
 -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 소득 공백 해소 투쟁 정책개발 및 지원
 -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임금 투쟁 정책개발 및 지원
 - 정부교섭(노사협의회), 제도개선, 수당조정, 행안부정책협의체 관련 업무 추진
 - 각 연맹 주요 현안 사항 지원 및 연대
- 국회 토론회 개최
 - 정치 국면을 활용하여 공무원 현안 사항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

○ 대형 산불 대응과 소방의 역할 국회 토론회 '산불과 소방'

- 신정훈 · 정춘생 · 차규근 · 용혜인 국회의원

○ 공무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김성희 · 이수진 · 이용우 · 장철민 · 정춘생 · 전종덕 · 정혜경 · 용혜인 · 한창민 국회의원

○ 법률지원

- 연맹 및 단위노조의 자문요청에 따른 법률지원(법률 사무소 일과 사람)

○ 법률 자문 39건

- 의견서 6건
- 기타 전화 상담 및 이메일 상담 33건

*계약조건 : 온라인·전화·방문 상담 무제한, 의견서 1개월 5건 이내 1년 총 48건 이내

○ 국정감사 대응

- 대외협력 특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회 사업 진행

○ 여야 국회의원실 연속 간담회

○ 여야 보좌진협의회 간담회

○ 국회의장 비서실장 간담회

□ 경과

01.02.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1차 회의
01.03.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1차 회의
01.09.~31.	정책연구소 2025년 제도개선 안건 접수
01.24.	공노총 상반기 연금학교
02.0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2차 회의
02.10.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2차 회의
02.12.	정책연구소 7차 운영회의
02.18.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2차 회의
02.24.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02.25.	공무원연금 정액제 추진 협의회
02.2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간담회
02.25.	정성국 의원실 주관 공무원연금 정책간담회
03.06.	장흥군 공무원 대상 연금 강의
03.11.	(성명) 인권위의 정년연장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
03.11.	정책연구소 3차 전체회의
03.13.	양주시노조 조합원 대상 연금 강의
03.14.	(성명) 내란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의 노후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03.18.	공무원 정년연장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
03.08.	국공노 간부사관학교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3.18.	(입장문) 국회와 정부는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라.
03.19.	(성명) 성남시의회 정년연장 촉구 결의안 적극 환영한다.
03.27.	공무원연금 정액제 관련 노정연구회 4차 회의
04.02.	인사혁신처 연금 총당부채 관련 사전 설명
04.07.	소방노조 부산본부 노사화합 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4.11.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3차 회의
04.1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직원 대상 연금 강의
04.16.	군산시노조 대의원 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04.24.	과기부(우분)노조 핵심 간부학교 교육생 대상 연금 강의
04.29.	정책연구소 워크숍
05.19.	(논평) 정년은 그대로, 연금은 늦게..... 소득공백 5년, 누가 책임질 것인가?
05.20.	(논평) 공무원 임금, 더 이상 국가 재정의 뒷전일 수 없다.
05.21.	제 공무원노조 연금 정책 회의
05.23.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4차 회의
05.26.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 기재부 예산기준과 간담회
05.29.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4차 회의
06.24.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5차 회의 및 인사처 성과급여과 간담회

07.02.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 행안위 소속 의원실 정책간담회
07.1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4차 회의
07.23.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5차 회의
08.04.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5차 회의
08.25.	정책연구소 임금분과 16차 회의
08.27.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책간담회
09.03.	국회 여야 보좌진협의회 정책간담회
09.05.	정책연구소 제도분과 16차 회의
09.16.	대형 산불 대응 관련 소방 역할 강화를 위한 '산불과 소방' 국회토론회 연대 참석
09.22.	공노총 하반기 연금학교
09.23.	국공노 주관 '노동조합이 알려주는 공무원 연금 이야기' 연대 참석
10.15.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촉구 기자회견
10.16.	노후 소득공백 해소 관련 행안부 간담회
10.23.	경찰청노조 대구경찰청지회 조합원 대상 연금 강의
11.20.	교육청노조 간부 대상 연금 강의
11.25.	퇴직자 재고용 관련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간담회
12.03.	소방노조 노사소통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12.04.	경찰청노조 전국 임원진 노사워크숍 참석자 대상 연금 강의

□ 목표

- 계속되는 격변기에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현장 토대 구축
- 민주주의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일상 연대

□ 계획

-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대협의체 운영
 - 공노총 + 전공노 간 정책협의체 정기 운영으로 현안 사항 공동 대응

- 공무원노조 정책연대협의체를 매월 정기 운영하여 현안 사항 공동 대응
-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운영 중
 -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 교육연맹, 민주우체국본부, 경찰직협 참여

- 국회 연대 사업
 - 국회 보좌진협의회 간담회 추진(국정감사 대응, 법률 개정 사업 등)
 - 대외협력 특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회 사업 진행
- 민주주의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일상 연대
 - 5.18 민중항쟁의 길 진행(유적지 탐방 및 묘역 참배. 5월)
 - 8.15 자주평화대회 참여(8월)

- 5.18 광주민중항쟁의 길 행사 진행(5. 14.)
-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대회 참여(8. 13.)

- 연대활동
 - 전국군무원연대, 경찰직협 등과 연대활동 전개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공노총의 연대 성명서(논평) 발표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집행부 간담회(4. 17.)
- (성명)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11. 13.)
- (성명) 경찰공무원 노조법 밥안 발의를 환영한다.(11. 20.)

□ 경과

02.17.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3차 회의
02.18.	정책연구소 연금분과 12차 회의
02.19.	한국은행노조 집행부 간담회
02.20.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02.26.	공무원교원공투위 조직국회의
03.10.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4차 회의
03.19.	공무원교원공투위 조직국회의
03.25.	공무원교원공투위 조직국회의
04.07.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5차 회의
04.10.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04.17.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집행부 간담회
04.24.	공무원교원공투위 조직국회의
05.12.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6차 회의
05.14.	5.18 광주민중항쟁의 길
05.21.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06.19.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7차 회의
07.03.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07.14.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07.22.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8차 회의
08.13.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대회
08.20.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39차 회의
09.24.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40차 회의
09.29.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10.27.	공무원노조 정책연대체 41차 회의
11.05.	공무원교원공투위 집행위원회
11.13.	(성명)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11.20.	(성명)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12.19.	공무원교원공투위 대표자회의

□ 목표

- 다양한 보도자료 배포 채널 확보를 통한 언론홍보 활동 강화
- 공노총 · 연맹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 노조 간부를 위한 교육 추진

□ 계획

- 공노총 보도자료 배포 채널 확대
 - 노동 · 사회 분야 관련 중앙 · 지방 · 인터넷 매체 담당 기자 메일 수집
 - 전 단위노조 공동행동 시 단위노조에 보도자료 표준안 제공하여 기관 출입 기자에게 기사 제공

○ '25년도 기준 취재요청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배포 시 메일링 기자 리스트(2,127명) 배포

- 주요 행사 홍보물을 당일 배포하여 조합원 · 대국민 대상 즉각적인 홍보 진행
 - 언론사 대상 사전 및 사후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의 적시성 확보
 - 조합원 대상 핵심사업 및 성과 사항은 홍보 채널 이외에 즉각적인 전파를 위해 문자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 활용

○ 공노총 주요 사업 관련 보도자료 및 성명서 등 49건 배포, '25년도 공노총 관련 3,927건 보도

1) [언론배포 자료] 보도자료 24건, 성명서 17건, 논평 7건, 입장문 1건 언론매체 보도

2) [매체별 실적] 방송 202건, 중앙지 220건, 노동 전문지 314건, 지방지 930건, 통신사 383건, 포털 1,878건

※ [공노총연맹(각 단위노조 포함) 실적] 공노총 655건, 시군구연맹 1,650건, 국공노 931건, 교육청노조 277건, 광역연맹 364건, 소방노조 50건

- 노동 관련 전문매체와의 유대관계 강화
 - 매일노동뉴스, 퍼블릭타임스, 참여와 혁신, 로이슈, 로리더 등에 지면 및 배너 광고 진행

○ 월간지방정부(300만 원), 퍼블릭타임스(300만 원), 매일노동뉴스(200만 원), 로리더(150만 원), 참여와혁신(100만 원), 로이슈(100만 원) 등 광고비 총 1,150만 원(vat 별도) 집행

○ 정년 연장 및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21대 대통령선거 요구사항, '25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요구사항 등과 연계한 광고물 게시

- 공노총 홍보 매체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 투쟁, 행사 내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인포그래픽·영상 제작

- 웹이미지 317건, 컷툰 49건, 숏츠 33건, 인포그래픽 29건, 기사 28건, 포스터 20건, 추모 10건, 메시지 영상 2건, 카드뉴스 2건 등 총 영상·이미지 홍보물 490건 제작
- 웹툰 9건 제작
- AI를 활용해 웹툰, 컷툰, AI아나운서 등 기존들에서 벗어난 새로운 홍보콘텐츠 개발

- 연맹 간부 교육
 - 상반기(소방노조), 하반기(교육청노조+광역연맹) 간부교육 진행
 - * 교육 시기는 장소 확보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협의에 따라 유동적

- 상반기 소방노조(5. 21. ~23.), 하반기 교육청노조(11. 19. ~ 21.) 간부교육 진행

□ 경과

일 자	구 분	내 용
01.24.	보도자료	현장 공무원의 연금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금학교'
02.11.	보도자료	타임오프 한도 '부처·청'별로 개선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동 발의
02.13.	보도자료	120만 공무원 생존권 쟁취 간부 결의대회
02.17.	기자회견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02.24.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강력 규탄
03.18.	입장문	공무원 정년 연장 5만 입법청원 달성
03.31.	보도자료	경북 산불 피해 관련 소속 단위노조 격려금 전달
04.01.	논평	인사처 '5급 선발 승진제' 5급 고시 정원 실시 주문
04.04.	성명서	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환영
05.10.	보도자료	국회 앞 공무원총력투쟁대회
05.15.	논평	대선 전 공무원 권리 증진 위한 정책 논평
05.21.~23.	교육	소방노조 간부교육
06.19.	기자회견	'26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 요구
06.30.	기자회견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07.02.	성명서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07.25.	성명서	노동조합 활동가 故 이○○ 동지를 추모하며
08.06.	보도자료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08.20.	성명서	소방공무원의 즉각적인 처우개선 요구 성명
09.03.	보도자료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 공동 발의
10.15.	기자회견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미온적 대처 인사처 규탄
11.12.	기자회견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노정 협의 촉구
11.13.	성명서	군무원의 노동 권익 보호 요구 연대 성명
11.18.	보도자료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現 시군구연맹 위원장 당선
11.19.~21.	교육	교육청노조 간부교육
12.18.	보도자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안건

1.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3. 2025년 결산
4. 2026년 사업계획
5. 2026년 예산
6. 기타

안건 1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 개요

- 규약 제27조제3항에 의거, 2025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함.

□ 관련 규정

< 규 약 >

제27조(회계감사위원회)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공노총 사무전반과 재정집행 사항에 대한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내용

- 붙임 2025년도 상·하반기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참고.

202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5. 7. 16(수)~17.(목) / 2일간
- 장 소 : 공노총 사무실
- 감사대상기간 : 2025.01.01.~6.30.(6개월간)
- 피감기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국)
- 감 사 자 :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외 4명
 - 위원장 : 나경필(보건복지부)
 - 위 원 : 황유경(안산시), 여경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 원길호(교육청노조), 이호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분))

II. 감사 방향

- 공노총 규약, 규정 등 제반사항 준수 여부
- 조합비 징수 및 통장관리의 적정성 여부
- 지출 증빙서류 및 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
- 사무총국 운영전반
-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III. 감사대상 조직 현황

- 조직명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제6대)
- 창립/설립일 : 2002.3.16./2012.7.17.(2차 통합)
- 구성: 5개 연맹 114개 노조(본부, 지부 포함)
- 산하연맹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53개 노조)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34개 지부)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1개 노조)
 -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3개 노조)
 - 소방공무원노동조합 (13개 본부)

202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I. 2025년도 상반기 수입·지출 결산 현황

2025년도 상반기 수입·지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1. 총괄(2025.1.1.~6.30.)

(단위 : 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액-지출액)	비고
1,567,179,960	853,399,720	723,521,224	129,878,496	

2. 수입예산(2025.1.1.~6.30.)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567,179,960	853,399,720		853,399,720	54.5%	
2024년도 이월금	146,179,960	146,179,960		146,179,960	100.0%	
조합비 수입	1,359,000,000	677,182,500		677,182,500	49.8%	
기타수입	62,000,000	30,037,260		30,037,260	48.4%	

※ 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비고
총액	30,037,260		30,037,260	
연맹 사무실 사용 분담금	30,000,000		30,000,000	매월500만원(시군구200,국공노100,교육100,소방100)
예금이자	37,260		37,260	

3. 지출예산(2025.1.1.~6.30.)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지출총액	1,567,179,960	723,521,224		723,521,224	843,658,736	46.2%
경상예산(관)	1,003,360,000	471,744,320		471,744,320	531,615,680	47.0%
인건비(항)	595,900,000	274,639,500		274,639,500	321,260,500	46.1%
인건비(목)	495,000,000	236,327,850		236,327,850	258,672,150	47.7%
복리후생 및 수당 등(목)	100,900,000	38,311,650		38,311,650	62,588,350	38.0%
경상적경비	407,460,000	197,104,820		197,104,820	210,355,180	48.4%
일반운영비	313,260,000	150,131,383		150,131,383	163,128,617	47.9%
자산취득비	4,000,000	2,256,581		2,256,581	1,743,419	56.4%
여비	21,600,000	9,591,756		9,591,756	12,008,244	44.4%
업무추진비	17,000,000	9,325,100		9,325,100	7,674,900	54.9%
특수업무활동비	51,6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50.0%
사업예산	512,840,000	251,776,904		251,776,904	261,063,096	49.1%
기획정책사업비	141,840,000	71,573,050		71,573,050	70,266,950	50.5%
특별위원회	5,000,000	211,500		211,500	4,788,500	4.2%
법률사업비	28,200,000	14,585,000		14,585,000	13,615,000	51.7%
정책역량강화	61,640,000	19,356,800		19,356,800	42,283,200	31.4%
회의운영비	47,000,000	37,419,750		37,419,750	9,580,250	79.6%
선거사업비	52,800,000	0		0	52,800,000	0.0%
후보자지원	25,000,000	0		0	25,000,000	0.0%
선거운영비	27,800,000	0		0	27,800,000	0.0%
투쟁사업비	120,000,000	65,577,070		65,577,070	54,422,930	54.6%
투쟁사업비	120,000,000	65,577,070		65,577,070	54,422,930	54.6%
조직강화사업비	89,200,000	60,270,570		60,270,570	28,929,430	67.6%
조직사업비	89,200,000	60,270,570		60,270,570	28,929,430	67.6%
홍보교육사업비	74,000,000	44,193,494		44,193,494	29,806,506	59.7%
홍보사업비	49,000,000	28,867,094		28,867,094	20,132,906	58.9%
교육사업비	25,000,000	15,326,400		15,326,400	9,673,600	61.3%
대외협력사업비	35,000,000	10,162,720		10,162,720	24,837,280	29.0%
대외업무추진비	35,000,000	10,162,720		10,162,720	24,837,280	29.0%
희생자구제기금 적립	20,000,000	0		0	20,000,000	0.0%
사무실설치기금 적립	20,000,000	0		0	20,000,000	0.0%
예비비	10,979,960	0		0	10,979,960	0.0%

□ 희생자구제기금 특별회계

1. 총괄(2025.1.1.~6.30.)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수입액-지출액)	비고
130,390,112	110,186,847	0	110,186,847	

2. 수입내역(2025.1.1.~6.30)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30,390,112	110,186,847		110,186,847	84.5%	
2024년도 이월금	107,590,112	107,590,112		107,590,112	100.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0		0	0.0%	
이자수입	2,800,000	2,596,735		2,596,735	92.7%	

3. 지출내역(2025.1.1.~6.30)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총계	130,390,112	0		0	130,390,112	0.0%
예비비	130,390,112	0		0	130,390,112	0.0%

□ 사무실 설치기금 특별회계

1. 총괄(2025.1.1.~6.30.)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수입액-지출액)	비고
163,008,947	142,833,758	0	142,833,758	

2. 수입내역(2025.1.1.~6.30)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63,008,947	142,833,758		142,833,758	87.6%	
2024년도 이월금	141,008,947	141,008,947		141,008,947	100.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0		0	0.0%	
이자수입	2,000,000	1,824,811		1,824,811	91.2%	

3. 지출내역(2025.1.1.~6.30)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총계	163,008,947	0		0	163,008,947	0.0%
예비비	163,008,947	0		0	163,008,947	0.0%

□ 퇴직연금

1. 총괄(2025.1.1.~6.30.)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118,959,420	105,531,020	0	105,531,020	

2. 수입내역(2025.1.1.~6.30.)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18,959,420	105,531,020		105,531,020	88.7%	
2024년도 이월금	94,959,420	94,959,420		94,959,420	100.0%	
직원퇴직연금 적립	24,000,000	10,571,600		10,571,600	44.0%	

3. 지출내역(2025.1.1.~6.30)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총계	118,959,420	0		0	118,959,420	0.0
예비비	118,959,420	0		0	118,959,420	0.0

□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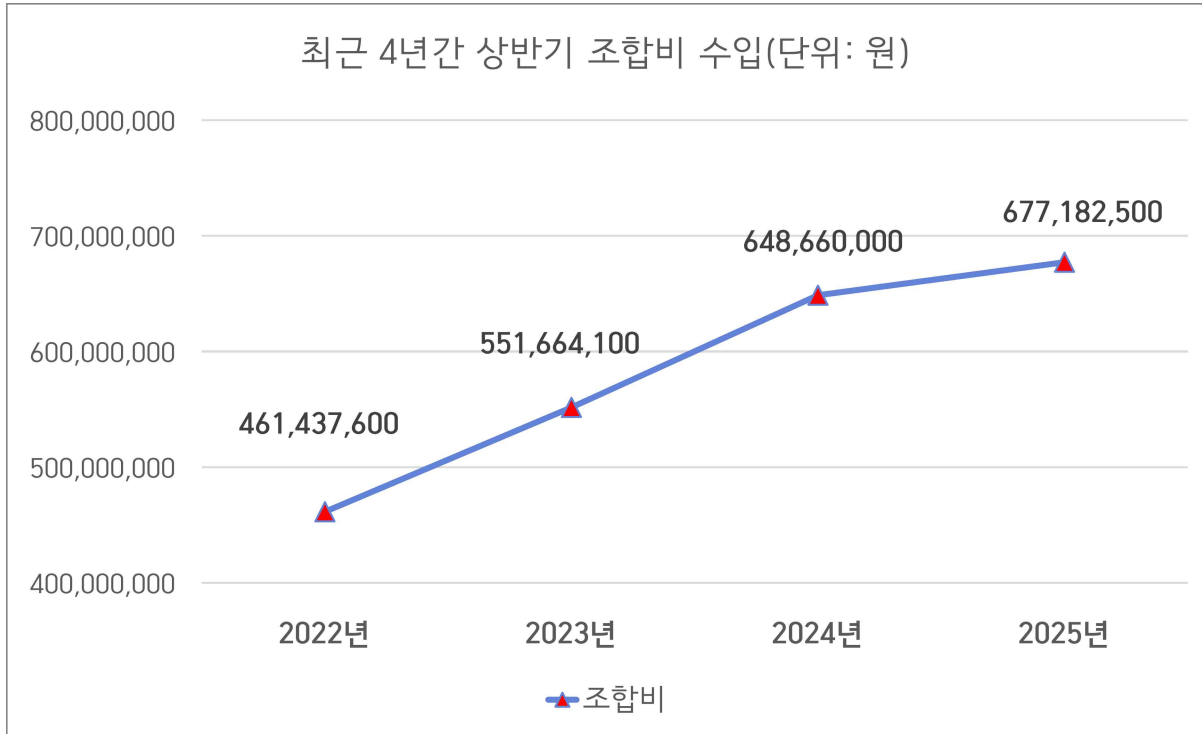
(단위:원)

채권 내역	금액	예치기관(임대인)
사무실 보증금	100,232,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II. 감사결과

□ 확인사항

- 최근 4년간 상반기 조합비 수입은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 사업의 적극 추진에 따른 납부 조합원 수가 증가('24년 상반기 대비 월평균 +3,169명)함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5년 상반기 조합비는 '24년 상반기보다 28,522,500원 증가 하였음을 확인함



-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조합비: 75,243명('24년 대비 증 3,169명), 112,863,750원(증 4,753,750원)
(단위: 명, 원)

구분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증감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월평균 조합비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월평균 조합비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월평균 조합비
합계	72,074	108,110,000	75,243	112,863,750	+3,169	+4,753,750
시군구연맹	33,153	49,729,000	34,453	51,679,250	+1,300	+1,950,250
국공노	22,023	33,035,000	22,769	34,153,000	+746	+1,118,000
교육청노조	6,230	9,345,000	6,230	9,345,000	0	0
광역연맹	5,933	8,899,250	5,928	8,891,750	-5	-7,500
소방노조	4,735	7,101,750	5,863	8,794,750	+1,128	+1,693,000

<'24년-'25년 월평균 조합비 환산 납부 조합원 수 및 월평균 조합비 비교표>

- 상반기 수입(이월금(146,179,960원)+조합비(677,182,500원)+기타수입(30,037,260))

853,399,720원 대비 지출 후 잔액은 129,878,496원임을 확인함

- 일반예금 이자 37,260원을 포함한 지출잔액은 전액 자유입출금예금으로 운용 중임을 확인함

○ 희생자구제기금 적립 총액은 총 110,186,847원임을 확인함

- '24년도 이월금 107,590,112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596,735원
- 정기예금으로 110,186,130원, 자유입출금예금으로 717원 운용중임

○ 정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지속에 따라 사무실을 공노총과 공유하고 있는 연맹들의 사무실 임대료 연맹분담금으로 기타수입 30,00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 (상반기 연맹분담금 내역) 시군구연맹 1,200만원, 국공노 600만원, 교육청 노조 600만원, 소방노조 600만원

○ 사무실 설치기금 총 잔액은 142,833,758원임을 확인함

- '24년도 이월금 141,008,947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824,811원
- 정기예금으로 142,833,397원, 자유입출금예금으로 361원 운용중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100,232,000원으로 임대인에게 예치 중임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 퇴직연금은 총 105,531,020원 적립 중임을 확인함

- '24년도 이월금 94,959,420원과 적립금 10,571,600원을 포함 전액을 확정기여형(DC)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중임을 확인함
- 퇴직연금 자산 평가금액(2025. 6. 30. 기준)은 115,423,181원임을 퇴직연금 잔고 현황 증명을 통해 확인함

○ '25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예산 총 집행률은 46.2%로 '24년도 37.6% 대비 집행률이 8.6%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이는 적극적인 조직강화 및 확대를 위한 사업, 투쟁사업(공투위 총력투쟁, 정책연대 협의체, 기자회견 등), 교육사업의 상반기 적극 추진에 따라 집행률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회계감사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권고사항 1.) “회계감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현 감사기간에

진행중인 건의 경우 차기 회계감사 시 조치 결과를 보고 바람”

→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 및 수당 등 목을 인건비 항목으로 '25년도 지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확인함

(권고사항 2.) “예측 가능한 유휴 예산은 여러 가지 변수 및 집행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 자유 저축예금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계좌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지속 추진하기 바람”

→ 희생자구제기금, 사무실설치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이 발생했음을 확인함

→ 일반회계 상반기 집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가용자금 운영을 위해 정기예금은 하반기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적립 검토 중임을 확인함

(권고사항 3.)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합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조합비 납부기간 준수, 실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조합비 성실 납부 방안을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공노총은 각 연맹에서 인정한 합리적 사유 없이 조합비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

→ 연맹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단위노조의 실 조합원 수 파악, 기한 내 의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함

○ 규정에 따른 여비 및 간담회비, 기타 경비 등 집행 준수 여부 점검 결과

- 「공노총 회계규정」 및 「경비집행규칙」에 맞게 위반사항 없이 잘 집행하였음

○ 각종 지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조합의 수입·지출이 철저히 기록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근거 자료들이 규정에 맞게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함

- 규정과 규칙에 의거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지출항목과 통장 표시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제반 지출증빙서류가 누락 없이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함

□ 권고사항

- 일반회계 가용예산 부족 등 집행 상황을 고려하되, 예측 가능한 유휴 자금은 4분기까지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계좌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각 연맹 및 소속 조합의 당해 회계연도 내 조합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당해 회계 결산 및 집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노총은 당해 연도 해당 조합비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납부 완료 하도록 각 연맹과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함
-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직사업의 성과로 조합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실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조합비 성실 납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공노총은 각 연맹에서 인정한 합리적 사유 없이 조합비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

□ 총 평

- 회계감사 권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연맹과 소속 조합들의 적극적인 조합비 성실납부 협조, 조직사업의 성과에 따라 조합비 환산 납부조합원 수와 조합비가 상승추세에 있으나, 각종 물가 및 임대료 상승 요인, 적극적인 공노총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있어 조합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므로, 조합비 성실 납부 및 적기 납부 여부 점검, 조직 강화 및 확대 사업 등의 지속적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회계규정」 및 「경비집행규칙」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

2025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회계감사 결과	조치 계획(결과)
<p><권고사항></p> <p>일반회계 가용예산 부족 등 집행 상황을 고려하되, 예측 가능한 유휴 자금은 4분기까지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계좌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함</p>	<p>유휴 자금은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가입하여 이자 수입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음</p>
<p><권고사항></p> <p>각 연맹 및 소속 조합의 당해 회계연도 내 조합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당해 회계 결산 및 집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노총은 당해 연도 해당 조합비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각 연맹과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함</p>	<p>연맹과 단위노조에 회계연도 내 의무금 납부가 완료되도록 안내 및 독려하겠음. 주기적으로 연맹과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방안 마련하겠음</p>
<p><권고사항></p> <p>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직사업의 성과로 조합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실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조합비 성실 납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p> <p>- 공노총은 각 연맹에서 인정한 합리적 사유 없이 조합비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p>	<p>실 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의무금 납부 및 합리적 사유 없이 의무금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주기적으로 연맹과 회의를 개최하여 단위노조 실 조합원 수 파악 및 성실 납부 방안 마련하겠음</p>

202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6. 1. 15(목)~ 16(금) / 2일간
- 장 소 : 공노총 사무실
- 감사대상기간 : 2025.07.01.~12.31.(6개월간)
- 피감기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국)
- 감 사 자 :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외 3명
 - 위원장 : 나경필(보건복지부)
 - 위 원 : 황유경(안산시), 여경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 원길호(교육청노조)

II. 감사 방향

- 공노총 규약, 규정 등 제반사항 준수 여부
- 조합비 징수 및 통장관리의 적정성 여부
- 지출 증빙서류 및 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
- 사무총국 운영전반
-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III. 감사대상 조직 현황

- 조직명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제7대)
- 창립/설립일 : 2002.3.16./2012.7.17.(2차 통합)
- 구성: 5개 연맹 112개 노조(본부, 지부 포함)
- 산하연맹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53개 노조)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35개 지부)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1개 노조)
 -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4개 노조)
 - 소방공무원노동조합 (9개 본부)

202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I. 2025년도 하반기 수입·지출 결산 현황

2025년도 상·하반기 수입·지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1. 총괄(2025.1.1.~12.31.)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액-지출액)	비고
1,567,179,960	1,580,311,272	1,438,118,522	142,192,750	

2. 수입예산(2025.1.1.~12.31.)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567,179,960	853,399,720	726,911,552	1,580,311,272	100.8%	
2024년도 이월금	146,179,960	146,179,960	0	146,179,960	100.0%	
조합비 수입	1,359,000,000	677,182,500	691,515,000	1,368,697,500	100.7%	
기타수입	62,000,000	30,037,260	35,396,552	65,433,812	105.5%	

※ 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비고
총액	30,037,260	35,396,552	65,433,812	
연맹 사무실 사용 분담금	30,000,000	30,000,000	60,000,000	매월500만원(시군구200,국공노100,교육100,소방100)
7대 임원선거 기탁금 반환금 잔액	0	2,500,000	2,500,000	
상해보험 해지 환급금	0	2,842,378	2,842,378	(전)전임자 상해보험
예금이자	37,260	51,311	88,571	
각계좌 예금이자등 일반회계에 편입	0	2,863	2,863	임원선거 기탁금 계좌 등

3. 지출예산(2025.1.1.~12.31.)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지출총액	1,567,179,960	723,521,224	714,597,298	1,438,118,522	129,061,438	91.8%
경상예산(관)	1,003,360,000	471,744,320	501,097,037	972,841,357	30,518,643	97.0%
인건비(항)	595,900,000	274,639,500	301,692,440	576,331,940	19,568,060	96.7%
인건비(목)	495,000,000	236,327,850	246,503,300	482,831,150	12,168,850	97.5%
복리후생 및 수당 등(목)	100,900,000	38,311,650	55,189,140	93,500,790	7,399,210	92.7%
경상적경비	407,460,000	197,104,820	199,404,597	396,509,417	10,950,583	97.3%
일반운영비	311,260,000	150,131,383	151,886,945	302,018,328	9,241,672	97.0%
자산취득비	5,500,000	2,256,581	3,177,579	5,434,160	65,840	98.8%
여비	21,600,000	9,591,756	11,635,373	21,227,129	372,871	98.3%
업무추진비	19,000,000	9,325,100	8,704,700	18,029,800	970,200	94.9%
특수업무활동비	50,100,000	25,800,000	24,000,000	49,800,000	300,000	99.4%
사업예산	512,840,000	251,776,904	173,500,261	425,277,165	87,562,835	82.9%
기획정책사업비	124,840,000	71,573,050	31,698,680	103,271,730	21,568,270	82.7%
특별위원회	5,000,000	211,500	1,404,000	1,615,500	3,384,500	32.3%
법률사업비	28,200,000	14,585,000	10,982,750	25,567,750	2,632,250	90.7%
정책역량강화	44,640,000	19,356,800	9,756,640	29,113,440	15,526,560	65.2%
회의운영비	47,000,000	37,419,750	9,555,290	46,975,040	24,960	99.9%
선거사업비	47,800,000	0	27,684,248	27,684,248	20,115,752	57.9%
후보자지원	25,000,000	0	16,595,080	16,595,080	8,404,920	66.4%
선거운영비	22,800,000	0	11,089,168	11,089,168	11,710,832	48.6%
투쟁사업비	110,000,000	65,577,070	21,296,750	86,873,820	23,126,180	79.0%
투쟁사업비	110,000,000	65,577,070	21,296,750	86,873,820	23,126,180	79.0%
조직강화사업비	121,200,000	60,270,570	59,072,350	119,342,920	1,857,080	98.5%
조직사업비	121,200,000	60,270,570	59,072,350	119,342,920	1,857,080	98.5%
홍보교육사업비	80,000,000	44,193,494	25,553,603	69,747,097	10,252,903	87.2%
홍보사업비	49,000,000	28,867,094	10,550,213	39,417,307	9,582,693	80.4%
교육사업비	31,000,000	15,326,400	15,003,390	30,329,790	670,210	97.8%
대외협력사업비	29,000,000	10,162,720	8,194,630	18,357,350	10,642,650	63.3%
대외업무추진비	29,000,000	10,162,720	8,194,630	18,357,350	10,642,650	63.3%
희생자구제기금 적립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0	100.0%
사무실설치기금 적립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0	100.0%
예비비	10,979,960	0	0	0	10,979,960	0.0%

□ 희생자구제기금 특별회계

1. 총괄(2025.1.1.~12.31.)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수입액-지출액)	비고
130,390,112	130,187,833	0	130,187,833	

2. 수입내역(2025.1.1.~12.31.)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30,390,112	110,186,847	20,000,986	130,187,833	99.8%	
2024년도 이월금	107,590,112	107,590,112	0	107,590,112	100.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100.0%	
이자수입	2,800,000	2,596,735	986	2,597,721	92.8%	

3. 지출내역(2025.1.1.~12.31.)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총계	130,390,112	0	0	0	130,390,112	0.0%
예비비	130,390,112	0	0	0	130,390,112	0.0%

□ 사무실 설치기금 특별회계

1. 총괄(2025.1.1.~12.31.)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수입액-지출액)	비고
163,008,947	162,833,922	0	162,833,922	

2. 수입내역(2025.1.1.~12.31.)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63,008,947	142,833,758	20,000,164	162,833,922	99.9%	
2024년도 이월금	141,008,947	141,008,947	0	141,008,947	100.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0	20,000,000	20,000,000	100.0%	
이자수입	2,000,000	1,824,811	164	1,824,975	91.2%	

3. 지출내역(2025.1.1.~12.31.)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총계	163,008,947	0	0	0	163,008,947	0.0%
예비비	163,008,947	0	0	0	163,008,947	0.0%

□ 퇴직연금

1. 총괄(2025.1.1.~12.31.)

(단위: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118,959,420	116,295,840	0	116,295,840	

2. 수입내역(2025.1.1.~12.31.)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수입총액	118,959,420	105,531,020	10,764,820	116,295,840	97.8%	
2024년도 이월금	94,959,420	94,959,420	0	94,959,420	100.0%	
직원퇴직연금 적립	24,000,000	10,571,600	10,764,820	21,336,420	88.9%	

3. 지출내역(2025.1.1.~12.31.)

(단위: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지출액)	집행률 (%)
		상반기	하반기	계		
총계	118,959,420	0	0	0	118,959,420	0.0
예비비	118,959,420	0	0	0	118,959,420	0.0

□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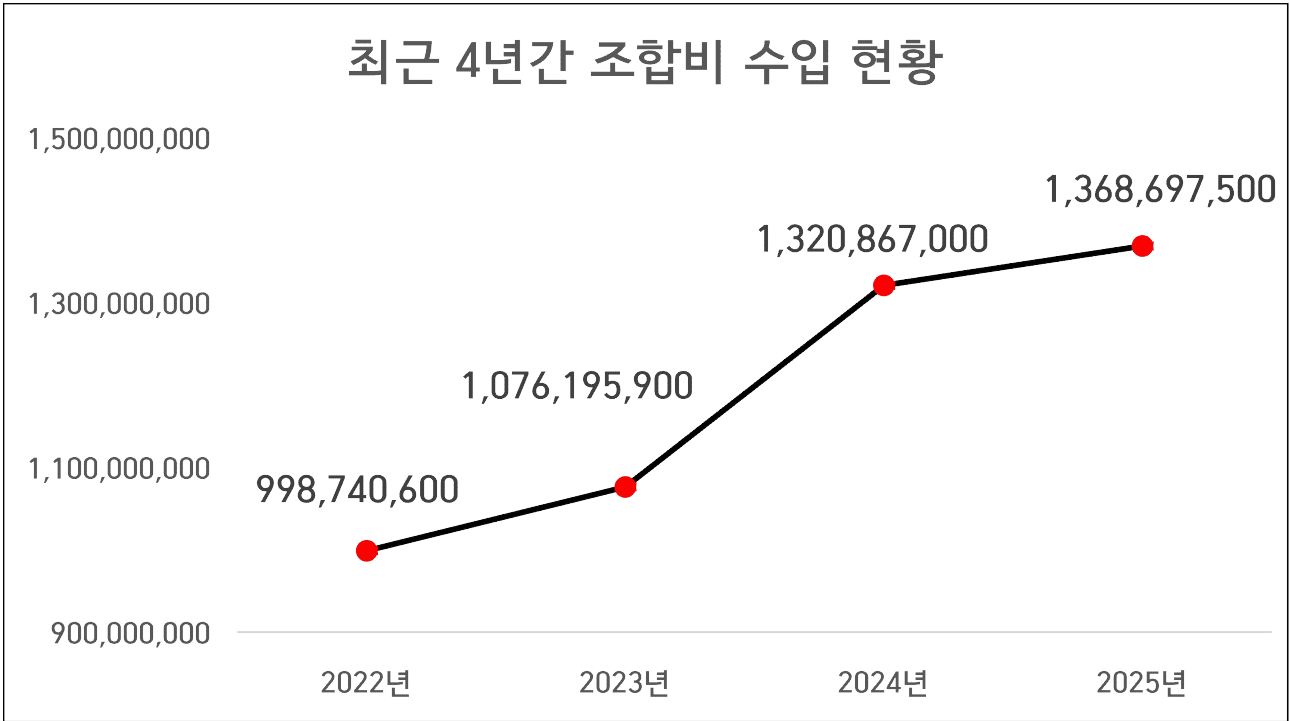
(단위:원)

채권 내역	금액	예치기관(임대인)
사무실 보증금	100,232,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II. 감사결과

□ 확인사항

- 최근 4년간 조합비 수입은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 사업의 적극 추진에 따른 납부 조합원 수가 증가('24년 대비 월평균 +2,656명)함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5년 조합비는 '24년보다 28,522,500원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76,038명('24년 대비 증 2,656명), 조합비: 114,057,000원(증 3,984,000원)

(단위: 명, 원)

구분	'24년		'25년		증감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월평균 조합비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월평균 조합비	월평균 납부 조합원 수	월평균 조합비
합계	73,382	110,073,000	76,038	114,057,000	+2,656	+3,984,000
시군구연맹	33,557	50,335,500	34,511	51,766,500	+954	+1,431,000
국공노	22,796	34,194,000	23,176	34,764,000	+380	+570,000
교육청노조	6,230	9,345,000	6,230	9,345,000	0	0
광역연맹	5,938	8,907,000	5,928	8,892,000	-10	-15,000
소방노조	4,861	7,291,500	6,193	9,289,500	+1,332	+1,998,000

<'24년-'25년 월평균 조합비 환산 납부 조합원 수 및 월평균 조합비 비교표>

※ 월평균 납부조합원 수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하여 합계에 ±1 오차 가능

- 수입 1,580,311,272원(이월금(146,179,960원)+조합비(1,368,697,500원)+가타수입(65,433,812))

대비 지출 1,438,118,522원 후 잔액은 142,192,750원임을 확인함

- 특히, 총 수입예산 1,567,179,960원 대비 실제 총 수입액은 1,580,311,272원으로 초과수입 13,131,312원(0.8%)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 초과수입 내역은 조합비 9,697,500원, 기타수입 3,433,812원(기탁금 반환금, 상해보험 해지 환급금, 기타 예금이자 등) 임을 확인함
- 지출잔액은 전액 자유입출금예금으로 운용중임을 확인함

○ 희생자구제기금 적립 총액은 총 130,187,833원임을 확인함

- '24년도 이월금 107,590,112원, '25년도 적립금 20,000,000원, 이자수입 2,597,721원
- 정기예금으로 110,186,130원, 자유입출금예금으로 20,001,703원 운용중임

○ 정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지속에 따라 사무실을 공노총과 공유하고 있는 연맹들의 사무실 임대료 연맹분담금(기타수입)이 60,000,000원임을 확인함

- (연맹분담금 내역) 시군구연맹 2,400만원, 국공노 1,200만원, 교육청노조 1,200만원, 소방노조 1,200만원

○ 사무실 설치기금 총 잔액은 162,833,922원임을 확인함

- '24년도 이월금 141,008,947원, '25년도 적립금 20,000,000원, 이자수입 1,824,975원
- 정기예금으로 162,833,758원, 자유입출금예금으로 164원 운용중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100,232,000원으로 임대인에게 예치 중임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 퇴직연금은 총 116,295,840원 적립 중임을 확인함

- '24년도 이월금 94,959,420원과 적립금 21,336,420원을 포함 전액을 확정기여형(DC)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중임을 확인함
- 퇴직연금 자산 평가금액(2025. 12. 31. 기준)은 127,529,456원임을 퇴직연금 잔고 현황 증명을 통해 확인함

○ (집행률 점검 결과) '25회계연도 예산 총 집행률은 91.8%로 '24년도 89.3% 대비 2.5%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최근 4년간 조직, 교육 및 투쟁사업 강화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증가 추세임을 확인함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집행률(%)	70.2	88.5	88.8	91.8

○ 회계감사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권고사항 1.) “일반회계 가용예산 부족 등 집행 상황을 고려하되, 예측 가능한 유휴 자금은 4분기까지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계좌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함”

→ ‘25년도 희생자구제기금 적립금은 일반예금 예치중(’25. 12. 31.)임을 확인 하였으나, 이자 가산금리 확보를 위해 기존 희생자구제기금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운용중(’26. 1. 5.)임을 확인함

(권고사항 2.) “각 연맹 및 소속 조합의 당해 회계연도 내 조합비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하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당해 회계 결산 및 집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노총은 당해 연도 해당 조합비는 회계연도 말일 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각 연맹과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함”

→ 각 연맹 및 소속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부 사례(3건)를 제외한 대부분 당해 회계연도 내 조합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권고사항 3.)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직사업의 성과로 조합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실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조합비 성실 납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공노총은 각 연맹에서 인정한 합리적 사유 없이 조합비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

→ 연맹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단위노조의 실 조합원 수 파악, 기한 내 의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함

(권고사항 4.) ’24년 상반기 감사 시 권고하였던 “상반기 집행률이 낮거나 없는 예산 항목에 대해 하반기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추가예산 소요가 있는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 강화를 권고함”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소 여유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조직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예산 전용

(3회) 및 세목변경(1회) 등 내역을 확인함

- 규정에 따른 여비 및 간담회비, 기타 경비 등 집행 준수 여부 점검 결과
 - 「공노총 회계규정」 및 「경비집행규칙」에 맞게 위반사항 없이 잘 집행하였음
- 각종 지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 조합의 수입·지출이 철저히 기록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근거 자료들이 규정에 맞게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함
 - 규정과 규칙에 의거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지출항목과 통장 표시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제반 지출증빙서류가 누락 없이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함

□ 권고사항

- 정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할 소중한 조합비(연 119,328천원)가 임대료 지급에 소요되어 조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가 정부 예산에 다시 편성되도록 노사협의 강화를 권고함
- 조직강화를 위해 연맹 및 단위노조에 500만원 이상 지원금(조직화 사업 등)을 지원한 경우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함
-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정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상 운영했던 정책연구소에 대해 규약(기구) 또는 규정에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마련 검토를 권고함
- 현재 조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합 업무내용, 모바일 정보 접근성, 가독성 등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함
 - 조합 모바일 페이지 신설, 정보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한 홈페이지 및 홍보수단 등의 전면개편 검토를 권고함
- 예측 가능한 유휴 자금은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계좌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지속 추진하여 각종 사업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해 회계연도 내 조합비 납부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납부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함으로 공노총은 당해 연도 해당 조합비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
-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직사업의 성과로 조합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실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조합비 성실 납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공노총은 실 조합원 수 제출 요구(공문), 단위노조 선거인 수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조합원 수를 적극 파악하고 조합에서 인정한 사유 없이 조합비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

□ 총 평

- 회계감사 권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연맹과 소속 조합들의 적극적인 조합비 성실납부 협조, 조직사업의 성과에 따라 납부조합원 수와 조합비가 상승추세에 있고, 수입예산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등 조합재정이 획기적으로 안정되었으나,
 - 각종 물가 및 임대료 상승 요인, 적극적인 공노총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있어 조합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므로,
 - 조합비 성실 납부 및 적기 납부 여부 점검, 조직 강화 및 확대 사업을 계속 추진 하고 조합사무실 임대료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회계규정」 및 「경비집행규칙」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

2025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회계감사 결과	조치 계획(결과)	비고
<p><권고사항></p> <p>정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할 소중한 조합비(연 119,328천원)가 임대료 지급에 소요되어 조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가 정부 예산에 다시 편성되도록 노사협의 강화를 권고함</p>	<p>노동조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의 정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겠음</p>	추진중
<p><권고사항></p> <p>조직강화를 위해 연맹 및 단위노조에 500만원 이상 지원금(조직화 사업 등)을 지원한 경우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함</p>	<p>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p>	추진중
<p><권고사항></p> <p>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정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상 운영했던 정책연구소에 대해 규약(기구) 또는 규정에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마련 검토를 권고함</p>	<p>제2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책기획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음 (2026.1.21)</p>	완료
<p><권고사항></p> <p>현재 조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합 업무내용, 모바일 정보 접근성, 가독성 등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함</p> <p>- 조합 모바일 페이지 신설, 정보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한 홈페이지 및 홍보 수단 등의 전면개편 검토를 권고함</p>	<p>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운영 중임 (2026.1.19.부터)</p> <p>향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조합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음</p>	추진중
<p><권고사항></p> <p>예측 가능한 유휴 자금은 정기예금 또는 이율이 높은 계좌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지속 추진하여 각종 사업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p>	<p>유휴 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입(2026.1.22.)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완료

<p><권고사항>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해 회계연도 내 조합비 납부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납부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함으로 공노총은 당해 연도 해당 조합비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p>	연맹과 단위노조에 회계연도 내 의무금 납부가 완료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 및 독려 하겠음	추진중
<p><권고사항> 모든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직사업의 성과로 조합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실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조합비 성실 납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노총은 실 조합원 수 제출 요구(공문), 단위노조 선거인 수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 조합원 수를 적극 파악하고 조합에서 인정한 사유 없이 조합비 축소납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권고함 	단위노조의 실 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의무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 및 모니터링하겠음	추진중

안건 2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 개요

- 규약 제27조제1항에 의거,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 임기(3년) : 2026. 3. 6. ~ 2029. 3. 5.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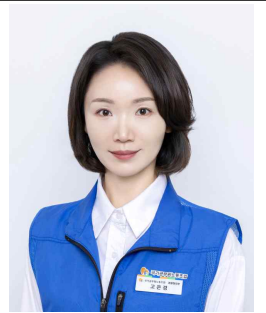
< 규약 >

제27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장과 4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경과

- 선거공고 : 2026. 2. 20.(목)
- 후보자 등록 : 2026. 2. 23.(월) ~ 2. 25.(수)

□ 후보자

기호	이름	소속(직책)	주요경력
단독 후보	고은경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사무총장)	현) 국공노 경찰청지부 사무총장 공노총 정책기획연구소 제도분과 위원 전) 국공노 경찰청지부 경기북부지회장 국공노 경찰청지부 경기북부지회 사무국장 국공노 경찰청지부 경기북부지회 홍보부장

□ 의결주문

-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25년 결산

□ 개요

- 규약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거, 2025년 조합비 수입·지출을 결산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규 약 >

제14조(기능)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내용

- 2025년 조합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일반회계	1,567,179,960	1,580,311,272	1,438,118,522	142,192,750	
특별회계	희생자구제기금	130,390,112	130,187,833	-	130,187,833
	사무실 설치기금	163,008,947	162,833,922	-	162,833,922
	퇴직연금	118,959,420	116,295,840	-	116,295,840
채권	-	-	-	100,232,000	사무실보충금

- 세부 내역은 붙임 결산 보고서 참고

□ 의결주문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일반회계 결산 보고 >

1. 수입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합계	비교증감	수입률
수입총액	1,567,179,960	1,580,311,272	13,131,312	100.8%
이월금	146,179,960	146,179,960	-	100.0%
총연맹비	1,359,000,000	1,368,697,500	9,697,500	100.7%
기타수입	62,000,000	65,433,812	3,433,812	105.5%

2-1. 지출(세목 조정 전)

과목별	내역	(최종)예산액	지출합계	잔액	집행률
지출총액		1,567,179,960	1,438,118,522	129,061,438	91.8%
경상예산(관)		1,003,360,000	972,841,357	30,518,643	97.0%
인건비(항)	소계	595,900,000	576,331,940	19,568,060	96.7%
인건비(목)	소 계	495,000,000	482,831,150	12,168,850	97.5%
전임자		289,000,000	288,438,240	561,760	99.8%
사무처직원		206,000,000	194,392,910	11,607,090	94.4%
복리후생 및 수당 등(목)	소 계	100,900,000	93,500,790	7,399,210	92.7%
전임자 수당		18,000,000	18,000,000	-	100.0%
전임자 연금보전수당		5,400,000	5,400,000	-	100.0%
연가보상비		15,600,000	10,593,430	5,006,570	67.9%
직원 정근수당		13,100,000	12,962,000	138,000	98.9%
복지포인트수당		3,500,000	3,500,000	-	100.0%
직원 가족수당		4,800,000	3,960,000	840,000	82.5%
직원 장려수당		20,900,000	20,830,960	69,040	99.7%
직원 명절휴가비		15,700,000	15,554,400	145,600	99.1%
건강검진비		2,400,000	1,200,000	1,200,000	50.0%
직원 생일상품권		500,000	500,000	-	100.0%
직원 여름휴가 지원비		1,000,000	1,000,000	-	100.0%
경상적경비	소계	407,460,000	396,509,417	10,950,583	97.3%
일반운영비	소 계	311,260,000	302,018,328	9,241,672	97.0%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01,000,000	200,661,800	338,200	99.8%
사무기기관리		4,200,000	2,990,000	1,210,000	71.2%
세무기장, 공과금		10,000,000	8,487,475	1,512,525	84.9%
잡화구입		6,000,000	4,669,060	1,330,940	77.8%
택배 발송		600,000	154,250	445,750	25.7%
차량렌트대여 등		3,600,000	3,065,620	534,380	85.2%
특근매식비		1,000,000	365,900	634,100	36.6%
전임자 주택수당		28,800,000	28,800,000	-	100.0%
전임자 통신비		2,160,000	2,160,000	-	100.0%

	상해보험	2,900,000	2,627,310	272,690	90.6%
	직원 퇴직연금 적립	24,000,000	21,957,003	2,042,997	91.5%
	4대보험 부담금	27,000,000	26,079,910	920,090	96.6%
자산취득비	소 계	5,500,000	5,434,160	65,840	98.8%
	사무용 가구	1,000,000	-	1,000,000	0.0%
	컴퓨터 및 영상음향 등 장비	4,500,000	5,434,160	- 934,160	120.8%
여비	소 계	21,600,000	21,227,129	372,871	98.3%
	관외 출장	19,200,000	19,668,569	- 468,569	102.4%
	관내 출장	2,400,000	1,558,560	841,440	64.9%
업무추진비	소 계	19,000,000	18,029,800	970,200	94.9%
	가맹노조 경조비	7,000,000	6,902,800	97,200	98.6%
	가맹노조 업무협의 및 행사격려	12,000,000	11,127,000	873,000	92.7%
특수업무활동 비	소계	50,100,000	49,800,000	300,000	99.4%
	위원장	12,000,000	12,000,000	-	100.0%
	수석부위원장	9,600,000	9,600,000	-	100.0%
	사무총장	8,400,000	8,400,000	-	100.0%
	부위원장	16,500,000	16,200,000	300,000	98.2%
	본부장	3,600,000	3,600,000	-	100.0%
사업예산		512,840,000	425,277,165	87,562,835	82.9%
기획정책사업비	소계	124,840,000	103,271,730	21,568,270	82.7%
	특별위원회	소 계	5,000,000	1,615,500	3,384,500
	위원회 운영비	2,000,000	1,615,500	384,500	80.8%
	워크숍 및 자료집	3,000,000	-	3,000,000	0.0%
법률사업비	소 계	28,200,000	25,567,750	2,632,250	90.7%
	법률노무자문료	13,200,000	13,200,000	-	100.0%
	법률지원비	15,000,000	12,367,750	2,632,250	82.5%
정책역량강화	소 계	44,640,000	29,113,440	15,526,560	65.2%
	정책연구소 운영	37,440,000	24,808,160	12,631,840	66.3%
	정책토론회	3,000,000	454,500	2,545,500	15.2%
	지도자문위원회	3,200,000	3,709,030	- 509,030	115.9%
	연구용역사업	-	-	-	
	도서 및 논문 구입	1,000,000	141,750	858,250	14.2%
회의운영비	소 계	47,000,000	46,975,040	24,960	99.9%
	전국대의원대회	30,000,000	32,221,580	- 2,221,580	107.4%
	중앙위원회	4,000,000	-	4,000,000	0.0%
	중앙집행위원회	5,000,000	5,913,100	- 913,100	118.3%
	기타회의	8,000,000	8,840,360	- 840,360	110.5%
선거사업비	소계	47,800,000	27,684,248	20,115,752	57.9%
후보자지원	소 계	25,000,000	16,595,080	8,404,920	66.4%

	위원장 후보	15,000,000	10,000,000	5,000,000	66.7%
	부위원장 후보	10,000,000	6,595,080	3,404,920	66.0%
선거운영비	소 계	22,800,000	11,089,168	11,710,832	48.6%
	포스터, 홍보물 등(발송비포함)	6,000,000	7,239,000	- 1,239,000	120.7%
	동영상 제작비(정책토론회 등)	5,000,000	-	5,000,000	0.0%
	온라인 투표비	3,000,000	1,785,808	1,214,192	59.5%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8,800,000	2,064,360	6,735,640	23.5%
	투쟁사업비	소 계	110,000,000	6,873,820	3,126,180
투쟁사업비	소 계	110,000,000	86,873,820	23,126,180	79.0%
	기자회견 등 각종투쟁	110,000,000	86,873,820	23,126,180	79.0%
조직강화사업비	소 계	121,200,000	119,342,920	1,857,080	98.5%
조직사업비	소 계	121,200,000	119,342,920	1,857,080	98.5%
	순회 간담회비	12,600,000	12,028,340	571,660	95.5%
	각종 행사지원	11,600,000	11,410,000	190,000	98.4%
	조직사업	97,000,000	95,904,580	1,095,420	98.9%
홍보교육사업비	소 계	80,000,000	69,747,097	10,252,903	87.2%
홍보사업비	소 계	49,000,000	39,417,307	9,582,693	80.4%
	홍보물, 영상제작 등	30,000,000	22,903,593	7,096,407	76.3%
	언론홍보사업	15,400,000	14,318,290	1,081,710	93.0%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3,600,000	2,195,424	1,404,576	61.0%
교육사업비	소 계	31,000,000	30,329,790	670,210	97.8%
	노조간부 교육	31,000,000	30,329,790	670,210	97.8%
대외협력사업비	소 계	29,000,000	18,357,350	10,642,650	63.3%
대외업무추진비	소 계	29,000,000	18,357,350	10,642,650	63.3%
	대국회활동	8,000,000	4,371,760	3,628,240	54.6%
	대정부활동	3,000,000	2,191,290	808,710	73.0%
	제단체연대	14,000,000	6,963,040	7,036,960	49.7%
	기타대외활동	4,000,000	4,831,260	- 831,260	120.8%
희생자 구제금 적립		20,000,000	20,000,000	-	100.0%
사무실 설치기금 적립		20,000,000	20,000,000	-	100.0%
예비비		10,979,960	-	10,979,960	0.0%

○ 지출 세목 예산 조정

목 내역	증액 세목 내역	감액 세목 내역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영상음향장비 등 1,000,000원	사무용 가구 1,000,000원
여비	관외 출장 600,000원	관내 출장 600,000원
정책역량강화	지도자문위원회 1,000,000원	정책토론회 1,000,000원

회의운영비	전국대의원대회 2,230,000원	중앙위원회 2,230,000원
회의운영비	중앙집행위원회 920,000원	중앙위원회 920,000원
회의운영비	기타회의 850,000원	중앙위원회 850,000원
선거운영비	포스터, 홍보물 등(발송비포함) 1,500,000원	동영상 제작비(정책토론회 등) 1,500,000원
대외업무추진비	기타 대외 활동 1,000,000원	제단체연대 1,000,000원

2-2. 지출(세목 조정 후 최종)

과목별	내역	(최종)예산액	지출합계	잔액	집행률
지출총액		1,567,179,960	1,438,118,522	129,061,438	91.8%
경상예산(관)		1,003,360,000	972,841,357	30,518,643	97.0%
인건비(항)	소계	595,900,000	576,331,940	19,568,060	96.7%
인건비(목)	소 계	495,000,000	482,831,150	12,168,850	97.5%
	전임자	289,000,000	288,438,240	561,760	99.8%
	사무처직원	206,000,000	194,392,910	11,607,090	94.4%
복리후생 및 수당 등(목)	소 계	100,900,000	93,500,790	7,399,210	92.7%
	전임자 수당	18,000,000	18,000,000	-	100.0%
	전임자 연금보전수당	5,400,000	5,400,000	-	100.0%
	연가보상비	15,600,000	10,593,430	5,006,570	67.9%
	직원 정근수당	13,100,000	12,962,000	138,000	98.9%
	복지포인트수당	3,500,000	3,500,000	-	100.0%
	직원 가족수당	4,800,000	3,960,000	840,000	82.5%
	직원 장려수당	20,900,000	20,830,960	69,040	99.7%
	직원 명절휴가비	15,700,000	15,554,400	145,600	99.1%
	건강검진비	2,400,000	1,200,000	1,200,000	50.0%
	직원 생일상품권	500,000	500,000	-	100.0%
	직원 여름휴가 지원비	1,000,000	1,000,000	-	100.0%
경상적경비	소계	407,460,000	396,509,417	10,950,583	97.3%
일반운영비	소 계	311,260,000	302,018,328	9,241,672	97.0%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01,000,000	200,661,800	338,200	99.8%
	사무기기관리	4,200,000	2,990,000	1,210,000	71.2%
	세무기장, 공과금	10,000,000	8,487,475	1,512,525	84.9%
	잡화구입	6,000,000	4,669,060	1,330,940	77.8%
	택배 발송	600,000	154,250	445,750	25.7%
	차량렌트대여 등	3,600,000	3,065,620	534,380	85.2%
	특근매식비	1,000,000	365,900	634,100	36.6%
	전임자 주택수당	28,800,000	28,800,000	-	100.0%
	전임자 통신비	2,160,000	2,160,000	-	100.0%
	상해보험	2,900,000	2,627,310	272,690	90.6%
	직원 퇴직연금 적립	24,000,000	21,957,003	2,042,997	91.5%

	4대보험 부담금	27,000,000	26,079,910	920,090	96.6%
자산취득비	소 계	5,500,000	5,434,160	65,840	98.8%
	사무용 가구	-	-	-	
	컴퓨터 및 영상음향 장비 등	5,500,000	5,434,160	65,840	98.8%
여비	소 계	21,600,000	21,227,129	372,871	98.3%
	관외 출장	19,800,000	19,668,569	131,431	99.3%
	관내 출장	1,800,000	1,558,560	241,440	86.6%
업무추진비	소 계	19,000,000	18,029,800	970,200	94.9%
	가맹노조 경조비	7,000,000	6,902,800	97,200	98.6%
	가맹노조 업무협의 및 행사격려	12,000,000	11,127,000	873,000	92.7%
특수업무활동비	소계	50,100,000	49,800,000	300,000	99.4%
	위원장	12,000,000	12,000,000	-	100.0%
	수석부위원장	9,600,000	9,600,000	-	100.0%
	사무총장	8,400,000	8,400,000	-	100.0%
	부위원장	16,500,000	16,200,000	300,000	98.2%
	본부장	3,600,000	3,600,000	-	100.0%
사업예산		512,840,000	425,277,165	87,562,835	82.9%
기획정책사업비	소계	124,840,000	103,271,730	21,568,270	82.7%
특별위원회	소 계	5,000,000	1,615,500	3,384,500	32.3%
	위원회 운영비	2,000,000	1,615,500	384,500	80.8%
	워크숍 및 자료집	3,000,000	-	3,000,000	0.0%
법률사업비	소 계	28,200,000	25,567,750	2,632,250	90.7%
	법률노무자문료	13,200,000	13,200,000	-	100.0%
	법률지원비	15,000,000	12,367,750	2,632,250	82.5%
정책역량강화	소 계	44,640,000	29,113,440	15,526,560	65.2%
	정책연구소 운영	37,440,000	24,808,160	12,631,840	66.3%
	정책토론회	2,000,000	454,500	1,545,500	22.7%
	지도자문위원회	4,200,000	3,709,030	490,970	88.3%
	연구용역사업	-	-	-	
	도서 및 논문 구입	1,000,000	141,750	858,250	14.2%
회의운영비	소 계	47,000,000	46,975,040	24,960	99.9%
	전국대의원대회	32,230,000	32,221,580	8,420	100.0%
	중앙위원회	-	-	-	
	중앙집행위원회	5,920,000	5,913,100	6,900	99.9%
	기타회의	8,850,000	8,840,360	9,640	99.9%
선거사업비	소계	47,800,000	27,684,248	20,115,752	57.9%
후보자지원	소 계	25,000,000	16,595,080	8,404,920	66.4%
	위원장 후보	15,000,000	10,000,000	5,000,000	66.7%
	부위원장 후보	10,000,000	6,595,080	3,404,920	66.0%
선거운영비	소 계	22,800,000	11,089,168	11,710,832	48.6%

	포스터, 홍보물 등(발송비포함)	7,500,000	7,239,000	261,000	96.5%
	동영상 제작비(정책토론회 등)	3,500,000	-	3,500,000	0.0%
	온라인 투표비	3,000,000	1,785,808	1,214,192	59.5%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8,800,000	2,064,360	6,735,640	23.5%
투쟁사업비	소계	110,000,000	6,873,820	3,126,180	79.0%
투쟁사업비	소 계	110,000,000	86,873,820	23,126,180	79.0%
	기자회견 등 각종투쟁	110,000,000	86,873,820	23,126,180	79.0%
조직강화사업비	소계	121,200,000	119,342,920	1,857,080	98.5%
조직사업비	소 계	121,200,000	119,342,920	1,857,080	98.5%
	순회 간담회비	12,600,000	12,028,340	571,660	95.5%
	각종 행사지원	11,600,000	11,410,000	190,000	98.4%
	조직사업	97,000,000	95,904,580	1,095,420	98.9%
홍보교육사업비	소계	80,000,000	69,747,097	10,252,903	87.2%
홍보사업비	소 계	49,000,000	39,417,307	9,582,693	80.4%
	홍보물, 영상제작 등	30,000,000	22,903,593	7,096,407	76.3%
	언론홍보사업	15,400,000	14,318,290	1,081,710	93.0%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3,600,000	2,195,424	1,404,576	61.0%
교육사업비	소 계	31,000,000	30,329,790	670,210	97.8%
	노조간부 교육	31,000,000	30,329,790	670,210	97.8%
대외협력사업비	소계	29,000,000	18,357,350	10,642,650	63.3%
대외업무추진 비	소 계	29,000,000	18,357,350	10,642,650	63.3%
	대국회활동	8,000,000	4,371,760	3,628,240	54.6%
	대정부활동	3,000,000	2,191,290	808,710	73.0%
	제단체연대	13,000,000	6,963,040	6,036,960	53.6%
	기타대외활동	5,000,000	4,831,260	168,740	96.6%
희생자 구제금 적립		20,000,000	20,000,000	-	100.0%
사무실 설치기금 적립		20,000,000	20,000,000	-	100.0%
예비비		10,979,960	-	10,979,960	0.0%

< 2025년 특별회계 결산 보고 >

□ 희생자구제기금 수입·지출 결산

1. 총괄

(단위 : 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액-지출액)	비고
130,390,112	130,187,833	-	130,187,833	

2. 수입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비고
수입총액	130,390,112	130,187,833	99.8%	
이월금	107,590,112	107,590,112	100.0%	2024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20,000,000	100.0%	
이자 수입	2,800,000	2,597,721	92.8%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

3. 지출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지출총액	130,390,112	-	0.0%	
예비비	130,390,112	-	0.0%	

□ 사무실 설치기금 수입·지출 결산

1. 총괄

(단위 : 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액-지출액)	비고
163,008,947	162,833,922	-	162,833,922	

2. 수입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비고
수입총액	163,008,947	162,833,922	99.9%	
이월금	141,008,947	41,008,947	100.0%	2024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20,000,000	100.0%	
이자수입	2,000,000	1,824,975	91.2%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

3. 지출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지출총액	163,008,947	-	0.0%	
예비비	163,008,947	-	0.0%	

□ 퇴직연금 수입·지출 결산

1. 총괄

(단위 : 원)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118,959,420	116,295,840	-	116,295,840	

2. 수입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입액	수입률(%)	비고
수입총액	118,959,420	116,295,840	97.8%	2024년 이월금
이월금	94,959,420	94,959,420	100.0%	
직원 퇴직연금 적립	24,000,000	21,336,420	88.9%	

3. 지출내역

(단위 : 원)

과목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지출총액	118,959,420	-	0.0%	
예비비	118,959,420	-	0.0%	

□ 채권

(단위 : 원)

구분	금액	예치기관(임대인)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232,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개요

- 규약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거,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규 약 >

- 제14조(기능)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내용

- 붙임 2026 공노총 사업추진 계획(안) 참고

□ 의결주문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10조 공노총이 앞장선다!

2026년 공노총 사업추진 계획(안)

2026. 3. 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onfederation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

목 차

2026 사업추진 계획(안)	89
1. 정년과 연금을 잇는 당장의 정책추진	91
1-1 정년연장 법정 의무 추진	91
1-2 연금소득공백자(퇴직자) 재고용 협의체 추진	93
1-3 임금투쟁 및 임금결정방식 법제화	94
1-4 정책기획연구소 혁신 운영	96
1-4-1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101
2. 공무원 기본권 확대와 법·제도 개선	105
2-1 대통령실·국회 간 상시 협의채널 운영	105
2-2 노동기본권 확대	107
2-3 정치기본권 보장	109
2-4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추진	110
2-5 공직선거 정책질의 및 공개 등 추진	111
2-6 정부교섭 및 소통채널 통한 제도개선 추진	112
3. 현장 노동환경 개선 및 공무원노동자 안전망 구축	113
3-1 노동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113
3-2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114
3-3 원-포인트 협약 사업	115
3-4 AI(인공지능) 활성화 TF 설치 운영	116
3-5 조합원 밀착 권리교육	117
3-6 정책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	122
4. 조직화 강화와 경계없는 연대 구축	123
4-1 더 크게 조직확장, 더 단단한 조직강화	123
4-2 경계없는 연대사업 추진	124
04-3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연대 정례화	125
5. 공노총 혁신과 디지털 기반 강화	126
5-1 대변인제 운영	126
5-2 공노총 인터넷 TV개국	127
5-3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128
5-4 기타 후생복지 사업 및 홍보 강화	129

제7대 공노총 사업추진계획(안)

비 전

‘헌법10조*, 공노총이 앞장선다.’

* 헌법 ‘국민의권리’편에서 가장 첫 번째 조문인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정 책 여 건

2026년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세 여건과 향후 집중 과제

1. 2026년은 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정년의 불일치, 낮은 임금의 경제적 어려움, 악성민원과 그간 인력 감축 정책의 여파 등의 현장의 어려움, 노동·정치기본권의 부재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와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2. 친노동 기조로 비정규직·취약계층 보호 확대, 국제사회 핵심협약 준수강화(공무원 포함 기본권 확대). 2030 세대 청년실업이 76만 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정년연장 정치적 판단 부담 가중
3. 주4.5일제 추진은 비용부담 증가 등 경영계 반발로 실 노동시간 단축 미달성 가능성. 공무원 3.5% 임금 인상(저연차 최고6.6%)에도 민간 격차 지속, 정치기본권 개선은 현 정부 123대 국정과제이지만, 국회로 책임 전가 등
4. 6월 지방선거 영향으로 정당별 노동 이슈 공론화 가능으로 집중
5. 2026년 노동정책은 격차 해소와 권리 보장 중심으로 진보적이지만, 경제 충격 최소화가 관건으로 판단됨

6. 공노총은 '헌법 제10조 공노총이 앞장선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투쟁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을 세워 위기를 돌파하고 과제를 수행해 가겠습니다.

추진방향

- 정년과 연금을 잇는 당장의 정책 추진
- 공무원 기본권 확대와 법·제도 개선
- 현장 노동환경 개선 및 공무원노동자 안전망 구축
- 조직화 강화와 경계없는 연대 구축
- 공노총 혁신과 디지털 기반 강화

1

정년과 연금을 잇는 당장의 정책 추진

- 정년연장 법정 의무 추진
- 연금소득공백자(퇴직자) 재고용 협의체 추진
- 임금투쟁 및 임금결정방식 법제화
- 정책기획연구소 혁신 운영
 -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1-1 (계속사업)	정년연장 법정 의무 추진
---------------	----------------------

□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흐름 속에서 60세 정년과 연금개시 사이 최대 5년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 공무원 정년연장을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정부의 임의적 운용 차단

□ 주요내용

- (민간기준 최근 법안 발의)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구 분	서영교 의원안	박정 의원안	박홍배 의원안	비고
정 년	65세	65세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조치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조치 (자문, 장려금 등 지원조치)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지원조치	
시행시기 및 방법	공포 직후 시행 2025. 1. 1. 63세 2028. 1. 1. 64세 2033. 1. 1. 65세	공포 후 2년 경과 시행 300인 이상: 시행후 5년 30~300명: 시행후 2년 5~50명: 시행후 1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시행일~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	

-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 연내 법안 발의 추진 등
-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국회로 해결 방안 모색

□ 기 추진사항

- 2025. 11. 21.: 행안부 장관 면담
- 2025. 11. 12.: 대통령실 앞 소득공백해소 촉구 기자회견
- 2025. 9. 10.: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국회입법조사처)
- 2025. 3. 18.: 공무원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 달성
- 2026. 1. 27.: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 위원장 정책간담회(의원실)
- 2026. 1. 30.: 김주영 정년연장특별위 간사 정책간담회(지역사무실)

□ 향후 추진계획

- 국회와 지속 협의하여 국민과 달리 공무원정년연장 입법 추진
(국회·정부·노조 간 상시협의채널 추진)

〈로드맵〉

국회 논의분석 및 연구검토 → 국회 법률안 마련 → 정책제안 공동토론회
→ 여야의원 발의 연계 → 정기국회 통과 목표 등

- 공무원소득공백 발생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등 정책연구과제 추진
- 제42차 정책연대협의체 공동 추진 협의('26. 1. 26.)
- ※ **2026년 상반기 중 공무원 노동조합 제 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
- 위험직종 퇴직-연금이음 연구과제 추진(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40,000,000	임금·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분과	
전문가자문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연구용역비	50,000,000	12,500,000원×4회	
정책토론회	20,000,000	10,000,000원×2회	
기자회견 등 각종투쟁	100,000,000	기자회견, 집회, 1인시위 등	

1-2 (신규사업)	연금소득공백자(퇴직자) 재고용 협의체 추진
---------------	--------------------------------

□ 추진배경

- 공무원 연금개혁(2015년) 이후 발생한 실질 소득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 완화하고, 재직 중 생활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조합원 연금수급 공백 해소 및 고령·저연차 대상자 생활권 보호
- 【연도별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퇴직공무원 예상 숫자 (단위 :명)】

퇴직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60세 정년퇴직	1,700	1,900	2,400	3,100	4,100	5,400	8,200	10,900	14,400	19,000
소득공백 기간	1년		2년			3년			4년	

□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법정 정년연장 제도마련 이전에 소득공백자 발생에 대해 각 기관에 재고용(임기제 등) 기준 마련
- 업무영역 발굴 및 재고용 기관에 대해 미운영 기관 등에 적극 안내
-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인사처) 문제점 개선방향 추진('26.3 ~ 5월)
- 퇴직 전(前) 1~3년 사전준비 패키지
 - 공무원연금 미래예측가능 보험료 산정 시행('26.상반기)
 - 취업 전환교육 프로그램 제도 마련('26. 상반기)

□ 기 추진사항

- 2024. 9. 30.: 공무원 퇴직자 재고용 업무분야 발굴 국회토론회
- 2026. 1. 13.: 이재관, 이정문 국회의원 ‘퇴직자 재고용’ 정책간담회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40,000,000	임금·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분과	
대 정 부 활 동	4,000,000	200,000원×20회	

1-3 (신규사업)	임금투쟁 및 임금결정방식 법제화
---------------	--------------------------

□ **추진배경**

- 공무원 노사관계가 성립된 지 20여년 동안 최악의 민관보수 접근율을 보여주고 있음(인사처 민관보수 수준 접근율 95.9%에서 83.9% 하락)

2024년	일반직	경찰직	교원직	전 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민간=100)	76.7%	90.8%	87.0%	83.9%
금액으로 환산	505만원	597만원	572만원	552만원

- 저임금으로 5년이하 퇴직자 증가('19년 6,500명 → '23년 13,566명)
- 임금결정방식 문제
 - 예산당국에 의해 공무원 급여가 총괄적으로 규정(중앙집권적 방식, 관료적 의사 결정방식)
 - 사전적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이미 이루어진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연출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 세짐.
 - 공무원보수위원회(2019~2025년, 이행 결과가 한 차례 이행 등)

□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 정책기획연구소 및 공투위 투쟁을 통해 입법화 실현
- 김교홍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발의

- (위상 격상) 현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수준과 인상률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심의 기준 명문화) 보수위원회 심의 의결시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물가수준, 민간기업 임금수준 고려
- (의결사항의 강제성) 심의 의결 절차 거친 보수안은 지체없이 다음연도 소관 예산안 반영 이행의무 부여

-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민관보수 접근율 100% 이행 제도화
 - 2026년 임금 보수투쟁시 쟁점화 추진 / 전국적 순회 투쟁 추진 등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가상승률	1.0%	1.9%	1.5%	0.4%	5.0%	2.5%	5.1%	3.6%	2.4%	2.1%
민간기업 임금인상률	3.3%	3.7%	4.3%	4.1%	3.1%	3.9%	5.2%	4.4%	3.7%	5.7%*
공무원 보수인상률	3.0%	3.5%	2.6%	1.8%	2.8%	0.9%	1.4%	1.7%	2.5%	3.0%
민관대비	83.2%	86.0%	85.2%	86.1%	90.5%	87.6%	83.1%	83.1%	83.9%	82.8%*

* 2025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인사혁신처), 민간 성과급 반영-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국회, 정부 및 지방선거 정책질의 등을 통해 정책 실현 추진
 - 국정감사 관행 개선 등에 대비한 정책 공유 및 소통 마련 등

- 초과근무 단가 인상(감면율 조정값 60%→100%) 임금투쟁과 병행추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1/209 × 150% × (50~60%)

구 분	법적기준	산정기준	계산식	단가
민간기업	근로기준법	통상임금(기본급+정기 수당)	통상임금 100%×1.5배	15,480~20,640원 (최저시급 10,320원기준)
공무원	보수업무지침	기준호봉 봉급액	봉급액의 (55~60%)	10,949원 (9급 공무원 기준)

- 정년연장에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정책안 마련
 - 외부전문가, 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정부활동	4,000,000	200,000원 × 20회	
대국회활동	9,000,000	300,000원 × 30회	
전문가자문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연구용역비	50,000,000	12,500,000원 × 4회	
기자회견 등 각종 투쟁	100,000,000	기자회견, 집회, 1인시위 등	
제단체연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 추진배경

- 제7대 공노총 공약은 임금·연금·제도개선·안전보건 등 복잡하고 전문적 의제를 포함하므로 정부·국회·언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역량이 필수적임.
- 기존 정책연구소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대응, 보수·임금 문제 관련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책 수요가 급증한 지금의 환경에서
 - ① 연구 전문성 부족
 - ② 조직적 성과물이 축적되지 않음
 - ③ 사회 환류(언론·국회 영향력) 부재의 3無 구조적 한계가 드러남
- 새로운 정책기획연구소는 **전문가+정책연구+사회환류를 갖춘 3有체** 제로 전면 전환하여 투쟁과 교섭을 뒷받침하는 정책 생산기구 쇄신

□ 주요내용

- (임금, 연금, 제도) 정책연구소 → 정책기획연구소 조직 쇄신
 - 기존 연구소를 정책기획·사회환류를 강화하여 정책기획연구소로 개편
- 전문가 중심 정책 백업기구 노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 분과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상시 자문 체계 마련
- 기존 정책연구소 3분과 체계 유지하고 결과물 계승 및 혁신 운영

【정책기획연구소 구성】



- 정책결과 생산 체계 구축 — 성과 있는 연구소로 전환
 - 반기별 정책기획 심포지엄 개최, 연간 정책리포트 발간
 - 국회 토론회·정책 간담회 연계 및 정부 제출용 공식 의견서 작성
- 현장 수요 기반의 과제 선정 및 용역 수행
 - 조합원이 가장 절실한 문제를 분과별로 접수 → 우선순위 선정
 - **전문기관 연구용역 수행(과업지시서 작성, 착수·중간·최종 보고)**
 - 연구결과는 교섭, 입법, 대국민홍보에 활용 「연구→교섭→성과」
- 사회의 환류 기능 강화 — 공노총 정책의 사회적 영향 최대화
 - ① 대변인실 ② 언론팀 ③ 공노총TV와 협업하여
공노총의 정책·연구 결과를 사회와 공유(공청회, 보도자료 등)
- **노조발전자문위원회 정책 자문**
 - 정책기획연구소 활동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자문 등

【노조발전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분야별	성명	주요경력 등	비고
연 금 분 야	김 연 명	前)청와대실사회수석비서관 前)국회연금개혁특별위위원장	
제도 및 정책분야	연 원 정	前)인사혁신처 처장 前)대통령실인사제도비서관	
임 금 분 야	채 준 호	공무원보수위원회전문위원 전북대(경영학과) 교수	
기준(총액)인건비	금 창 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장 前)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A I (인공지능)	송 상 효	디지털정부혁신위원 송실대(소프트웨어) 교수	
안 전 관 리	이 호 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의위원 및 공학박사	
약 성 민 원	최 흥 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 률 상 담	정 승 균	법무법인 일과사람사 변호사 및 노무사	
노 무 상 담	박 현 국	노무법인 유앤노무사 상명대(경영학부) 교수	
미 디 어 소 통	안 진 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TV 유튜브 운영	

□ 집행체계

- (회의방식) 집중대면 회의 및 영상회의 병행(회의 집중력 제고 및 예산 절감 기여, 영상회의 시스템개선)

【정책기획연구소 집행체계】

단계	정책제안	용역/생산	사업집행	사업평가
집행주체	중앙집행위	정책기획연구소	중앙 및 각 연맹(단위노조)	정책기획연구소
주요내용	▶ 조합원으로부터 접수되고 현안 논의된 안건을 정책기획연구소에 연구과제 통보	▶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각 분과별 전문가 협의후 용역 등 과제 수행	▶ 정책과제에 대한 공청회, 보고회 통해 공노총에서 의결 후 각 연맹 및 단위에 집행	▶ 최종 집행이 완료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 과제 도출

□ 분과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공통임무	▶ 현안사업 및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 ▶ 현안사항 국회 토론회 추진 ▶ 주제별 소규모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보고서 작성	
노조발전자문위원회	▶ 총액(기준)인건비, 나라예산, 감사제도, 연금제도, 악성민원, 임금분야, 언론대응, AI, 안전,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정책기획연구소	▶ 정부교섭(노사협의회), 행안부 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 기타 정부관련 각종 협의 지원 등	소장 간사
지원본부	▶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및 노조발전자문위원회 정책개발 지원 ▶ 정부, 연구소들의 학회 회보, 언론기고문, 보고서 등을 모니터링 ▶ 정부 및 국회의 입법 현황 상시 파악	지원단
임금연금분과	▶ 공무원 정년연장, 노후소득공백 해소 정책개발 및 투쟁방향 마련 ▶ 공무원 보수, 연금 정책 개발 및 투쟁방향(안) 제시 ▶ 공무원보수위원회 안건 작성 및 지원	임금 + 연금
제도개선분과	▶ 전체 공무원의 공통적인 인사, 복무 등 제도개선 사항 연구 개발 ▶ 노사협의회, 행안부 정책협의체, 단체교섭 안건 작성 및 지원 ▶ 연맹 및 조합원 건의 등 개별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 등 집행	제도
안전보건분과	▶ 외상사건 대응 매뉴얼 및 공무원 안전보건, 악성민원 분야 ▶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 관리체계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 관련 공무원 별칙 조사 및 대응	신설

□ 정책기획연구소 위원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직책	비고	
연구소장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간사	이호발	공노총	사무총장		
지원단	총괄, 임금연금	민동명	정책본부장		
	제도, 안전보건	유은영	정책과장		
임금 연금 분과	분과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위원장	
	위원	박민식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황유경	안산시청노조	위원장	
		안광일	방미통위	위원장	
		장종만	해양수산부	사무총장	
		김대령	경찰청	위원장	
		노치홍	중기부	위원장	
		김진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김영건	경기도청	수석부위원장	
		김화중	소방노조	광주위원장	
오선택	소방노조	중앙119구조본부 정책국장			
제도 분과	분과장	강순하	공노총	부위원장	
	위원	김형태	의정부시노조	위원장	
		권기득	의성군청노조	위원장	
		고은경	경찰청	사무총장	
		신쌍수	경찰청	지회장	
		김환국	과기부(우분)	사무총장	
		민혜수	기재부	위원장	
		송언용	부산교육노조	위원장	
		정재복	부산시청	부위원장	
이정환	소방노조	부위원장			
안전 보건 분과	분과장	안종현	공노총	부위원장	
	위원	이정만	대전중구노조	위원장	
		이영준	천안시청노조	위원장	
		곽기남	경찰청	경찰병원지회장	
		김선철	부산교육노조	사무총장	
		신홍채	인천교육노조	대외협력국장	
최용석	소방노조	전북덕진지부장			

□ 기대효과

- 공노총 내부 효과
 -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연맹 및 각 단위노조와 정책 연계성 확대
 - 투쟁·교섭·입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정책·데이터·전문성 기반
 - 조합원 체감도 높은 정책결과 창출로 공무원노조 대표성 상승
- 사회적 효과
 - 국회·정부·시민사회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으로 정책 설득력 확보
 -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의 사회적 정당성 강화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40,000,000	임금·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분과	
전문가자문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연구용역비	50,000,000	12,500,000원×4회	
정책토론회	20,000,000	10,000,000원×2회	
정책자료 제작비 등	10,000,000	정책정보도서 구입 및 제작	

1-4-1 (신규사업)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	---------------------

가. 공무원연금소득공백 해소방안 및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연구용역

□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손실비용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자 중심의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정책대응에 활용하고자 함
- 국회에서 민간의 정년연장 이후의 공공부분의 초점에 대해 정책결정의 순서를 바꾸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근거 필요
 - ※ 직무급제 확대, 호봉제의 변경 등 새로운 정부의 대응에 대비
 - ※ 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연장 없이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외국의 사례 등으로 조사 및 정책 제시 등

□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발생에 따른 행정적 사회적 손실비용 산정 등에 연구용역 추진(' 26. 3~9월)
 - 퇴직자 재고용, 공공부분 종사자 불안감 증대, 정부불신 등
- 연구결과로 국회토론회 및 국민여론 등 홍보로 공감대 마련

□ **향후 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지 공유 및 배포, 수거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리							
면접조사(FGI)							
외국사례 조사 및 공노총 임원 세미나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워크숍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							

나. 총액인건비 및 지방자치교육법률 개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

□ 추진배경

- 시도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제도개선
 - 시도 교육청의 행정수요와 인력규모에 부합하는 총액인건비의 산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및 조직확대를 위한 수단 활용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26.5.12)에 앞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노조의 정책(안)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행 총액인건비 한계분석)
 - 총액인건비 산정의 제반요소의 반영여부 파악 및 시도 교육청별 특수성 반영요소의 여부 등 한계분석
 - 총액인건비 산정의 주된 요소 및 보정요소 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대안 모색
 - 시도 교육청별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연구용역 추진('26. 3~6월)

다. 고도화된 비상근무 체계 등 개선

□ 추진배경

-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산불, 폭우, 폭염, 대설, 태풍 등 재난성 기상현상이 연중 반복·상시화 되면서 비상근무(비상 대기)가 일상화되고 있음.
- 비상근무체계가 과학적 기준보다 관행적 지침·상급기관 압박에 따라 운영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직원 동원이 기관마다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공무원의 피로도와 소진이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음.
- 또한 공무원 비상근무에는 근무시간 상한이 없고, 단가가 낮은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며, 휴식·교대 규정도 미비한 무한 동원 체계

□ 주요내용

- 기상 예·경보 기반 과학적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 예비특보·주의보·경보 단계를 기능중심(재난안전·시설) 재설계
 - 일괄 대기 → 직무별·위험도별·전문성별 차등 동원 원칙 도입
- 비상근무 최소기준과 상한제 도입
 - 근무시간 상한 도입(1일 최대 ○시간, 연속근무 ○시간 초과 금지)
- 비상근무 수당·보상체계 정상화
 - 현재 낮은 단가의 “초과근무수당” 방식 폐지
 - 야간근무 가산·위험도 가산·휴일근무 가산금 등 기존 수당 정비

라.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례 연구

□ 추진배경

-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괴롭힘·악성민원 문제는 일터에서 폭력 이자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문제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법 제도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모색

□ 주요내용

- 공무원의 인격권 및 노동인권 실태 조사
 - 단순한 설문을 넘어 유형별, 직급별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수집
 - 민원인에 의한 침해: 폭언, 폭행, 반복적·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등
 - 법적 처분 및 징계처분 결과 등도 조사하여 제도의 한계점 모색
- 실제 처분 사항까지 확인하여 대국민 홍보전 병행 및 토론회 추진 등

마. 기타 용역

□ 공무원 연금의 차별화 해소

- 일부지급정지 기준액 차별 해소(국민연금 5년 제한, 509만원 기준)
 - 공무원연금(기한 제한없음, 240만원 기준)
- 기초연금지급 기준시 관련규정(기초연금법 제3조)에 의거 배우자까지 제한되는 것은 과한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제도개선 시급

□ **공무원연금 조기연금 합리적 대안 마련**

- 과도한 평생 감액완화(앞당김으로 평생별 개념) 및 감액기간을 변경하여 생계에 지원되는 방안 마련 필요
- 기존의 제도는 30년 전에 설계(1년에 5% 감액)된 사항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 제도 변경 필요성 시급 등

바. 사업 예산 집행 관련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40,000,000	임금·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분과	
전문가자문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연구용역비	50,000,000	12,500,000원 × 4회	
정책토론회	20,000,000	10,000,000원 × 2회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예산 지원 현황**

(1)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 사업목적: 공무원연금 소득공백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적·행정적 손실 비용과 정책적 영향 종합적 평가
- 보조금 신청 결과 사업 선정되어 26,215,200원 국비 지원

(2) 기후위기 대응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사업목적: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난성 기상 상황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비상근무체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무기준과 보상체계 정상화
- 보조금 신청 결과 사업 선정되어 20,389,600원 국비 지원

(3) 소방공무원 노동교육

- 사업목적: 노동조합 기능 및 교섭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책임 있는 노조 활동 역량을 강화하자 함.
- 보조금 신청 결과 사업 선정되어 18,792,000원 국비 지원

2

공무원 기본권 확대화 법·제도 개선

- 대통령실·국회 간 상시 협의채널 운영
- 노동기본권 확대
- 정치기본권 보장
-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추진
- 공직선거 정책질의 및 공개 등 추진
- 정부교섭 및 소통채널 통한 제도개선 추진

2-1 (신규사업)	대통령실·국회간 상시 협의채널 운영
---------------	----------------------------

□ 추진배경

- 공무원노동조건에 따른 긴급한 현안사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화. 필요시 입법활동을 위한 정당별 정책협약 추진
- 국회와 소통전담 인력 배치 및 대통령실과 상시적 협의채널 운영

□ 주요내용

- 각 정당별 정책위 간담회 추진('26. 2~3월)
 - 공무원노동조건 관련 정책추진 업무협약, 정책질의 등
- 국회 소통전담인력 배치(연중, 1주에 2~3회)
 - 국회 내 이슈 토론회 참여 및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실 협의
- 국회 여야간 보좌진 협의회 정책 토론회('26. 8월중, 을지훈련 종료후)
 - 국정감사 관행 개선 등에 대비한 정책공유 및 소통마련 등
 - 의원요구자료 대처방안(의원 vs 행정부, 창과 방패)

- 대통령실과 정기별 소통 테이블 추진('26. 분기별 1회)
 - 공무원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현안 공유, 개선요구 등

□ 기 추진사항

- 2025. 11. 4.: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주요현안 공약이행 간담회
- 2026. 1. 13.: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정책간담회
- 2026. 1. 13.: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정책간담회
- 2026. 1. 27.: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정책간담회
- 2026. 1. 28.: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정책간담회
- 2026. 1. 28.: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정책간담회
- 2026. 1. 30.: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정책간담회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 국 회 활 동	9,000,000	300,000원 × 30회	
대 정 부 활 동	4,000,000	200,000원 × 20회	
정 책 토 론 회	20,000,000	10,000,000원 × 2회	

2-2 (계속사업)	노동기본권 확대
---------------	-----------------

□ 추진배경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절 휴무제 시행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문제 개선 및 법 개정 추진
 - ※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공무원은 노사 협의 교섭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민간 기준 이하 적용은 불합리
-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발효에 따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절실
 - 노조법 시행령 제한(가입대상, 단체협약 내용), 교섭위반 미처벌 등

□ 주요내용

- 노동절 휴무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정당별 정책위 면담
 - 전 조합원(1인, 1천 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홍보전('26. 3월) 추진
 - ※ “5월 1일 노동절,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엔 휴식이 필요합니다. 노동절, 공무원에게도 필요합니다.”

- 노동절 휴무 쟁취 라디오 광고(2026. 3. 1. ~ 3. 31. 1달간)
 - 3월 1일부터 한 달간 출퇴근 시간대에 전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진심을 담은 광고가 송출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노동절 휴무 입법 추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전환 지연)

- 공무원노조법 개정 추진
 - 타임오프 개선을 위한 행정부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이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병행 추진

- 경찰공무원의 노조설립,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 연대 추진

○ 주요 법 개정 요구사항

-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범위 제한 개정): 경찰·교정·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직무에 의한 가입제한 폐지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개정

행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현, 최대 34,000시간, 17명 면제자)

※ 이용우 국회의원(' 25.2.11.) 대표발의 : 행정부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및 감사원을 기준으로 타임오프 배정

- 공무원노조법은 근무시간 면제자의 보수(수당포함)와 복무규정 적용여부
 - ▶ (복무) 특별휴가, 공가, 병가, 시간외근무, 공휴일 근무, 근무시간 변경 등
 - ▶ (수당) 개별수당의 성격에 따라 기본적인 지급 여부 등을 결정되므로 명확한 기준 필요 마련 등

□ 기 추진사항

- 2026. 1. 2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타임오프 관련 정책간담회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 국 회 활 동	9,000,000	300,000원 × 30회	
대 정 부 활 동	4,000,000	200,000원 × 20회	
전 문 가 자 문 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2-3 (계속사업)	정치기본권 보장
---------------	-----------------

□ **추진배경**

- ILO 제151호 협약(공공분야 종사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 향유) 및 헌법에서 기회균등의 차별로 정치기본권 제도 마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로 국가인권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4차례 권고했으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와 ILO 권고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국공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주요내용**

- 국회 각 정당별 정책위 면담 및 정부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 6.3 지방선거대비 정책질의 및 대규모집회 등을 통한 투쟁전략화

□ **기 추진사항**

- 2024. 7. : 민형배 · 신장식 · 전종덕 국회의원 공동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
- 2025. 12. 19.: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 국 회 활 동	9,000,000	300,000원 × 30회	
대 정 부 활 동	4,000,000	200,000원 × 20회	
전 문 가 자 문 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2-4 (계속사업)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추진
---------------	---------------------------

□ 추진배경

- 정부는 실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추진 공식화
-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희생의 미화가 아니라 근무체계 정상화로 담보돼야 하므로, 재난·민원·현장업무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과로·소진을 줄이고 행정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 주요내용

- 임금·처우의 후퇴없이 행정서비스 공백 없이 업무/인력 운영 재설계
 - 운영유형: 매주 주 1회 반일근무,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등
 - 현장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인력충원,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 ‘25. 12. 30.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보고회
 -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 현재 약 1,859시간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 대로 낮추는 데 전격 합의
 - ‘26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 수를 반드시 기재)
 - 2026년 시범적용 후 주 4.5일제 단계적 시행
 - 사례) 경기도 4.5일제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 내용: ① 4.5일제 (요일 자율선택) / ② 주 35시간제 / ③ 격주 주 4일제
- ※ 향후 시범 사업 추진시 민간 및 공공 부분이 동시 시행되도록 요구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40,000,000	임금·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분과	
전문가 자문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연구용역비	50,000,000	12,500,000원 × 4회	
정책토론회	20,000,000	10,000,000원 × 2회	

2-5 (계속사업)	공직선거 정책질의 및 공개 등 추진
---------------	----------------------------

□ **추진배경**

- 이재명 정부 2년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6.3) 대비하여 공노총의 주요 정책요구사항을 공약화 추진
- 공노총(5개 연맹 포함)의 정책요구는 정당별로, 각 단위노조의 정책질의 표준안을 제정하여 배부 안내 등
 - 정책공약에 대해 전 조합원이 공유하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 **주요내용**

- 현장의견수렴(각 연맹별, 각 단위노조별) 통해 정책(안) 모음 ('26. 3~4월)
 - 연금소득공백해소방안 정년연장,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노동절 보장, 임금법제화 등
- 공직선거 대비 정책질의안 요구서(기자회견, 정책간담회 등) 작성 및 정당별 답변 ('26. 4월)
- 정당별 답변자료 전 조합원 공지('26. 5월)
- 공직선거 결과에 따른 마무리 기자회견 등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 국 회 활 동	9,000,000	300,000원 × 30회	
전 문 가 자 문 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기자회견 등 각종투쟁	100,000,000	기자회견, 집회, 1인시위 등	
홍보물, 영상제작 등	40,000,000	정책공약 등 홍보물 제작	

2-6 (계속사업)	정부교섭 및 소통채널 통한 제도개선 추진
---------------	-------------------------------

□ **추진배경**

- 2026 대정부교섭 요구 등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 상향을 위한 중앙 차원의 단체교섭 추진
- 2018년 이후 매년 추진되는 행안부·노조간 정책협의체는 단체교섭과 달리 당장 시급한 문제점 등 구속력은 제한적이나 협의 중심으로 추진
-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정부교섭 이후 노사협의회 추진으로 의제 논의 등

□ **주요내용**

- 전 조합원 의견수렴 추진, 요구안 마련, 요구안 제출, 실무교섭 등
 - 보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제도개선, 권리보장 등
 - 단체협약 참여단체 간 워크숍 및 전략회의 추진 등
- 행안부 정책협의체(2~11월) 운영
 - 전 조합원 의견수렴, 각 노조간 협의, 협의회(본회의, 실무논의 등)
- 인사처 노사협의회(상·하반기 연 2회)
 - 교섭, 정책협의체 의제 안전 이외 중복 의제 제외하여 집중력 있는 실무협상 추진 등

□ **추진사항**

- 2026. 1. 16.: 행안부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_정부서울청사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 정 부 활 동	4,000,000	200,000원 × 20회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3

현장 노동환경 개선 및 공무원노동자 안전망 구축

- 노동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 원-포인트 협약 사업
- AI(인공지능) 활성화 TF 설치 운영
- 조합원 밀착 권리교육
- 정책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

3-1 (계속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	------------------------

□ 추진배경

- 현장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점에 대해 공노총 자문 법률자문단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해 1:1 상담운영

□ 주요내용

- 자문 계약자

자문기관	자문인(공동대표)	주 소	비고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정승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7, 5층(예성빌딩)	02-586-1941

- 자문료 : 월 1,100,000원(매월 25일 지급)
- 운영방안 : 온라인상담, 전화구두상담, 방문상담, 검토의견서 작성 등
※ 2025년 12월 기준 총 36건 / 소송사건 적절한 수준에서 상호협의를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법 률 노 무 자 문 료	13,200,000	1,100,000×12월	일과사람 (법률자문)
법 률 지 원 비	15,000,000	5,000,000×3회	

3-2 (계속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	-------------------------

□ **추진배경**

-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 보상 및 치유 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하는 반면, 공무원의 재난·민원·단속 등 고위험·고갈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예방·보호·권리구제의 제도적 장치 미흡
- 최근 공직사회 재해는 전통적인 안전사고보다 직무 스트레스, 과로, 업무 중압감 등 심리·정신적 요인이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살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함.

□ **주요내용**

- 재난·민원·수사감사 등 고위험 사건 종사자에 대해 사후 심리 회복, 상담·치료 연계, 휴식·전환 배치 등 표준 프로그램 마련
- 비상근무·인력동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안전 전문인력 배치 비율 확대
- 감사 수감 및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권 확대

□ **기 추진사항**

- 2026. 1. 15.: 소청심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정책간담회
(독립·신뢰성 보장한 고충처리시스템 마련 등)
- 2026. 1. 21.: 국외여비지급 규정 제도개선 설문(경기도의회 관련)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대 국 회 활 동	9,000,000	300,000원 × 30회	
대 정 부 활 동	4,000,000	200,000원 × 20회	
전 문 가 자 문 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3-3 (신규사업)	원-포인트 협약 사업
---------------	--------------------

□ **추진배경**

- 각 단위노조출범식 등 기념사업 때 노조가 사용자(기관)측과 조합원이 원(Want)하는 원(One)포인트(노동조건 관련)를 구두로 약속하여
- 행사시 전 조합원에게 인증샷(각 연맹 주관)으로 공지하는 사업 추진
- 각 연맹 및 공노총이 함께 추진

□ **주요내용**

- 세부 사업계획 수립(' 26.1~2월)
 - 핵심의제(복지, 특별휴가, 일방식 개선, 고충사항 등)중 원-포인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각 연맹간 협의하여 추진 등
 - 필요시 자료제공, 현황공유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 ※ 원-포인트 협약 사례

양주 -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예천 - 건강검진비 인상 김제 - 전직원 재직휴가 확대 태안 - 전직원 특별(생일) 휴가 성남 - 50세이상 건강검진 매년 실시 청도 - 건강검진비 인상 영덕 - 복지포인트 인상	성주 - 당직실 시설 환경 개선 대덕 - 모든승진 소요연수 공개 함평 - 직원휴게실 설치 광주 - 청사 내 민원접견, 휴게실 설치 홍성 - 노동조합 사무실 환경개선 완도 - 노후된 관사의 현대화
--	---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각 종 행 사 지 원	11,000,000	각 단위노조 행사 지원 등	

□ 추진배경

- 정부 및 공공기관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대응 필요
- 노동조합과 직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 AI 행정 도입 과정에서 업무과중, 인력 감축, 평가 방식 변화 등 노동권 침해 가능성 대두

□ 주요내용

- 분야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참여 협의체 구성('26년 1~2월중)
- AI 기반 업무 도입 시 조합원 교육·전환 배치 지원방안 마련
-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및 조합원 서비스 고도화 연구
 - AI로 맞춤형 정책, 홍보, 영상제작, 회계 대신하기 등
- 각종 AI 프로그램 적용 우수사례 및 템플릿 공유
-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AI 민주 정부 구현
 - '26.3. 기존 정부 24를 AI기반 정부24+ 고도화(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 없이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 추진사항

- 2026. 1. 5.: 「실무형 AI 행정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 2026. 2. 4.: AI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성남시청)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전 문 가 자 문 비 등	10,000,000	노조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특강 등	
기 타 회 의	9,000,000	AI TF 회의 운영비	

3-5 (신규사업)	조합원 밀착 권리교육
---------------	--------------------

□ **추진배경**

- 노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과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하는 편협한 시각을 전환하고,
- 공무원 노동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사합동교육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과정개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간 정책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신설에 필요한 업무 협의 추진

- 교육대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임원 및 소속 기관 노조업무담당자 및 인사복무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인건비, 수당, 연금 등 공무원 복무 및 인사의 이해
 - 민원대응 및 감사제도, 청렴도 평가 이해
 - 2026년 나라예산 이해 등
- 교육일정(기간): 2026년 상반기, 2박 3일
- 교육장소: 한국고용노동교육원(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 교 육 비: 소속기관 교육예산 활용

□ **추진사항**

- 2026. 1. 16.: 고용노동교육원 정책간담회_교육 신설과정 협의

《교육프로그램(안) / 예시》

1. 지방공무원노동자 밀착 권리교육

○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계		20H
기준인건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인력의 구성과 분류 지방공무원 인력 기준에 대한 제도의 이해 등 	2.0H
지방공무원의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수당의 종류 지방공무원 수당의 구성요소와 산정기준 등 	2.0H
2026 나라 및 지방예산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나라예산의 이해 지방예산 편성의 원리와 문제점 등 	2.0H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이해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의 이해 등 	3.0H
감사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감사의 목적과 종류 공무원 감사유형별 점검기준과 준비요령 등 	1.5H
공무원연금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1.5H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악성민원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의 이해 공직사회 갑질 및 악성민원 대응 등 	2.0H
슬기로운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2.0H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내/오프닝/자유토론/설문조사/수료식 등 	3.0H

○ 교육시간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8:00~08:50		조 식	조 식
09:00~09:50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3H)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	감사제도의 이해(1.5H) (감사원)
10:30~11:00			공무원연금의 이해(1.5H) (공무원연금공단)
11:00~11:50	등록 및 출석 확인 과정 오리엔테이션(0.5H)		
12:00~12:50	중 식	중 식	중 식
13:00~13:50	(오프닝)노동에 대한 시각열기(1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상생파트너십 자유토론(1H)	슬기로운 언론대응(2.0H) (언론중재위원회)
14:00~14:50	기준인건비의 이해 (2H) (금창호 박사)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악성민원 대응(2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5:00~15:50			
16:00~16:50	지방공무원의 수당 (2H)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	2026 나라 및 지방예산의 이해(2H) (나라살림연구소)	설문/수료식(0.5H)
17:00~17:50			
18:00~19:50	만찬(정보교류)	만찬(정보교류)	

2. 국가공무원노동자 밀착 권리교육

○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계		20H
총액인건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력의 구성과 분류 공무원 인력 기준에 대한 제도의 이해 등 	2.0H
공무원의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수당의 종류 공무원 수당의 구성요소와 산정기준 등 	2.0H
2026 나라예산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나라예산의 이해 나라예산 편성의 원리와 문제점 등 	2.0H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사제도의 이해 공무원 복무제도의 이해 등 	3.0H
감사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감사의 목적과 종류 공무원 감사유형별 점검기준과 준비요령 등 	1.5H
공무원연금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1.5H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악성민원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의 이해 공직사회 갑질 및 악성민원 대응 등 	2.0H
슬기로운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2.0H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내/오프닝/자유토론/설문조사/수료식 등 	3.0H

○ 교육시간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8:00~08:50		조식	조식
09:00~09:50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3H)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	감사제도의 이해(1.5H) (감사원)
10:30~11:00			공무원연금의 이해(1.5H) (공무원연금공단)
11:00~11:50	등록 및 출석 확인 과정 오리엔테이션(0.5H)		
12:00~12:50	중식	중식	중식
13:00~13:50	(오프닝)노동에 대한 시각열기(1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상생파트너십 자유토론(1H)	슬기로운 언론대응(2.0H) (언론중재위원회)
14:00~14:50	기준인건비의 이해 (2H) (금창호 박사)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악성민원 대응(2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5:00~15:50			
16:00~16:50	지방공무원의 수당 (2H) (인사혁신처 담당사무관)	2026 나라예산의 이해(2H) (나라살림연구소)	설문/수료식(0.5H)
17:00~17:50			
18:00~19:50	만찬(정보교류)	만찬(정보교류)	

3. 시도교육공무원노동자

○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계		20H
총액인건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력의 구성과 분류 공무원 인력 기준에 대한 제도의 이해 등 	2.0H
공무원의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수당의 종류 공무원 수당의 구성요소와 산정기준 등 	2.0H
2026 나라예산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나라예산의 이해 나라예산 편성의 원리와 문제점 등 	2.0H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사제도의 이해 공무원 복무제도의 이해 등 	3.0H
감사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감사의 목적과 종류 공무원 감사유형별 점검기준과 준비요령 등 	1.5H
공무원연금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1.5H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악성민원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의 이해 공직사회 갑질 및 악성민원 대응 등 	2.0H
슬기로운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2.0H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내/오프닝/자유토론/설문조사/수료식 등 	3.0H

○ 교육시간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8:00~08:50		조식	조식
09:00~09:50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3H)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	감사제도의 이해(1.5H) (감사원)
10:30~11:00			공무원연금의 이해(1.5H) (공무원연금공단)
11:00~11:50	등록 및 출석 확인 과정 오리엔테이션(0.5H)		공무원연금의 이해(1.5H) (공무원연금공단)
12:00~12:50	중식	중식	중식
13:00~13:50	(오프닝)노동에 대한 시각열기(1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상생파트너십 자유토론(1H)	슬기로운 언론대응(2.0H) (언론중재위원회)
14:00~14:50	총액인건비의 이해 (2H) (금창호 박사)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악성민원 대응(2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5:00~15:50		설문/수료식(0.5H)	
16:00~16:50	공무원의 수당 (2H) (인사혁신처 담당사무관)	2026 나라예산의 이해(2H) (나라살림연구소)	
17:00~17:50			
18:00~19:50	만찬(정보교류)	만찬(정보교류)	

3. 소방공무원노동자

○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계		20H
총액인건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력의 구성과 분류 공무원 인력 기준에 대한 제도의 이해 등 	2.0H
공무원의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수당의 종류 공무원 수당의 구성요소와 산정기준 등 	2.0H
2026 나라예산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나라예산의 이해 나라예산 편성의 원리와 문제점 등 	2.0H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사제도의 이해 공무원 복무제도의 이해 등 	3.0H
감사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감사의 목적과 종류 공무원 감사유형별 점검기준과 준비요령 등 	1.5H
공무원연금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1.5H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약성민원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의 이해 공직사회 갑질 및 약성민원 대응 등 	2.0H
슬기로운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공직사회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등 	2.0H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내/오프닝/자유토론/설문조사/수료식 등 	3.0H

○ 교육시간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8:00~08:50		조식	조식
09:00~09:50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의 이해 (3H)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	감사제도의 이해(1.5H) (감사원)
10:30~11:00			공무원연금의 이해(1.5H) (공무원연금공단)
11:00~11:50	등록 및 출석 확인 과정 오리엔테이션(0.5H)		
12:00~12:50	중식	중식	중식
13:00~13:50	(오프닝)노동에 대한 시각열기(1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상생파트너십 자유토론(1H)	슬기로운 언론대응(2.0H) (언론중재위원회) 설문/수료식(0.5H)
14:00~14:50	총액인건비의 이해 (2H) (금창호 박사)	공직사회 갑질예방 및 약성민원 대응(2H)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5:00~15:50	지방공무원의 수당 (2H) (인사혁신처 담당사무관)	2026 나라예산의 이해(2H) (나라살림연구소)	
16:00~16:50			
17:00~17:50			
18:00~19:50	만찬(정보교류)	만찬(정보교류)	

□ 사업예산

구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고
조직사업	70,000,000	조직강화사업	

3-6 (계속사업)	정책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
---------------	--------------------------

□ **추진배경**

-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력·정책역량이 중앙에 치우쳐 있어 각 현
장 단위(연맹·단위·지부)의 실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상황
- 후생복지·근무제도 등의 제도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집행부·언론의
프레임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전문성과 논리적 대응력 강화 필수
- 정책기획·자료작성·교섭전략·정책분석 등 실전형 교육 체계 필요
- 예산 및 정책인력이 부족한 연맹·단위 편차를 해소하고 공노총
전체 정책·교섭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주요내용**

- 정책기획연구소와 연계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각 연맹별 정책담당자-단위 담당자 간 정기회의와 분기별 정책포럼
- 단체교섭·협약 표준모델 개발 및 제공(책자형 인쇄물 배부)
 - 공노총 표준 단체협약(표준안) 제시
 - 협약 조항별 법적 근거·판례·타 지자체 사례 포함
- 교섭·정책자료 작성 실습 중심의 워크숍 강화
 - 실제 교섭자료·보수위원회 자료·지자체 조례 등을 활용한 실습
 - 활동가의 문서·말하기·토론 능력 향상에 집중(전문가 초빙 교육)
- 활동가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정책자료 공개 플랫폼 구축
 - 젊은 활동가 중심의 프로젝트·캠프 운영
 - AI 기반 검색 기능 적용하여 쉽게 활용 가능한 정책아카이브 개편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40,000,000	임금·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분과	
정책자료 제작비 등	10,000,000		
활동가 양성 교육	10,000,000	상·하반기	

4

조직화 강화와 경계없는 연대 구축

- 더 크게 조직확장, 더 단단한 조직강화
- 경계없는 연대사업 추진
-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연대 정례화

4-1 (계속사업)	더 크게 조직확장, 더 단단한 조직강화
---------------	------------------------------

□ 추진배경

- 공노총의 조직확장을 위해 추진하여 위상 제고
- 미조직된 조직 등에 공노총의 홍보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주체성 확대
-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등으로 역사 민주주의 의식 제고

□ 주요내용

- 미조직 가입자(약 33%)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노조 가입 유도 및 법제화 지원 등
 - 경찰조직, 군무원, 정부부처, 소방, 광역, 교육, 시군구 등
 - 직장협의회 노조 가입 유도 등
 - 조직강화특별위를 구성하여 추진(연맹별 추천 등)
 - 각 5개 연맹과 협의하여 맞춤형 홍보물 제작 지원 등
-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로 역사 및 민주주의 의식 함양(4~5월)
 - 역사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여 조직강화 기여(참배 및 교육형)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순 회 간 담 회 비	10,000,000	연맹(단위노조) 정책 및 현안 간담회	
조 직 사 업	70,000,000	조직강화, 조직확대	
위 원 회 운 영 비	5,000,000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기 타 대 외 활 동	5,000,000	500,000×10회	

4-2 (신규사업)	경계없는 연대사업 추진
---------------	---------------------

□ **추진배경**

- 공노총 산하의 5개 연맹별이 지역중심에서도 더 단결을 통해 연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사안별 TF를 구성해 지역주도)
- 미조직 취약조직 발굴을 각 연맹의 단결을 통해 조직화에 기여
- 조직사업 현장조직 경험을 상호 전파하는 현장교류 역할
- 단위별 성공한 사업교류, 지역 단결로 정치력 높여 조합원 체감형 사업 증대 등

□ **주요내용**

- 연맹별 교육 및 자료 성과를 통합하여 **공노총 아카데미 추진**
- 최근 1~2년내 연맹별, 단위노조별 우수사례 정책사업 등을 공유('26.상반기중)
- 국회 정부 정책대응을 연맹별외에 각 지역에서도 더 크게 단결하여 **공동브리핑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 연대강화('26년 연중)
- 지역에서 단위노조(지부)별 협업하여 조직사업 필요시 공동지원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순 회 간 담 회 비	10,000,000	단위노조(지역별) 정책 및 현안 간담회	
각 종 행 사 지 원	11,000,000		
조 직 사 업	70,000,000	조직강화, 조직확대	

4-3 (신규사업)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연대 정례화
---------------	---------------------------

□ **추진배경**

- 공무원은 재난·복지·민원·치안·환경·보건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노동자임에도, 그 역할과 어려움은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의 권익 향상은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품질, 재난대응 역량, 공공의 안전, 국가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이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소통·연대가 필수적
- 노동계·시민사회·전문가 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연대해야 공무원 관련 입법·제도 개선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노총은 공직 사회·시민사회·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공성 지키는 동반관계를 구축

□ **주요내용(연중)**

- 공직-시민사회 공동협력회의 정례화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민원 문화 개선
 - 재난안전·사회안전망, 청년·노년 빈곤, 복지 취약 문제
 - 공공노동자의 안전·권익, 공공기관 갑질 방지 캠페인
- 이슈별 사회연대 프로젝트 공동 수행
 - 재난 대응 공익 캠페인(산불·폭우·폭염 등)
 - 민원 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선언
- 노동·복지·사회적약자 연대 등 현안별로 정책협약 체결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제 단 체 연 대	10,000,000	관련 단체 연대 활동 투쟁 등	
기 타 대 외 활 동	5,000,000	500,000×10회	

5

공노총 혁신과 디지털 기반 강화

- 대변인제 운영
- 공노총 인터넷 TV개국
-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 기타 후생복지 사업 및 홍보 강화

5-1 (신규사업)	대변인제 운영
---------------	----------------

□ 추진배경

- 최근 노동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능력이 노조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 특히, 언론·정부·조합원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공노총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체계적인 소통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

□ 주요내용

- 대변인제 운영(연맹별 부대변인) 추진계획 (' 26. 2~3월)
 - ※ 부대변인 역할(연맹별 현안브리핑 지원, 부재 시 역할 수행)
 - 대변인실(브리핑룸 회의실 및 영상실 활용)
- 주요임무(효과)
 - 일관된 메시지 관리(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 모니터링)
 -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정책 현안 쟁점을 구조화해 설명)
 - 언론 질의 대응 능력 향상으로 조직의 신뢰도 상승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언 론 홍 보 사 업	15,000,000	언론사 간담회 등	
기 타 대 외 활 동	5,000,000	500,000×10회	

5-2 (신규사업)	공노총 인터넷 TV개국
---------------	---------------------

□ **추진배경**

- 공무원노조 활동 및 정책을 조합원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홍보 체계 필요
- 기존 공문·보도자료 중심 홍보의 한계 극복 및 실시간 소통 강화
- 조합원 참여 확대와 대국민 노조 인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 채널 확보

□ **주요내용**

- 공노총 인터넷TV 스튜디오 구축 및 유튜브 방송 편성
- 주요 현안, 정책 콘텐츠, 현장 인터뷰, 교육영상 등 제작
- 조합원만 접근할 수 있는 회원제 채널 편성
- 조합원 제보/참여 코너 운영 및 지역본부 참여 협력체계 구축
- 조합원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규모의 경제, 공동구매)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컴퓨터 및 영상음향 장비 등	12,000,000	영상실 장비 등	
홍보물, 영상제작 등	40,000,000	노동조건 및 투쟁 관련 홍보물	
언론홍보사업	15,000,000	언론사 간담회 등	

5-3 (신규사업)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	-----------------------------

□ **추진배경**

- 조합원 이용자 접속 환경이 모바일 중심 환경에 맞춘 통합 서비스 구축 필요
 - 접근성과 작은 화면에 맞춘 가독성 메뉴 구조 개편 요구
- 조합원 복지서비스가 분산되어 접근성이 낮고 정보 확인이 불편
- 신뢰도와 조직 이미지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전담 TF 운영, 1~2월중)
 - 모바일 홈페이지 필수 메뉴구성, 소통능력 배가 방안 등
- 예산 최소화한 구축 방식 등
- 할인혜택, 제휴서비스, 각종 자료 기능 추가
- 이벤트·설문 등 양방향 참여 기능 탑재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등	20,000,000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 홈페이지 제작비 등	
기 타 회 의	9,000,000	개편 관련 전담 TF 회의 운영비	

5-4 (계속사업)	기타 후생복지 사업 및 홍보 강화
---------------	---------------------------

□ **추진배경**

- 매월 공노총의 홍보활동내용 조합원에게 직접 알리고, 특별 건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후 조합원과 쌍방향 소통.
- 조합원 편익과 여가선용을 위한 업체 제휴 등 후생복지 사업 발굴
-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후생복지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운영 및 사업 공동 추진

□ **주요내용**

-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수집된 피드백은 각종 회의에 반영하여 조합원 목소리가 정책에 이어지는 순환구조 조성
- 매월 활동 내용 및 주요성과 및 홍보내용 송부
- <'26년 1월 주요 TIMELINE> “2026년 1월 공노총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이슈 상황에 맞는 메시지 및 후생복지 사업 홍보 활동 등
- 기타 다양한 조합원 홍보사업 발굴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금복지(임대주택, 교육, 건강, 여행, 여가, 제휴 등) 공동 운영 추진
- 2026. 1. 19. 공무원연금공단 방문 후 복지사업 공동 추진 의향 전달

□ **사업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홍보물 및 영상제작 등	40,000,000		
언 론 홍 보 사 업	15,000,000	언론사 간담회 등	

개요

- 규약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거, 2026년 예산을 수립하고자 함.

관련 규정

< 규 약 >

- 제14조(기능)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내용

- 붙임 2026년도 수입 지출·예산(안) 참고

의결주문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 일반회계 (2026. 1. 1. ~ 2026. 12. 31.)

○ 수입예산안

(단위 예산액 : 천원, 산출내역 : 원)

예산과목	'25년 본예산	'25년 최종예산(A)	'25년 결산	'26년 예산안(B)	증감액(B-A)	'26년 비율	산 출 내 역
수입총액	1,567,180	1,567,180	1,580,311	1,617,193	50,013	100.0%	
이월금	146,180	146,180	146,180	142,193	Δ 3,987	9.3%	2025년 이월금 142,192,750원
조합비	1,359,000	1,359,000	1,368,698	1,413,000	54,000	86.7%	총연맹의무금 1,500원/1인 78,500명×1,500원×12월 =1,413,000,000원
기타수입	62,000	62,000	65,434	62,000	0	4.0%	연맹 사무실사용 분담금 5,000,000원×12월=60,000,000원 이자수입 등 2,000,000원

○ 지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예산액 : 천원, 산출내역: 원)

과목별	세부내역	'25년 본예산	'25년최종 예산(A)	'25년 결산	'26년 예산안(B)	증감액 (B-A)	'26년 비율	산 출 내 역
지출총액		1,567,180	1,567,180	1,438,119	1,617,193	50,013	100.0%	
경상예산(관)		1,003,360	1,003,360	972,841	1,040,890	37,530	64.4%	
	인건비(항)	595,900	595,900	576,332	624,030	28,130	38.6%	

인건비(목)	소 계	495,000	495,000	482,831	509,000	14,000	31.5%	
	전임자	289,000	289,000	288,438	292,000	3,000	18.1%	노조 전임자 규정에 의거 1직급 승진 기준으로 지급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근성 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성 수당가산금, 대우수당, 시간외수당, 명절근성 과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사무처 직원	206,000	206,000	194,393	217,000	11,000	13.4%	직원 기본급, 직책수당, 정책연구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 및 수당 등(목)	소 계	100,900	100,900	93,501	115,030	14,130	7.1%	
	전임자 수당	18,000	18,000	18,000	18,000	0	1.1%	500,000×3명×12월=18,000,000
	전임자 연금보 전수당	5,400	5,400	5,400	5,400	0	0.3%	150,000×3명×12월=5,400,000
	연가보상비	15,600	15,600	10,593	16,800	1,200	1.0%	150,000×8명×14일=16,800,000
	복지포인트수당	3,500	3,500	12,962	6,030	2,530	0.4%	전임자(기관 미지급분) 2,030,000 직원 800,000×5명=4,000,000
	정근수당	13,100	13,100	3,500	20,800	7,700	1.3%	6대 위원장.수석.사무총장(1월분) 7,000,000 직원 기본급 50% × 2회 × 5명
	직원 가족수당	4,800	4,800	3,960	4,800	0	0.3%	400,000×12월=4,800,000
	직원 장려수당	20,900	20,900	20,831	22,200	1,300	1.4%	기본급 80% × 2회 × 5명
	직원 명절휴가비	15,700	15,700	15,554	16,600	900	1.0%	기본급 60% × 2회 × 5명
	건강검진비	2,400	2,400	1,200	2,400	0	0.1%	300,000×8명=2,400,000

	직원 생일상품권	500	500	500	500	0	0.0%	100,000×5명=500,000
	직원 여름휴가 지원비	1,000	1,000	1,000	1,500	500	0.1%	300,000×5명=1,500,000
경상적경비(항)	소계	407,460	407,460	396,509	416,860	9,400	25.8%	
일반운영비(목)	소 계	313,260	311,260	302,018	310,660	Δ 600	19.2%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01,000	201,000	200,662	207,000	6,000	12.8%	임대료 9,944,000×12월=119,328,000 관리비 7,167,000×12월=86,004,000 기타 사무실 공사 비용,근저당,화재보험 등
	사무기기 관리	4,200	4,200	2,990	4,200	0	0.3%	복합기2대 임대료, 공노총 소유 복합기 2대 토너구입비
	세무기장, 공과금	12,000	10,000	8,487	10,000	0	0.6%	신문 구독료, 정수기 및 비데 등 렌탈료, 세무기장료, 전화비, 문자발송비 등 비용
	잡화 구입	6,000	6,000	4,669	6,000	0	0.4%	회의 시 생수, 다과류, 사무용품 등 구입비
	택배 발송	600	600	154	600	0	0.0%	50,000×12월=600,000
	차량렌트대여 등	3,600	3,600	3,066	3,600	0	0.2%	150,000×2회×12월=3,600,000
	특근매식비	1,000	1,000	366	1,000	0	0.1%	100,000×10회=1,000,000
	전임자 주택수당	28,800	28,800	28,800	19,200	Δ 9,600	1.2%	800,000×2명×12월=19,200,000
	전임자 통신비	2,160	2,160	2,160	2,160	0	0.1%	60,000×3명×12월=2,160,000
	상해보험	2,900	2,900	2,627	2,900	0	0.2%	중앙집행위원 및 사무처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직원 퇴직연금	24,000	24,000	21,957	25,000	1,000	1.5%	임금총액 × 1/12 × 5명, 퇴직연금 운

	적립							용 수수료
	4대보험 부담금	27,000	27,000	26,080	29,000	2,000	1.8%	직원 5명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직원 5명+전임자 3명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금
자산취득비	소 계	4,000	5,500	5,434	14,000	8,500	0.9%	
	사무용가구	1,000	0	0	2,000	2,000	0.1%	책상, 파티션, 의자 등
	컴퓨터 및 영상 음향 장비 등	3,000	5,500	5,434	12,000	6,500	0.7%	공노총TV개국,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관 련 노트북,데스크탑,장비 등
여비	소 계	21,600	21,600	21,227	21,600	0	1.3%	
	관외출장	19,200	19,800	19,772	19,800	0	1.2%	1,650,000×12월=19,800,000
	관내출장	2,400	1,800	1,455	1,800	0	0.1%	150,000×12월=1,800,000
업무추진비	소 계	17,000	19,000	18,030	19,000	0	1.2%	
	가맹노조 경조비	6,000	7,000	6,703	7,000	0	0.4%	583,333×12월=7,000,000
	가맹노조 업무 협약 및 행사격려	11,000	12,000	11,327	12,000	0	0.7%	1,000,000×12월=12,000,000
특수업무활 동비	소계	51,600	50,100	49,800	51,600	1,500	3.2%	
	위원장	12,000	12,000	12,000	12,000	0	0.7%	1,000,000×12월=12,000,000
	수석부위원장	9,600	9,600	9,600	9,600	0	0.6%	800,000×12월=9,600,000
	사무총장	8,400	8,400	8,400	8,400	0	0.5%	700,000×12월=8,400,000
	부위원장	18,000	16,500	16,200	18,000	1,500	1.1%	300,000×5명×12월=18,000,000

	본부장	3,600	3,600	3,600	3,600	0	0.2%	300,000×12월=3,600,000
사업예산		512,840	512,840	425,277	528,200	15,360	32.7%	
기획정책사업비	소계	141,840	124,840	103,272	214,200	89,360	13.2%	
특별위원회	소계	5,000	5,000	1,616	8,000	3,000	0.5%	
	위원회 운영비	2,000	2,000	1,616	5,000	3,000	0.3%	
	워크숍 및 자료집	3,000	3,000	0	3,000	0	0.2%	
법률사업비	소계	28,200	28,200	25,568	28,200	0	1.7%	
	법률노무자문료	13,200	13,200	13,200	13,200	0	0.8%	일과사람 법률자문 1,100,000×12월=13,200,000
	법률지원비	15,000	15,000	12,368	15,000	0	0.9%	5,000,000×3회=15,000,000
정책역량강화	소계	61,640	44,640	29,113	130,000	85,360	8.0%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37,440	37,440	24,808	40,000	2,560	2.5%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제도개선분과, 안전보건분과 회의비, 단위노조 위원장 아닌 분과위원 출장여비(교통비, 연가보상비), 연례 정책워크숍 등
	정책토론회	10,000	2,000	455	20,000	18,000	1.2%	10,000,000×2회=20,000,000
	전문가자문비 등	3,200	4,200	3,709	10,000	5,800	0.6%	노조발전자문위원회(분야별 전문가) 자문료, 지도위원(역대위원장) 및 자문위원 간담회비, 명절 선물비 등
	연구용역비	10,000	0	0	50,000	50,000	3.1%	12,500,000×4회=50,000,000
	정책자료 제작비 등	1,000	1,000	142	10,000	9,000	0.6%	정책자료 제작비(정책리포트, 연간 백서 등), 도서 및 논문 구입
회의운영비	소계	47,000	47,000	46,975	48,000	1,000	3.0%	

	출범식				15,000	15,000	0.9%	15,000,000×1회=15,000,000
	전국대의원대회	30,000	32,230	32,222	15,000	Δ 17,230	0.9%	15,000,000×1회=15,000,000
	중앙위원회	4,000	0	0	4,000	4,000	0.2%	4,000,000×1회=4,000,000
	중앙집행위원회	5,000	5,920	5,913	5,000	Δ 920	0.3%	월 2회 중앙집행위원회 간담회비
	기타회의	8,000	8,850	8,840	9,000	150	0.6%	회계감사, 사무처 회의, AI활성화 TF, 연맹 협의 간담회 등 비용
선거사업비	소계	52,800	47,800	27,684	0	Δ 47,800	0.0%	
	후보자지원	소 계	25,000	25,000	16,595	0	Δ 25,000	0.0%
		위원장 후보	15,000	15,000	10,000	0	Δ 15,000	0.0%
		부위원장 후보	10,000	10,000	6,595	0	Δ 10,000	0.0%
	선거운영비	소 계	27,800	22,800	11,089	0	Δ 22,800	0.0%
		포스터, 홍보물 등(발송비포함)	6,000	7,500	7,239	0	Δ 7,500	0.0%
		동영상제작비(정책토론회등)	10,000	3,500	0	0	Δ 3,500	0.0%
		온라인투표비	3,000	3,000	1,786	0	Δ 3,000	0.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8,800	8,800	2,064	0	Δ 8,800	0.0%
투쟁사업비	소계	120,000	110,000	86,874	100,000	Δ 10,000	6.2%	
	투쟁사업비	소 계	120,000	110,000	86,874	100,000	Δ 10,000	6.2%

	기자회견 등 각종투쟁	120,000	110,000	86,874	100,000	Δ 10,000	6.2%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천막농성, 선전전 등 비용	
조직강화사업비	소계	89,200	121,200	119,343	91,000	Δ 30,200	5.6%		
	조직사업비	소 계	89,200	121,200	119,343	91,000	Δ 30,200	5.6%	
		순회 간담회비	9,600	12,600	12,028	10,000	Δ 2,600	0.6%	연맹별 지역별 간담회, 단위노조 간담회 등 비용
		각종 행사지원	9,600	11,600	11,410	11,000	Δ 600	0.7%	연맹 및 단위노조 행사 화환, 공로패, 원포인트 협약 보드판, 연맹 연대사업 공노총 아카데미 상품권, 대관료 등
		조직사업	70,000	97,000	95,905	70,000	Δ 27,000	4.3%	조직확대 및 조직강화 사업 등 비용
홍보교육사업비	소계	74,000	80,000	69,747	95,000	15,000	5.9%		
	홍보사업비	소 계	49,000	49,000	39,417	75,000	26,000	4.6%	
		홍보물, 영상제작 등	30,000	30,000	22,904	40,000	10,000	2.5%	공노총TV개국, 유튜브, 콘텐츠, 교육영상, 홍보물 등 제작
		언론홍보사업	15,400	15,400	14,318	15,000	Δ 400	0.9%	신문 광고, 언론사 간담회 등 비용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등	3,600	3,600	2,195	20,000	16,400	1.2%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 홈페이지 개편 유지보수, 서버관리비
	교육사업비	소계	25,000	31,000	30,330	20,000	Δ 11,000	1.2%	
		활동가 양성 교육	25,000	31,000	30,330	10,000	Δ 21,000	0.6%	정책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상하반기
		노동부 지원사업				10,000	10,000	0.6%	5,000,000×2건=10,000,000
대외협력사업비	소계	35,000	29,000	18,357	28,000	Δ 1,000	1.7%		

	대외업무추진비	소계	35,000	29,000	18,357	28,000	Δ 1,000	1.7%	
		대국회 활동	8,000	8,000	4,372	9,000	1,000	0.6%	300,000×30회=9,000,000
		대정부 활동	3,000	3,000	2,191	4,000	1,000	0.2%	200,000×20회=4,000,000
		제단체연대	20,000	13,000	6,963	10,000	Δ 3,000	0.6%	공투위, 연금행동, 정책협의체 등 연대 활동 투쟁기구 분담금 등
		기타 대외 활동	4,000	5,000	4,831	5,000	0	0.3%	500,000×10회=5,000,000
희생자구제기금 적립		20,000	20,000	20,000	20,000	0	1.2%	2026년 희생자구제금 1회 적립 후 정기예금으로 관리	
사무실 설치기금		20,000	20,000	20,000	20,000	0	1.2%	사무실 이전비용(원상복구, 이사, 인테리어, 집기구매 등) 적립 후 정기예금으로 관리	
예비비		10,980	10,980	0	8,103	Δ 2,877	0.5%	규약상 총예산의 5%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할수있다	

□ 특별회계 (2026. 1. 1. ~ 2026. 12. 31.)

○ 희생자구제기금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25년 예산액(A)	'25년 결산	수입률(%)	'26년 예산안(B)	증감액(B-A)	산 출 내 역
수입	수입총액	130,390,112	130,187,833	99.8%	153,187,833	22,797,721	
	이월금	107,590,112	107,590,112	100.0%	130,187,833	22,597,721	2025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20,000,000	100.0%	20,000,000	0	
	이자수입	2,800,000	2,597,721	92.8%	3,000,000	200,000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
지출	지출총액	130,390,112	0	0.0%	153,187,833	22,797,721	
	예비비	130,390,112	0	0.0%	153,187,833	22,797,721	

○ 사무실 설치기금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25년 예산액(A)	'25년 결산	집행률(%)	'26년 예산안(B)	증감액(B-A)	산 출 내 역
수입	수입총액	163,008,947	162,833,922	99.9%	183,333,922	20,324,975	
	이월금	141,008,947	141,008,947	100.0%	162,833,922	21,824,975	2025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0	20,000,000	100.0%	20,000,000	0	
	이자수입	2,000,000	1,824,975	91.2%	500,000	Δ 1,500,000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 (정기예금 1건은 '27년 만기 예정)
지출	지출총액	163,008,947	0	0.0%	183,333,922	20,324,975	
	예비비	163,008,947	0	0.0%	183,333,922	20,324,975	

○ 퇴직연금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25년 예산액(A)	'25년 결산	집행률(%)	26년 예산안(B)	증감액(B-A)	산 출 내 역
수입	수입총액	118,959,420	116,295,840	97.8%	141,295,840	22,336,420	
	이월금	94,959,420	94,959,420	100.0%	116,295,840	21,336,420	2025년 이월금
	직원 퇴직연금 적립	24,000,000	21,336,420	88.9%	25,000,000	1,000,000	
지출	지출총액	118,959,420	0	0.0%	141,295,840	22,336,420	
	예비비	118,959,420	0	0.0%	141,295,840	22,336,420	

○ 채권

(단위 : 원)

구분	금액	예치기관(임대인)
사무실 보증금	100,232,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안건 6

기타

첨부

1. 성명서, 논평 등
2. 규약
3. 전국대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고사하고,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후 보장을 크게 후퇴시키는 중대한 패착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러한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OECD 국가들의 연금 제도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는 낮은 수준인데 연금 지급액까지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

2015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 노후를 위해 쓰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연금 개악을 받아들인 공무원 노동자들을 더는 우롱하지 말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어떠한 퇴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 2. 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권위의 정년연장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다.

우리나라의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수년째 떠안고 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도는데, 연금 개약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 모두가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재정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약 안을 감내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작금의 사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고령자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직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 추진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

년을 연장, 2017년 시범실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정년 연장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지난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국회에는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을 추진하며 공무원 관계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로,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 말라. 연금계약으로 발생한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지금 당장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공노총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금번 인권위의 정년연장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

2025. 3. 1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내란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의 국민 노후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여 퇴행적 결정을 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적 기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들은 수백조 원의 희생을 감수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공정한 희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의 요구마저 외면했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라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는 노력은커녕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내란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파면으로 향후 집권하게 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현 정권에 떠넘기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

께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적 요구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즉각 재논의하라.

2025. 3. 1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회와 정부는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라!

연금 지급시기와 정년이 불일치하여 연금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수급시기와 연동하여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정년 퇴직 후 연금소득 공백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년 퇴직 후 그 어떤 방안이나 지원도 없이 오로지 퇴직공무원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소득공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각자 살기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공백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소득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하여 2025년 퇴직자는 2년 발생하고, 2033년 퇴직자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소득이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활동도 위축된다. 공무원 퇴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퇴직자도 노후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 연장을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정년 65세로 상향을 정부는 이행하여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 유일하게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불일치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에서 늙어서까지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지만, 적어도 연금이 나와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금이 나올 때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국회에서 이제 해결하라.

2015년 정부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연금 크

레딧 확대 방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공백 문제를 10년 동안 방치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5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을 마련하라!

2025. 3. 1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3월 19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성남시의회의 정년연장 촉구 결의안 적극 환영한다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직 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책임을 밝히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며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고령자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직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던 정부의 김언이설에 속아 2032년까지 10만 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됐다.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인권위원회 역시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등 관계 법령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불명예 타이틀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는 그저 암울하기만 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락에 좌지우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연금 보험료 인상만 논하고 있다.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 대표 속의 토론 결과로 도출됐던 소득대체율 50%에 한참을 못미치는 43%의 소득대체율을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3월 18일 공노총이 추진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이 5만 천여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또 민간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정년 연장,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정년 연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청원과 더불어 성남시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의 결의안을 귀담아듣길 바란다.

공노총은 금 번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모두의 인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

2025. 3. 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5급 선발승진제는 5급 고시 정원으로 실시하라

인사혁신처는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열고 연내 5급 선발승진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급 선발승진제도는 공직을 이탈하는 2030 공무원을 잡기 위해 전문성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육성해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로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자질·역량·잠재성을 갖춘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서류전형·역량평가·심층면접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특별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지난해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청년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려는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임금(87.9%), 두 번째는 과도한 업무량(40.2%), 세 번째가 승진적체(20.0%)다. 청년공무원이 공직을 이탈하는 원인은 월급도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킨다는 것이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데 5급 선발승진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간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임금보장과 인력충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사처는 직시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굳이 5급 선발승진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고시제도를 이 제도로 대체하면 된다. 당장 고시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고시정원의 일부를 5급 선발승진제 정원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고시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5급 선발승진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길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

2025. 4.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4월 4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헌재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 차공제사(借公濟私) 간제(干제)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후 무려 4달 만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던 '권한 남용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계엄 모의 및 옹호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이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을 벌써 두 차례나 경험했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가 이미 여러 차례 목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공직사회 내에는 부지불식간에 '권한 남용'의 악습이 자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할 국정에 사익을 개입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남용을 일삼다가 임기 후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대한민국 공직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잊은 채 자신의 셈법에만 빠져 국익을, 국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선거’ 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 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칼자루 휘두르듯 남용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노총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

또 공노총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며, ‘차공제사(借公濟私),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를 빙자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 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 로서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히 해 나갈 것임을 굳게 밝힌다.

2025. 4. 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onfederation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

성명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5월 1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한국 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깊은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땀과 헌신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는 날이어야 한다.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는 이 노동절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절의 그림자 속에 있다.

공무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구분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날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절의 휴식과 존중, 권리 보장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의 문제이며, 단순한 휴일 부여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제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여전히 반쪽짜리 노동 3권에 묶여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 정부는 이마저도 '시혜(施惠)'인 것처럼 내세우며 순종을 강요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친다. '우리는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와 무책

임한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공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남은 여생을 역사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무원을 노동자로 존중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화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정부가 세워지기를 강력히 바란다. 노동을 배제하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웠다.

제135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는 동시에 공노총 14만 조합원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절 가치마저 차별받고 살 순 없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근로자의날법, 공휴일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

하나. 말뿐인 노동 존중, ILO 권고조차 외면하는 정부! 빼앗긴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쟁취될 때까지 공노총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25. 5.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5월 15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許)하라!

-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무원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 -

표현과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 참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행정 중립성 확보를 넘어, 공무원을 사실상 '비정치적 존재'로 고립시키는 억압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과도한 침묵과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반헌법적 통제라는 점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직무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은 불합리한 정책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행정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공무원 개인의 권리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

공무원도 평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에게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시대착오적 정치중립 강요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그 어떤 민주주의도, 공무원의 침묵 위에 세워질 수 없다.

2025. 5. 1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5월 16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단결 없는 국가에 진짜 공공성은 없다 -

노동자에게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최소 기준이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체교섭권)는 이미 100개국 이상에서 비준된 국제 기준이다. 한국도 2021년 이들 협약을 비준했지만,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핵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단결권은 이름뿐이고, 단체교섭권은 예외와 제약투성이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원천 봉쇄되어 있다.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지만, 정작 공무원노동자들은 그 약속의 당사자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노동 존중 정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불합리한 제도에 항의할 수 없고, 잘못된 정책에 맞설 수 없는 공직사회는 결국 무기력과 침묵의 문화에 갇히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실질적 3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할 것인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제도화할 것인가?

ILO가 정한 국제기준조차 외면한 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 노동 없는 공공은 공허하며, 단결 없는 국가는 약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더 이상 형식적 대화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2025년 대선은 기회다.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은,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5. 5.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장은 그대로, 연금은 늦게.. 소득공백 5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공무원 정년 연장은 생존권 보장이다 -

'60세에 퇴직하지만, 연금은 65세부터'... 공무원의 5년은 공백이 아니라 절벽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현시점에서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공무원은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어떠한 소득도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에 대한 침해이다. 민간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금, 또는 재취업이라는 현실적 대안이라도 있지만, 공직사회의 구조는 그러한 유연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본급 중심의 낮은 임금체계,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 제한,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겹치며 퇴직 공무원 다수는 노후 빈곤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단순히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졌다면, 정년도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더 나아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후 보장 의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공무원의 정년을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제도 개혁을 즉각 공약으로 명시하라.

퇴직 후 소득공백을 방치하는 국가는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65세 정년은 국제적 기준이자 시대적 요구이며, 고령사회에서의 공직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단순한 근무연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연장이며, 절벽 위에 선 공무원에게 필요한 유일한 다리다.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2025. 5. 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임금, 더 이상 국가 재정의 뒷전일 수 없다! **- 공무원 채우는 곧 국민 서비스의 질이다 -**

'사명감만으로 버텨라'는 말이 가장 무책임한 처우다. 공무원 임금은 지난 수년간 실질임금이 후퇴해 왔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인상률, 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 그리고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공무원 보수 정책... 그 결과는 지금, 전국의 공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고민하고, 경력직 채용은 매력 없는 조건 탓에 반복적으로 미달 사태를 겪는다. 국민은 점점 더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 임금의 현실이다.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버텨야 하는 직장은 오래가지 못하며, 공무원의 사기가 무너진 조직에서는 공공서비스도 무너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이미 80% 선으로 추락했다. '정년 보장'이라는 말로 현장을 봉합하기엔, 이제 그마저도 설득력을 잃었다. 공직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라.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임금 대비 100% 수준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공무원 임금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투자해야 할 공공 자산'이다.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정당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2025년 대선은 공직사회 처우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삶이 무너지는 사회에선, 공공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2025. 5. 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제는 '주 4일제'다!

- 공직사회도 삶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 -

- 공무원도 쉬어야,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그 말이 진심이라면, 공무원의 삶도 지켜져야 한다.

주 4일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영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공공부문부터 실험을 시작했고, 업무 생산성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여전히 '주 5일 근무제' 정착조차 불완전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는 행정 최전선에서 야근과 주말근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로시간이나 과로 방지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과로사로 쓰러지는 공무원이 해마다 나오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조직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주 4일제 도입이다.

이는 단지 '쉬는 날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혁신, 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노동 재구성이다. 주 4일제는 노동시간의 단계적 단축, 유연한 근무체계,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행정의 품질로 되돌아간다. 사람을 혹사시켜 일 잘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공직사회 주 4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시범 사업 확대, 관련 법령 정비, 인력 충원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라.

이제는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말에 진짜 의미를 담아야 할 때다. 성과 중심, 시간 외 노동 구조를 고치지 않고선 아무 개혁도 실현될 수 없다.

공무원도 인간이다. 쉴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국민은 더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 대한민국 행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무원이 먼저 살아야 한다. 2025년 대선은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25. 5. 2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무너지는 현장, 부족한 사람!

- 공무원 인력확충은 공공의 생명선이다 -
- 인력 없는 행정은 없다, 노동 없는 공공은 없다 -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지방소멸 기후재난 감염병 대응, 초고령화..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현장에는 '한 사람이 세 명 몫을 해내야 하는 구조가 만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절감을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거나 감축해왔다. 하지만 정원감축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민원 대기시간 증가, 현장 혼란, 공무원의 과로로 이어졌다.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재난·안전·교육 등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일수록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학교 현장에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기초지자체는 복지업무에 숨이 턱턱 막힌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 강화는 말뿐인 구호가 되어버렸다. 인력이 없으면 정책도, 행정도, 변화도 없다.

이제는 말뿐인 개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공무원 인력 확충은 단지 고용 확대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향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이자 투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공공서비스 핵심 분야(보건, 복지, 안전, 교육 등)의 인력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라.

정원 동결 정책을 폐기하고, 인력 기준과 배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력 투자 계획을 분명히 밝혀라.

공무원이 지쳐 나기떨어지는 사회는 국민도 안전하지 않다. 국가의 신뢰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사람을 늘려야 행정이 살고, 행정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2025년 대선은 '사람을 위한 국가'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5. 5. 2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탄핵으로 열린 대선,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의 명령을 기억한다!

- 새 대통령은 6대 정책 과제를 즉각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를 딛고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능과 독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정치를 다시 세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중대한 정치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일찍이 다음 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6대 정책 과제를 모든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시해왔다. 이 과제는 단지 공무원을 위한 특권적 요구가 아니다. 국가 행정의 토대를 지키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다.

공노총이 제시한 6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회복하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ILO 핵심 협약에 따른 실질적 노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3. **정년 연장과 소득 공백 해소**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퇴직 후 5년간 생계가 끊기는 불합리를 즉시 시정하라)
4. **공무원 임금 현실화** (물가와 민간 대비 뒤쳐진 임금을 바로잡고, 저연차 퇴직자를 막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5. **주 4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의 삶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
6.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보건, 복지, 재난, 안전, 교육 등 핵심 현장에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새 대통령은 공노총의 6대 정책 과제를 즉시 국정과제에 포함하라!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그 이행 방안을 투명하게 설계하라!

공노총은 결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6대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과 실천을 본격화할 것이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침묵하지 않으며, 전국 곳곳에서 행동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바로 선다. 공무원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도 외면할 것이다.

공노총은 선언한다.

우리는 정치적 침묵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 없는 공공을 거부한다! 우리는 퇴직 후 빈곤을 강요 받는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미래 없는 행정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한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실현할 것이다.

2025. 6. 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과 없이 끝난 노사협의회,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3월 5일 대한민국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가 6월 17일 막을 내렸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조 대표단은 인력 부족과 악성민원, 그리고 낮은 보수와 아직도 경직된 조직문화에 희망을 잃고 있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인사, 보수, 복무 등 24개의 요구안을 들고 지난 3개월 이상 정부와 협상하였다.

우리의 요구안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년째 실질임금의 동결로 월급은 항상 제자리걸음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제도가 공무원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현장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돈 드는 건 안 된다', '규정이라 어렵다', '민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등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조합이 밀도 있게 분석해서 제안한 안건들을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와 자세로 외면하였다.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로 우리의 요구를 칼질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노사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비합리적이고 제도 자체가 모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상호 간 이해와 인식 그리고 노사 간 공통의 노력하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현장 공무원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규율하는 정부 관료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미래는 없다. 다시 한번 노사협의회에 노사관계의 근간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가 우리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테이블이 아닌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 6. 19.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조 대표단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

2025년 5월 23일, 안주찬 구미시의원은 공식 행사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오늘,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형식적이고 미약한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동료 의원 보호를 위해 정의와 공정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폭력과 범죄를 용납하고 묵인한 것이며, 시민과 공직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다.

공무원을 향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폭력과 범죄가 반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구미시의회는 스스로 존재할 이유를 잃었다. 시민을 대표하고 공직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외면했다.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구미시의회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과 공직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

2025. 6. 2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방적 12월까지 해수부 이전, 재검토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졸속 행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직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이번 결정은 공직자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무시한 비인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다.

지금껏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정부 부처를 집중시키며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명확한 장기계획이나 충분한 준비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이고 준비 없는 이전은 행정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국민과 국가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공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업무 효율성, 각종 효과에 대한 깊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둘째, 직원들의 삶과 근무환경, 가족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직원들의 삶을 흔드는 일방적 이전 결정을 즉각 배제하고, 해수부 직원들과의 소통창고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

정부는 공직자의 삶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신중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노총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때까지 강력히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다.

2025. 6. 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활동가 故 이○○ 동지를 추모하며 -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노조 서울지방항공청 지부장이자 항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해 온 관제사 故 이○○ 동지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는 비통한 소식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합니다.

이○○ 동지는 누구보다도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워온 참된 노동조합 활동가였습니다. 국가의 하늘길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 속에서도, 그는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연대하고 투쟁하며, 더 나은 삶과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셨다고 전해집니다. 고인의 선택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오랫동안 구조화된 무관심과 방치 속에 놓여 있던 공무원 노동자 전체의 절규였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고인의 고귀한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의 뜻에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인의 뜻을 끝까지 이행하겠습니다.
관제 현장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 심리·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 등 고인이 남긴 절절한 요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실천했던 이○○ 동지의 삶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싸우는 노동조합으로 남겠습니다.

동지여, 부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남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7. 2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8월 20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6만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즉각 촉구한다!

인천소방본부 소속이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의 소중한 조합원이던 동료 소방공무원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참된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매일같이 국민을 대신해 겪어야 하는 심리적 충격과 고통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이들이 정작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순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노총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공노총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 8. 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도청 동료의 비보를 애도하며, 고인의 뜻을 헛되지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깊은 슬픔 속에 한 동료의 비보를 전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유가족과 동료들께 깊은 위로드립니다. 고인은 성실히 일하던 공무원 노동자였습니다. 남겨진 자리의 허전함과 상실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수사 과정의 압박과 심리적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죽음 앞에서 설부른 단정이나 소모적 공방은 경계하되, 만약 고인이 남긴 메시지처럼 검찰의 압박이 실제로 심했다면,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당사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노총은 관계기관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의 언행 등 인권과 절차 준수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호소합니다. 관련 조사·징계 등 모든 절차에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익이나 고의가 없었던 실무자들에게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실무자에게만 수직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일은 형평에 어긋나며, 과도한 중징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해치고, 특히 청렴하게 일해 온 젊은 공무원들의 경력과 헌신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사익을 취하지 않고도 관행과 지시에 따라 일해 온 동료들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실한 복무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한 신중하고 따뜻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노총은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과 동료들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고인을 이상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인이 남긴 마지막 호소를 더 나은 기준과 더 따뜻한 절차로 바꾸어 내는 것으로 추모하겠습니다. 기록과 공개, 숙의와 절차, 배려와 안전이 일터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남겨진 가족과 동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노총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 10. 1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전국군무원연대(대표 허병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지난 9월 23일(화) 수도권단에 이어 11월 11일(화) 두 번째 발생한 17사단 두발징계건에 대해 경약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분야인 기술, 행정 직렬의 민간 인력이다. 그런데 왜? 군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인해 일반 공무원은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게 되는 감봉 2개월에 달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명백히 신분이 다른 군인의 신분법인 군인기본법에 적용받으며 두발 길이까지 군인과 동일하지 않다고 징계받아야 하는가?

지난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정권 내내 군내 민간인인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를 추진하여왔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사격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군장류의 착용을 지시하고 군의 모든 전투훈련에 동원하였으며, 군인의 가장 일상적 경계근무이자 전투임무인 군내 당직(당직사령, 당직사관, 당직부관, 위병조장 등)에 군무원을 군인과 경계 없이 강제로 투입하였다. 군무원이 군인의 업무를 대신하였는데 국방력이 강화되었는가? 첨단 강군이 되었는가? 전임 정부의 국방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불법 계엄으로 망해버린 군을 올바르게 개혁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민간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7월 28일(월) 취임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주권자로서 대접하겠다는 기조의 현 정부,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당연히 지난 정권 내내 국방부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해왔던 전군 46,000 군무원들의 기대는 높았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있다. 3개 노조는 안규백 장관님께 묻고 싶다.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군무원과 군인의 두발길이가 같으면 국방이 개혁되는가?

군무원이 군인의 일상경계 업무인 당직을 전담하게 되면 국방력이 강화되는가?

군무원이 군인의 기강인 군기의 적용을 받고 군기교육대를 가며 군기순찰을 하면 첨단강군이 되는가?

군무원이 전투복과 군장류를 착용하고 부대훈련 시 군인의 훈련을 대신 능숙히 수행하면 자주 국방이 실현되는가?

군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군인과 동일시하면 군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의지가 높아지는가?

내란이 극복되는가?

공노총 등 3개 노조는 안규백 장관 취임 후 군내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안과 군무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현재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군무원 두발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각종 사안들에 대해 피해를 받는 군무원 동료들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할 것이다.

2025. 11. 1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군무원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732-6193~4 | 팩스 02-732-6195 | 2025년 11월 20일
위원장 : 석현정 | 사무총장 : 김정채 | 메일 gnchong@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nch.or.kr>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군무원 노조 설립,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속히 추진하라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직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근무, 위험 직무 노출, 인력·장비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노동조합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공노총은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군 전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서도 시급히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군무원은 군 조직 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 근무 환경 조성, 처우 개선, 조직 내 소통 구조 확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군무원의 전문성 유지와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이 발의된 지금이 바로 군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할 적기이다. 국가의 중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에서 노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노동조합 설립 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

한 것일 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말이 아님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제복 공무원인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시행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도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한 절차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없느니만 못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 등 관련 제도 재정비에도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공노총은 이번 경찰공무원 노조법안 발의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찰직협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군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등 공공부문 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5. 11. 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침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기원하며

- 공직사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무원 기본권 보장하라 -

2024년 12월 3일 국가의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일년이 지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히며 비상계엄 주동자와 동조자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을 촉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혀버린 공직사회에서 부지불식간 침묵은 미덕이 되었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혀 좌천되어 왔다.

케케묵은 낡은 법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이 때때로 정당한 의견 표명마저 가로막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당한 명령이나 헌정질서 위반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은 아닌가?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무원 기본권 제약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다. 공직사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율적 의견 개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논의는 필수 불가결이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조치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이번 인사혁신처의 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입과 손을 묶는 정치·노동기본권 제한의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는 한 아픈 역사는 다시금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공무원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및 단결의 자유,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제도적 여건은 필수다.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은 곧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헌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공노총은 12.3 비상계엄 주동자 및 동조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원한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 사람만의 행동으로 지켜질 수 없다. 잘못된 지시에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상관이 아닌 국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행정가는 바른말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 잘못에 항거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라.

공노총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이다.

2025. 12.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규약

[시행 2024. 1. 30.] [제2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24. 1. 30, 일부개정]

2012. 06. 20.	창립총회 제정
2013. 02. 05.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4. 03. 13.	제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5. 04. 08.	제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6. 06. 29.	제1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8. 08. 27.	제1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전부개정
2021. 02. 05.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2. 01. 27.	제19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4. 01. 30.	제2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하고 약칭은 공노총으로 한다.
영어 명칭은 Confederation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로 한다.

제2조(목적) 공노총은 강령을 실현하고,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하고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노총은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조합원의 정치기본권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설치) 공노총의 사무소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도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5조(법인) 공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공노총의 운영은 규약에 의하며,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필요에 의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공노총은 다음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 국가공무원노동조합
3.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4.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5.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구성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6. 기타 공노총이 절차에 따라 가입을 승인한 노동조합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공노총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위노조, 연합단체, 연합노조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소속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타 단체와의 관계) 공노총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① 공노총의 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공노총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공노총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세부 기준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공노총 규약 제40조(권리의 제한과 징계) 및 제41조(임원의 탄핵)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공노총의 연맹 및 단위노조의 규약·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선거공고일 기준, 후보자가 소속된 단위노조가 공노총에 가입한 기간 중에 후보자가 단위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후보자가 소속된 단위노조가 공노총에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의무) 공노총의 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공노총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12조(신분보장) 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이 공노총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 공노총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선거인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사무총국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기능) ① 공노총은 총회에 갈음하여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출 및 탄핵과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노총 중앙집행위원과 각 조직에서 선출하여 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25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126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250명 미만의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전국대의원대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조직의 경우 3개월로 한다.

③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전국대의원 배정인원 조정 및 전국대의원 변경은 조직에서 공노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3절 선거인대회

제17조(구성) ① 선거인대회는 공노총 전국대의원과 조직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인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5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26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50명 미만의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선거인대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조직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제18조(소집) 위원장은 임원 선거 시 선거인대회를 소집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19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징계의 재심의를 관한 사항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주요안건 심의
7.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단위노조 직가입 및 연맹 지위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노총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공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조직에서 추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50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251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500명 미만의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중앙위원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조직의 경우 3개월로 한다.

③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중앙위원 배정인원 조정 및 중앙위원 변경은 조직에서 공노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노총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제출 안건 심의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면
6.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의 임면
7. 사무총국, 직속기구,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
9.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공노총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국 노조 전임 중인 본부장, 연맹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연맹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연맹 지위 승인한 연합단체 및 연합노조 등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24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25조(특별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총국

제26조(사무총국) ① 공노총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7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장과 4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공노총 사무전반과 재정집행 사항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노총의 다음 각 호의 선거를 관장한다.

1. 임원 선출 및 보궐 선거
2.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및 보궐 선거
3.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보궐 선거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과 7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규약·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공노총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9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희생자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사유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11절 회의

제30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특별의결) 다음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공노총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3. 임원의 탄핵

제5장 임원

제32조(임원) 공노총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5명
4. 사무총장 1명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노총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총국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6.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국 업무를 관리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운영한다.
3.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활동 및 결산을 보고한다.

제34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은 선거인대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해야 한다.

③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 과반수 투표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단독 입후보 하거나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공고 이전에 한쪽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독후보가 된 경우에는 단독후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 ⑤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한다.
- ⑥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보궐선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 ⑦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⑧ 임원선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36조(재정원칙) ① 공노총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 ②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동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재원) ① 공노총의 재정은 조직에서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연맹비 :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금액
 2. 기금 :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
- ③ 총연맹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8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표창 및 통제

제39조(표창) 위원장은 공노총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연맹·단위노조·임원·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게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0조(권리의 제한과 징계) ①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연맹·단위노조·임원·조합원이 강령, 규약, 규정, 의결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공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을 미납했을 때(총연맹비의 경우 3개월 이상)
- ② 권리의 제한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제42조(해산사유) 공노총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조직이 모두 탈퇴한 경우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해산이 의결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연맹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의 효력) 총연맹 가입 노동조합연맹 규약이 총연맹 규약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초대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약 제42조 내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하고,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전국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등 배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전국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등의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전국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연맹비 납부일로부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2. 선거인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연맹비 납부일로부터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3. 중앙위원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연맹비 납부일로부터 중앙위원회 개최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제5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선거인대회에 의하여 선출하는 차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창립총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하고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총연맹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3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통상관례 및 그 밖의 경과조치)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리, 관계 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3.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의 임기는 차기 임원부터 적용한다.

- ② 차기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임원 당선인이 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구성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국회(입법부)공무원노동조합을 연맹으로 본다.

②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제4대 집행부의 임기동안은 중앙집행위원으로 한다.

부칙 <2021.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6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명단

연번	소속	직책	이름	비고
1	공노총	위원장	공주석	
2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이기행	
3	공노총	부위원장	강순하	
4	공노총	부위원장	박정식	
5	공노총	부위원장	안종현	
6	공노총	부위원장	이상수	
7	공노총	부위원장	윤병철	
8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민성	
9	공노총	국공노 위원장	이철수	
10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	진영민	
11	공노총	광역연맹 위원장	김명수	
12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이창석	
13	공노총	사무총장	이호발	
14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박민식	
15	동대문구노조	위원장	나선군	
16	동대문구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성철	
17	동대문구노조	부위원장	전지희	
18	동대문구노조	사무총장	진성정	
19	노원구노조	위원장	김영락	
20	노원구노조	사무총장	안경민	
21	중랑구청노조	위원장	이재춘	
22	중랑구청노조	수석부위원장	서지완	
23	중랑구청노조	부위원장	이용관	
24	중랑구청노조	청년국장	김민균	
25	대구북구노조	위원장	김영호	
26	대구북구노조	사무총장	배준현	
27	울산동구청노조	위원장	이영도	
28	구미시노조	위원장	곽병주	
29	구미시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지영	
30	구미시노조	부위원장	김해진	
31	구미시노조	부위원장	이윤경	
32	구미시노조	사무총장	김주성	
33	의성군청노조	위원장	권기득	

34	의성군청노조	부위원장	홍성조	
35	의성군청노조	사무총장	김민우	
36	예천군노조	위원장	최병준	
37	예천군노조	사무차장	류기석	
38	봉화군청노조	위원장	배기락	
39	봉화군청노조	사무국장	권오기	
40	영덕군청노조	위원장	조광찬	
41	영덕군청노조	사무국장	정광준	
42	경산시노조	위원장	최종환	
43	경산시노조	부위원장	김연주	
44	경산시노조	사무총장	안성제	
45	경산시노조	사무차장	최경덕	
46	영주시청노조	위원장	이연직	
47	영주시청노조	사무총장	장수현	
48	청도군노조	위원장	정순재	
49	청도군노조	대외협력국장	홍석훈	
50	칠곡군노조	위원장	장성원	
51	칠곡군노조	사무총장	배우열	
52	성주군노조	위원장	김순일	
53	성주군노조	사무총장	유성록	
54	영양군노조	위원장	오제호	
55	울진군노조	위원장	최신득	
56	울진군노조	사무총장	임윤규	
57	안산시청노조	위원장	황유경	
58	안산시청노조	사무총장	김도형	
59	김포시청노조	위원장	유세연	
60	김포시청노조	사무총장	지영배	
61	성남시청노조	위원장	황을선	
62	성남시청노조	수석부위원장	방준영	
63	성남시청노조	부위원장	최원형	
64	성남시청노조	부위원장	이흥주	
65	성남시청노조	사무총장	최효준	
66	성남시청노조	총무재정국장	김기한	
67	성남시청노조	홍보정책국장	김태협	
68	수원특례시노조	위원장	신승모	
69	의정부시노조	위원장	김형태	

70	의정부시노조	자문위원장	김창덕	
71	의정부시노조	사무총장	어태준	
72	광주시노조	사무총장	한정민	
73	광주시노조	청년국장	권두용	
74	광주시노조	조직국차장	이동규	
75	양주시노조	위원장	김혜정	
76	양주시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우영	
77	대전동구노조	위원장	박종옥	
78	대전동구노조	사무총장	홍민애	
79	대전중구노조	위원장	이정만	
80	대전중구노조	사무총장	전병근	
81	대전서구노조	위원장	김원영	
82	대전서구노조	부위원장	한정환	
83	대전서구노조	후생복지국장	조용원	
84	유성구노조	위원장	김수영	
85	유성구노조	사무총장	신대섭	
86	대덕구노조	위원장	김현경	
87	대덕구노조	사무총장	홍성진	
88	충주시노조	수석위원장	조경욱	
89	충주시노조	사무총장	장석진	
90	충주시노조	복지부위원장	신나라	
91	충주시노조	지원처장	지현미	
92	충주시노조	복지지원부장	장미현	
93	아산시노조	위원장	이은숙	
94	아산시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경수	
95	아산시노조	사무총장	최보미	
96	아산시노조	부위원장	김동길	
97	아산시노조	정책기획국차장	양수웅	
98	홍성군청노조	위원장	윤영준	
99	홍성군청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종근	
100	천안시청노조	위원장	이영준	
101	천안시청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준하	
102	천안시청노조	사무총장	정인식	
103	천안시청노조	자문위원	김종석	
104	천안시청노조	자문위원	이계호	
105	천안시청노조	문화복지국장	김응규	

106	천안시청노조	청년부장	최윤서	
107	태안군노조	위원장	김미숙	
108	태안군노조	사무국장	정연성	
109	금산군노조	위원장	김민수	
110	서산시청노조	위원장	한형구	
111	익산시노조	위원장	구본권	
112	익산시노조	부위원장	김유래	
113	익산시노조	총무국장	김정운	
114	익산시노조	기획홍보국장	나우석	
115	익산시노조	조직관리국장	황승환	
116	익산시노조	대외협력부장	한 용	
117	군산시노조	위원장	박덕하	
118	군산시노조	부위원장	최종은	
119	군산시노조	부위원장	김우임	
120	군산시노조	부위원장	문미선	
121	군산시노조	사무처장	이재광	
122	군산시노조	총무기획국장	두지윤	
123	김제시노조	위원장	오정후	
124	김제시노조	부위원장	강동민	
125	김제시노조	사무국장	강경화	
126	정읍시노조	위원장	김대원	
127	정읍시노조	사무국장	임봉섭	
128	완주군노조	위원장	고환희	
129	완주군노조	사무국장	강민형	
130	진안군청노조	위원장	이재선	
131	진안군청노조	부위원장	백호현	
132	임실군청노조	위원장	이지훈	
133	임실군청노조	사무처장	김우정	
134	고창군노조	위원장	안남귀	
135	고창군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우재	
136	보성군노조	위원장	최 욱	
137	보성군노조	부위원장	이영재	
138	담양군노조	위원장	김길엽	
139	담양군노조	단체교섭국장	박광훈	
140	영광군노조	위원장	박종욱	
141	영광군노조	부위원장	김병택	

142	함평군노조	위원장	정안식	
143	함평군노조	사무총장	장유종	
144	완도군노조	위원장	김준남	
145	완도군노조	사무총장	이영재	
146	화순군노조	위원장	강진호	
147	화순군노조	부위원장	박현덕	
148	신안군노조	위원장	윤호현	
149	신안군노조	사무총장	강태옥	
150	장흥군노조	위원장	최근영	
151	장흥군노조	부위원장	황희창	
152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총장	임동수	
153	국가공무원노조	교육홍보국장	이유리	
154	경찰청	위원장	김대령	
155	경찰청	수석부위원장	박경희	
156	경찰청	사무총장	고은경	
157	경찰청	회계운영국장	권후남	
158	경찰청	교육홍보국장	김경영	
159	경찰청	대외협력국장	하대중	
160	경찰청	경찰청지회장	신쌍수	
161	경찰청	182지회장	김미선	
162	경찰청	인천지회장	장훈상	
163	경찰청	경기남부지회장	이진호	
164	경찰청	경찰병원지회장	곽기남	
165	고용노동부	위원장	류대희	
166	고용노동부	부위원장	문성재	
16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1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	위원장	정현석	
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	사무총장	유윤희	
1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위원장	강삼식	
1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부위원장	서영중	
1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사무총장	김환국	
1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서울지역본부장	마영훈	
1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진호	
1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경인지역본부장	윤경모	
1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경인지역본부 정책실장	김지연	
1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경인지역본부 조직실장	정용주	

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부산지역본부장	김형규	
1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최정환	
1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충청지역본부장	김창선	
1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충청지역본부 사무처장	변광섭	
1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전남지역본부장	이용승	
1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전남지역본부 사무처장	김대성	
1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경북지역본부장	김태완	
1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최성곤	
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전북지역본부장	김영선	
1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강원지역본부장	길정식	
1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제주지역본부장	고광훈	
1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우본직할본부장	조정훈	
1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인재개발원직할본부장	김명섭	
1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정보센터직할본부장	양승	
1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	조달센터직할본부장	김정희	
193	관세청	위원장	이대혁	
194	관세청	인천공항 지부장	송상은	
195	관세청	인천지부장	박정희	
196	관세청	인천공항부지부장	이승혜	
197	교육부	위원장	최인성	
198	국가데이터처	위원장	주한준	
199	국가데이터처	수석부위원장	이재열	
200	국가데이터처	부위원장	최유미	
201	국가데이터처	사무총장	송신우	
202	국가보훈부	위원장	최선동	
203	국가유산청	위원장	황진규	
204	국가유산청	사무처장	김진영	
205	국립대학교	위원장	김태섭	
206	국토교통부	위원장	장웅현	
207	국토교통부	수석부위원장	조용창	
208	국토교통부	사무총장	이해균	
209	국토교통부	조직부위원장	권장균	
210	국토교통부	정책부위원장	손동욱	
21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봉주	
212	국토교통부	항공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성	
213	기상청	위원장	박영주	

214	기획예산처	위원장	민혜수	
215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장	은준기	
216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위원장	김경태	
217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위원장	이종석	
218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총장	최연원	
219	농림축산식품부	위원장	박정민	
220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총장	방무송	
221	농림축산식품부	지부장	김 규	
222	농림축산식품부	지부장	남궁인숙	
223	농림축산식품부	지부장	장천식	
224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장	임석빈	
225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부위원장	신호섭	
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227	보건복지부	위원장	정승문	
228	산림청	위원장	박명주	
229	산림청	부위원장	이준표	
230	산림청	사무총장	김성우	
231	새만금개발청	부위원장	양관옥	
23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규범	
233	외교부	위원장	이주연	
234	조달청	위원장	임상교	
235	중소벤처기업부	위원장	노치홍	
236	중소벤처기업부	사무총장	박종선	
237	지식재산처	위원장	신호선	
238	질병관리청	위원장	이강연	
239	통일부	위원장	남현승	
240	해양경찰청	위원장	하승영	
241	해양수산부	수석부위원장	김경석	
242	해양수산부	부위원장	장효근	
243	해양수산부	인천지부장	이재철	
244	해양수산부	동해지부장	김동연	
245	해양수산부	사무총장	장종만	
246	행정안전부	위원장	안승태	
2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장	조용구	
248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원길호	
249	부산교육노조	위원장	송언용	

250	부산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	정미정	
251	부산교육노조	부위원장	신호준	
252	부산교육노조	사무총장	김선철	
253	부산교육노조	정책기획국장	이승진	
254	경기교육노조	위원장	김재하	
255	대전교육노조	사무총장	이성호	
256	인천교육노조	위원장	김상우	
257	인천교육노조	사무총장	최종화	
258	울산교육노조	위원장	서보순	
259	울산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철	
260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문성필	
261	경남교육노조	고문	이정호	
262	경남교육노조	고문	문재홍	
263	경남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광진	
264	경남교육노조	부위원장	김철구	
265	경남교육노조	사무총장	김영철	
266	경남교육노조	사무처장	이지원	
267	경남교육노조	정책기획부장	김찬욱	
268	전북교육노조	위원장	정기웅	
269	전남교육노조	위원장	이유근	
270	충남교육노조	위원장	조성환	
271	제주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	임선영	
272	제주교육노조	제주시지부장	김재성	
273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우철	
274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재복	
275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성진	
276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여성부위원장	김나은	
277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임형준	
278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상수도사업본부 지부장	손영욱	
279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부장	손장욱	
280	부산공무원노동조합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지부장	손정욱	
281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보건환경연구원 지부장	성경혜	
282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부장	정원근	
283	부산공무원노동조합	공약추진본부장	김장성	
284	부산공무원노동조합	교육국장	김상연	
285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조직국장	유승표	

286	부산공무원노동조합	홍보국장	정무현	
287	인천광역시노조	위원장	김광훈	
288	인천광역시노조	부위원장	김근영	
289	인천광역시노조	사무총장	권태현	
290	경기도청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건	
291	경기도청노조	북부청 수석부위원장	임도빈	
292	경기도청노조	부위원장	김중회	
293	경기도청노조	북부청 부위원장	박준형	
294	경기도청노조	사무총장	이혜원	
295	전남열린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선	
296	전남열린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세희	
297	소방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용덕	
298	소방노조	부위원장	김병석	
299	소방노조	부위원장	이정환	
300	소방노조	부위원장	김화중	
301	소방노조	사무총장	박병선	
302	소방노조	전북위원장	박영엘	
303	소방노조	사무처장	강인성	
304	소방노조	조직국장	강대한	
305	소방노조	기획국장	조영곤	
306	소방노조	정책국장	진재표	
307	소방노조	덕진지부장	최용석	
308	소방노조	군산지부장	진용구	
309	소방노조	군산사무국장	이해민	
310	소방노조	부산사무처장	강재영	
311	소방노조	부산홍보국장	배강효	
312	소방노조	부산구급국장	조정암	
313	소방노조	부산총무국장	김동혁	
314	소방노조	부산교육국장	박지환	
315	소방노조	부산대외협력국장	양준영	
316	소방노조	인천위원장	오재영	
317	소방노조	인천사무처장	박정욱	
318	소방노조	강원위원장	김영승	
319	소방노조	강원구급국장	안지원	
320	소방노조	충남위원장	박병남	
321	소방노조	충남조직국장	고민철	

